

발 간 등 록 번 호
11-1661000-000080-10

2022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2022. 12.



일러두기

- 본 질의·회신집에 수록된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내용이 유사하다 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질의·회신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사례는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해당년도 법령을 함께 수록하였으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기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회신(Q&A) 1

I | 소방시설법

83

| | |
|-------------------------------|-----|
| 1. 건축허가등의 동의 | 85 |
| 2. 특별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 89 |
| 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94 |
|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 96 |
| 5.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기준 | 99 |
| 6.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 102 |
| 7.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11 |
| 8. [별표2] 특별소방대상물 | 116 |
| 9. 특별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 130 |
| 10. [별표6]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 148 |
| 11. 무창층의 정의 | 153 |
| 1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156 |
| 1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 164 |
| 1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176 |
| 15.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보고서 제출 | 179 |

II | 다중이용업소법**185**

| | |
|-----------------------------|-----|
| 1. 영업장 내 안전시설등 설치 관련 질의 등 | 187 |
| 2. 영업장 내부구획 및 구획된 실 관련 등 | 193 |
| 3. 영업장 바닥면적 산정 및 방염 면적 산정 등 | 194 |
| 4.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등 | 199 |
| 5. 기타 질의사항 등 | 203 |

III | 초고층법**207**

| | |
|------------|-----|
| 1. 예방 및 대비 | 209 |
|------------|-----|

IV | 소방시설공사업법**213**

| | |
|----------------------|-----|
| 1. 소방시설업의 등록 | 215 |
| 2. 소방시설업의 운영 | 217 |
| 3. 설계 | 219 |
| 4. 시공 | 222 |
| 5. 착공신고 | 225 |
| 6. 완공검사 | 229 |
| 7. 감리 | 231 |
| 8.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 | 239 |
| 9. 소방기술자의 의무 | 248 |
| 10.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253 |

V | 화재안전기준**257**

| | |
|---------------|-----|
| 1. 화재안전기준(기계) | 259 |
| 2. 화재안전기준(전기) | 301 |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회신(Q&A)

- ▶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질의 답변(소방공무원)
- ▶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질의 답변(국민신문고)
- ▶ 기타 법령 개정 관련 질의 답변
- ▶ 화재안전기준 관련 질의 답변

■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회신(Q&A) ■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질의 답변(소방공무원)

| 연번 | 질의내용(서울본부) |
|----|---|
| 1 | <p>공실, 폐쇄 등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 면제 및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해당된다면 제4호 “그 밖의 경우에 해당” 되는지?</p> <p>「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는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재량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p> <p>따라서, 공실·폐쇄 등의 사유는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p> |
| 2 | <p>1)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그 기간에 자체점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기신청 처리해야 하는지?</p> <p>2)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등으로 소방시설 공사와 무관한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여부? 연기신청이 가능한지?</p> <p>※ 전체 혹은 부분에 대하여 증축, 개축 등의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자체점검 실시 여부?</p> <p>1)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자체점검 미대상 →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 : 소방시설이 신설된 후 최초점검 등 자체점검 실시</p> <p>2) 기존 수신기 및 소화펌프 등을 공유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자체점검 연기 가능</p> <p>3) 기존 건축물 등과 관계없이 증축된 부분에 별도로 소방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 기존 건축물은 자체점검 연기 불가능</p> |
| 3 | <p>증축 등으로 건축물 대장 상 사용승인일 표기란에 명시되지 않아 민원인이 법령에 따른 점검 월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p> <p>1) 증축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소방시설 완공일 또는 증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 실시</p> <p>2) 1개동인 경우(작동→작동, 작동→종합, 종합→종합) : 최근 사용승인일 기준</p> <p>3) 2개동 이상인 경우(작동→작동, 작동→종합, 종합→종합) : 건축연도가 빠른 날 기준</p> <p>※ 다만, 관계인이 관례대로 하는 증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건축연도가 빠른 날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앞당겨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정</p> |

| | |
|---|---|
| | 자체점검 이행계획서, 이행계획 결과보고서 등은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 4 | <p>1) 관리업자는 자체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소방시설관리협회 배치신고시스템에 통보(신고)하고,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보고서(자체점검표 첨부)를 제출</p> <p>※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자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점검과 병행하여 소방시설 수리</p> <p>2) 관계인은 소방시설 불량사항 등 수리 · 교체 · 정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작성(중대위반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포함하여 작성)</p> <p>※ 소방서 보고 전에 중대위반사항을 수리 완료한 경우 이행계획서 미작성</p> <p>3) 관계인이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자체점검결과보고서에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p> <p>※ 제출방법은 서류 또는 전산(소민터)으로 제출하고,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관리업자등도 제출 가능(향후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급적 전산 제출 필요)</p> <p>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행계획서 적정성 여부 검토: 부적정한 경우 관계인과 협의하여 기간 재지정 후 통보(문서) / 적정한 경우 문자 또는 전화 등으로 적정 통보(관계인에게 통보한 기록은 남길 것)</p> <p>5) 이행계획 완료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관계인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서류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제출)</p> <p>6) 이행계획 완료 결과 증명서류가 확인된 경우 완료 처리, 확인이 안된 경우 현장확인 후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조치명령 발부 등 행정절차 진행</p> |
| 5 |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의 예는? |
| 6 | <p>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점검을 했다고 배치신고를 한 경우를 말함(점검을 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하며, 병원입원 · 외국출국 · 여행 · 회의참석 등이 해당)</p> <p>현장점검 후 불량조치 내역 확인하면 반드시 과태료 처분하고 조치명령서를 즉시 보내는지?</p> <p>이행계획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연기신청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으므로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가 원칙임.</p> |
| 7 | <p>이행계획서 접수 후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각호에 따른 기간(10일, 20일) 이외에 30일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의 조치는?</p> <p>기간이 적합하다고 판단 후 내부결재 후 통보는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p> <p>결과보고서 제출 전 관계인과 사전 협의를 한다든가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방법 모색 필요(30일 이상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행정절차 필요)</p> |

| | |
|----|--|
| 8 | <p>자체점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업무사항 공지”에 계약시기 기준으로 세대점검을 유예해주는데, 예로 2022.11.30. 이전에 소방시설관리업체와 세대점검 계약을 2년간 자체점검 계약을 체결했다면 2024년까지 세대점검이 유예되는지?</p> |
| 8 | <p>관리업자에게 세대점검을 유예한 것은 자체점검 용역에 세대점검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세대점검은 2년 이내 관계인(입주민, 관리사무소,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해야 함. 미실시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조사 실시(세대 안전점검 실시→과태료 부과가 목적은 아님)</p> |
| 9 | <p>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자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체 없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중대위반사항도 수리, 교체, 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다면 심의회없이 수리기간을 길게 잡아도 상관없는지?</p> |
| 9 | <p>관리업자등이 자체점검 시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에게 즉시 알리고, 관계인은 고장난 소방시설을 자체 없이 수리 등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임.</p> <p>또한, 중대위반사항도 결과보고서 제출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행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이 경우 이행기간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및 고장정도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 부여</p> <p>※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한 것이고, ‘자체 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자체는 허용됨</p> |
| 10 | <p>자체점검 시 점검기구 미사용하여 점검한 후(이를확인하는 방법도 모호함) 보고서 제출할 시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거짓보고로 봐야하는 건지?</p> |
| 10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7호에 따라 자체점검시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하여야 하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용 시에는 (관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행정처분 (관리사)는 법 제22조 위반으로 거짓점검(행정처분)에 해당함 <p>다만,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시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증 곤란(입증책임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져야함)</p> |
| 11 | <p>결과보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시 업체에서 대리 제출이 가능한지?</p> |
| 11 | <p>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대리 제출 가능함</p> |
| 12 | <p>최초점검의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라목1)에서 최초점검 60일 이내, 별표 3 제3호라목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이후 다음해부터라고 되어 있음. 또한,</p> |

| | |
|----|---|
| | <p>「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에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다음연도부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고시대로 한다면, 최초점검 이후 1년뒤에 하는 것 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p> <p>최초점검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해야 하며, 최초점검 후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해부터 실시</p> <p>※ 다만, 별표 3 제3호라목3) 중 가목3) → 가목4)로 인용조문 오류임</p> |
| 13 | <p>공동주택(아파트 등)세대별 점검방법에서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 점검을 실시(작동점검시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종합점검은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하는데 소방관서에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p> <p>관계인이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전체 세대 중 점검한 세대비율 작성하여 제출도록 안내(ex) 1,000세대 중 300세대 점검)</p> |
| 14 | <p>이행계획 보완기간이 10일 또는 20일 이내로 민원인과 업체간의 계약과 공사목적 방문 등 물리적 시간과 거리가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행계획서 보고일로부터 문서작성 및 우편송달로 인한 휴일이 산입된 기간은 더 짧아지게 됩니다. 단순히 10일, 20일이내 보완통보하기가 어렵고, 현재 관계인 또는 업체에 연락하여 이 보완통보 기간내에 이행완료할 수 있는지도 확인까지 하고있어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의 기간을 달리 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의 해석을 넓혀 담당자에게 기간을 더 늘릴수 있게 약간의 재량을 부여해주면 좋겠습니다.</p> |
|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10, 20일)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다만, 업체와의 계약 등 행정 처리 시간은 고려 요소가 될 수은 없음</p> |
| 15 | <p>(「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자.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3)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위 "지연 완료 기간"의 해석이, 지적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완료했다는 뜻인지요..</p> |
| | <p>"지연 완료 기간"이란 이행계획 완료 기간이 지났음을 의미, 즉 지적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완료한 후 보고한 것을 의미함</p> |
| 16 | <p>복합건축물 등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건물의 경우에서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처리(필요한 조치) 방법은?</p> |

| | |
|----|--|
| | <p>1) 서로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경우: 각 점유자별로 과태료 부과? 각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모두 과태료 부과?</p> <p>2)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종전과 같이 개별조치(사전통지→조치 명령 발부)하고 그 외 부분은 완료 처리 가능한지?</p> <p>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하는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p> <p>2)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행위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부과하여야 함.</p> <p>3) 2) 질문과 같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개별조치하고 그 외 부분은 완료 처리 가능함</p> |
| 17 | <p>업체 공사일정 등 사정으로 인하여 이행계획 완료일이 지나 공사 완료 후 소방서에 이행완료 보고 한 경우 처벌 대상인지?(이행완료 보고 기한 내 보고)</p> <p>이행계획 완료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난 경우 과태료 부과가 원칙임. 다만, 기간 만료 후 공사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방서장에게 있음.</p> |
| 18 | <p>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시 이행계획 완료일이 5일 이하로 공사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연기 신청 대상이 되는지?</p> <p>연기신청 가능. 다만, 공사 진행사항 등 고려 필요</p> |
| 19 | <p>이행계획 5가지 중 1~2가지 사항(1달 이상 걸릴 공사로 판명)을 이행하지 못하고 이행완료를 기한 내 보고 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지?</p> <p>(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기간이 지나 연기하지 못한 상태)</p> <p>관계인 귀책사유로 연기신청을 안한 것이므로 이행계획 완료 기간이 지난 경우는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임</p> |
| 20 | <p>1) 이행계획 완료일이 2022.12.6.(화) 경우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p> <p>2) 이행계획 완료일이 2022.12.4.(일) 경우 이행계획 연기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p>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 이행계획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라고 하였으므로 1)의 경우는 2022.12.3.(토)까지 하여야 하나 공휴일에 해당되어 2022.12.5.(월)까지, 2)의 경우는 2022.12.1.(목)까지 하여야 함</p> |
| 21 | <p>중대위반사항 수리 등 필요한 조치 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하기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지?</p> <p>보고서 제출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 제출</p> |

| | |
|----|---|
| 22 | <p>이행계획 완료 보고를 1개월 이상 미제출시 업무처리 절차는?(예: 10일 이내 해당 건물 현장 방문하여 과태료 진행 및 사전 조치명령서 발부 등)</p> <p>「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보고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확인하여 업무처리</p> |
| 23 | <p>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팩스, 전자우편(메일)로도 제출가능한지?</p> <p>보고(제출)방법은 서면, 팩스, 전자우편(메일) 및 전산시스템으로 가능. 다만, 전산시스템(소민터)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전산으로 받는 것이 타당</p> |
| 24 | <p>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3개월간 병행가능한지?(이행계획서 때문)</p>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3개월간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사용가능함(기존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이행계획서 사용 가능)</p> |
| 25 | <p>「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에 대하여 소방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p> <p>건축부서에서 사용승인일을 통보한 날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날 확인</p> |
| 26 | <p>2017년~2021년 사이 소방시설 완공검사는 받았지만 현재까지 사용승인이 안 난 건물의 경우(건물은 사용하고 있는 상태) 최초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p> <p>「소방시설법」 부칙 제4조에서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특별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점검 대상에 해당됨</p> |
| 27 | <p>관계인이 스스로 점검 시 점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점검 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시 처벌규정이 있는지?</p> <p>「소방시설법」 제61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로 과태료 처분 가능(다만,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지 소규모 대상을 처벌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은 아님)</p> |
| 28 | <p>공동주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시 세대 내 점검내역을 제출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떤 양식으로 제출해야하는지?</p> <p>세대점검 내역은 총 세대수 중 점검한 세대수를 기재하며(총 1,000세대 중 300세대 점검)되며, 세대점검표 및 점검현황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p> |
| 29 | 접수시 점검결과 불량사항 중 업체가 법규를 과적용 또는 잘못 지적하여 검토 요구하였는데 관리업체에서 거절시 거짓점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 | 법규를 과적용 또는 잘못적용한 경우 거짓점검으로 처벌 불가. 행정지도 필요 |
| 30 | <p>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초급·중급·고급 점검자) 자격수첩 발급이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관리업 등록기준(기술인력)은 이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기준으로 보아도 되는지(소방시설관리업 보조 기술인력 자격증 종류 문의)</p> <p>「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에서 점검자의 기술등급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인력 등급 구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p> <p>다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점검인력 배치기준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점검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여, 당분한 수기로 발급할 예정임</p> |
| 31 | <p>「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p> <p>건축물이 철거 및 건축공사 예정으로 공실·폐쇄 및 단전·단수 상태인 경우로써, 연기 사유 중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 연기신청도 불가하며, 실질적으로 소방점검이 불가한 상황때 자체 점검 처리 방법은?</p> <p>이 경우는 이 영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함</p> |
| 32 | <p>2022.12.1. 이전에 건축물 공실·폐쇄, 건축공사 등으로 유예를 신청한 대상이 종전 지침을 적용해 같은 사유로 2023년에 재유예 신청이 가능한지,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연기신청이 불가한지?</p> <p>31번 답변 참고. 동일사유로 재연기 신청도 가능함</p> |
| 33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서 이행계획기간은 보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중대 위반사항도 보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법제23조제1항 중대위반사항은 자체없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의해 점검일로부터 산정해야하는지?</p> <p>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p> |
| 34 | <p>「소방시설법」 제59조제4호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위반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일(보고일)로부터 이행계획서 제출 전에 조치를 해야 하는지? - 점검일(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 또는 규모·절차를 고려하여 달리 정하는 기간 내에 조치해야하는지? <p>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인은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자체 없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행계획서 제출 전부터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p> |

| | |
|----|---|
| 35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서 '각 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 여려운 경우에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복합건축물은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간을 달리 정해야 할 경우 처리 절차(심의회 등의 복잡한 절차는 담당자 업무 과중이 예상되며, 간단한 증빙자료 확인으로 이행계획 기간 인정이 가능하지?)는?</p> |
| | <p>이 법에서 기간을 달리 정해야 할 경우 심의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처리 부서의 장 판단에 따라 처리하면 되나, 소방시설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기간 최소화 필요</p> |
| 36 | <p>「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및 복합건축물은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위한 절차가 복잡(입주자대표회의, 경쟁입찰 등)하여 기간 소요가 상당함.</p> <p>관계인이 자체점검결과 보고 당시 예상되는 이행계획 기간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연 또는 공사업체 유찰 및 계약문제로 인하여 이행계획 기간 내 조치가 불가한 경우 연기는 불가한지, 무조건 조치명령 발부 해야하는지?</p> |
| | <p>영 제35조제1항제4호 적용여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p> |
| 37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의 조치 등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계획에 완료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할 경우 우편송달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경우 이행계획기간은 관계인이 우편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재산입하는지? 기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한 일 다음날부터 산입하는지?</p> |
| | <p>점검기간을 달리 정하여 문서(우편)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우편을 받는 날부터 기간을 계산함. 이행계획대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전화, 문자로도 가능</p> |
| 38 | <p>「소방시설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체점검결과를 공개해야되는 대상물의 기준과 공개기준과 공개와 관련한 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지?</p> |
| | <p>「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심사·결정하여 관계인에게 통지 후 공개할 수 있음</p> |
| 39 | <p>공동주택 자체점검시 세대별 종합(30%), 작동(50%) 점검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점검업체에서 점검시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지침으로 세대별 자체 점검시에도 인정 가능한지?</p> <p>(예) 세대별 점검기록부 작성하여 관리사무소 제출</p> <p>입주자가 세대별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도 인정됨</p> |

| | |
|----|---|
| 40 | <p>자체점검 이행기간 최대 20일 초과하면 검토 및 내부 결재 득하고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담당자 재량으로 10일~15일 연장 가능한지? (대상처마다 일일이 결재해서 통보하기에는 업무 과중하다 생각됨)</p> <p>소방시설 고장정도, 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p> |
| 41 | <p>이행계획서 불량사항 조치 기간이 점검일로부터 20일인지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인지 시 정계획일 산정 시작 기준이 언제부터인지?</p> <p>이행계획 완료 기간은 보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p> |
| 42 | <p>중대위반사항 발견 후 보고서 제출 시 조치가 전부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는 것인지, 미 조치 시 벌금 부과 전 조치명령 등 절차 없이 즉시 부과인지</p> <p>33번, 34번 답변 참고.</p> |
| 43 | <p>이행계획 미 완료 시 과태료 부과 후 조치명령 순서로 하는데 이때 조치명령 전 처분사전 통지 후 조치명령 후 현장확인 이 순서로 하는 것인지</p> <p>「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 조치명령 → 현장확인</p> |
| 44 | <p>이행계획완료 후 결과 보고 시 소방시설 공사계약서를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관계인이 자체 수리한 대상이거나 업자가 수리한 대상이지만 금액이 적어 계약서 등이 생략된 경우도 반드시 공사 계약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p> <p>「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해당하여 공사계약을 한 경우 첨부</p> |
| 45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내 이행기간 기준일(10일, 20일)내에 완료가 어려운 경우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p> <p>소방시설 고장 정도, 수리 기간 등을 고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p> |
| 46 | <p>세대점검의 미실시 사유 - 불가피한사유 및 미점검 세대현황 보관사-가 있는데 사유에 대한 좀더 명확한 기준 필요</p> <p>2년 이내 세대점검을 못한 경우 소방관서에서 못한 세대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인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관리사무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p> |
| 47 | <p>아파트의 경우 면적이 아닌 세대수로 점검한도를 설정하는데 실제 세대점검은 30프로만 했다고 제출한다면 점검한도 산정방식과 모순이 되는 건 아닌지?</p> <p>아파트의 경우 세대수로 점검한도를 설정한 것은 공용부분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세대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있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세대수를 정상적으로 점검하는</p> |

| | |
|----|--|
| | <p>경우를 가정하여 실측을 통해 세대수를 산정하였음. 필요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점검한도 재설계 하겠음</p> |
| 48 | <p>「소방시설법」 제61조제1항제7호 과태료 부분에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시 준수사항 위반시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관리업체가 배치신고를 점검일로부터 5일이내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해당이 않되는 건지? 배치신고가 늦는 부분은 여전히 처벌조항이 없는건지요?</p> <p>배치신고도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 하여야 함. 5일 이내 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p> |
| 49 | <p>공동주택의 경우 관계인 점검표 보관여부 및 점검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보고서 접수 시 첨부 서류에 관계인 사인(도장)을 같이 받아야 하는지?</p> <p>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는 세대별 점검표 작성 불필요. 다만, 입주민 등이 점검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 함.(사인 여부 등은 관리자 요구시 작성 필요)</p> |
| 50 | <p>2급 이상 관계인 점검 불가(업체점검) 변경사항이 12월1일부터 바로 시행 하기에는 점검업체들의 일정과 날자를 맞추기 어려워 날자변경을 통한 거짓점검 및 다수의 민원제기가 예상되는바, 유예기간 혹은 병행기간(관계인 또는 점검업체)을 줄 수 없는지?</p>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 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연간계획에 따라 관계인이 점검하던 대상은 관계인 점검 가능. 다만, 2023년1월1일부터는 불가함</p> |
| 51 | <p>“이행결과확인서”는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 후 공문(수기접수)접수 등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인지?</p> <p>전산시스템(소민터)으로 접수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돼 있음</p> |
| 52 | <p>복합건축물(구분소유자 다수)일 경우 이행결과보고시 개별 소유주 부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는?</p> <p>-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이행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고지받지 못한 개별 소유주의 경우 이행계획서상 내용은 알고 있었으나 기간 내 조치가 안 된 경우</p> <p>이행계획서는 관계인이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제출)하는 것으로 조치명령과 같이 소방관서에서 고지할 필요는 없음. 관계인 간의 문제로 과태료 부과 가능</p> |
| 53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에서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항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 | |
|----|--|
| | <p>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p> <p>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
| | <p>「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 여부는 종합점검에서 점검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작동점검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중 덧문 설치” “방화문 탈락” 등이 다수 지적되고 있습니다.</p> <p>첫 번째로 피난방화구조 관련 항목이 작동점검에 포함되는 것인지 ?</p> <p>두 번째로 작동점검 항목은 아니지만 점검이 권고되는 사항이라면, 작동점검결과 이행기간 내 불이행 또는 작동점검 조치명령 불이행 시 자체점검에 따른 벌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p> |
| | <p>1) 소방시설등에는 이 영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과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가 포함됩니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작동점검표에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작동점검시에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는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벌칙 및 행정처분 적용 가능함.</p> |
| | <p>2)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처리</p> |
| 54 | <p>「소방시설법」 제23조에서 “자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조치계획, 견적 의뢰, 공사업체 선정 등)의 첫 단계를 넓여서 이행계획기간 내에 조치완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지?</p> |
| | <p>중대위반사항을 수리하기 위한 견적 의뢰, 공사업체 선정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며, 보고서 제출 전 수리하지 못한 경우 이행계획서에 포함 조치완료 해야 합니다.</p> |
| 55 | <p>① 유치권 행사로 인해 건물 출입 폐쇄를 한 경우와 ② 건물 철거 예정으로 공실 상태 및 출입 폐쇄를 한 경우 기존에는 유예를 시켰는데 지금은 어떤 조항에 해당하여 연기 처리를 해야 하는지 ?</p> <p>「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 적용 가능합니다.</p> |

| | |
|----|---|
| 56 |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 점검 시 22년 12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세대 점검 률을 미적용 한다고 했는데 기준 계약서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지 ? |
| | 세대점검률을 미적용한다는 의미는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관리자는 2년 이내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합니다. |
| 연번 | 질의내용(대구본부) |
| 57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인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은 이상없이 제출되었으나, 점검업체의 배치신고인 “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내 신고”가 기한 초과된 경우 처리 방법은? |
| | 「소방시설법」 제22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관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
| 58 | 종합정밀점검의 “최초점검” 대상이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용도변경도 “최초점검” 대상이 되는지? |
| | 용도변경되어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에는 최초점검 대상에 해당됨 |
| 59 | 작동점검시 간이SP 또는 자탐 외에는 관리업자 등이 점검해야 하는데 갑작스런 수요증가로 관리업체 의뢰가 힘든 상황인데 유예기간이 없는지? |
| | 50번 답변 참고(「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연간계획에 따라 관계인이 점검하던 대상은 관계인 점검 가능. 다만, 2023년1월1일부터는 불가함) |
| 60 |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업체 선정, 자체구입 등에 수리기간 산정이 불확정적인데 ‘지체 없이’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
| | 9번 답변 참고(공사업체 선정 및 자체구입 등을 위한 노력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에 해당) |
| 61 |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체없이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 규정은 없는지? |
| | 「소방시설법」 제59조제4호에 따라 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 가능 |
| 62 |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입찰을 요하는 경우 등 세분화 된 산정기준은 없는지? |
| | 14번 답변 참고(「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

| | |
|----|---|
| | (10, 20일)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세부기준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재량임) |
| 63 | 공동주택 세대점검 확인 방법(보고서 제출시) / 작동점검대상 12월 사용승인일 경우 22.12.01~23.11.30 동안 50% 이상 세대점검해야 함. - 22.12.31.점검후 보고서 제출 시 30일 정도 세대점검한 수만 확인하면 되는지? - 23.11.30.까지 50% 이상 세대점검한 것 확인 어떻게? |
| 64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등이 보고서 제출시 점검기간내에 실시한 세대점검 기재사항을 확인하면 되며(세대점검 내역은 총 세대수 중 점검한 세대수를 기재 - 총 1,000세대 중 300세대 점검), 점검기간 이후 점검한 세대는 다음 보고서 제출 시 포함하여 기재(세대점검표 및 점검현황은 관리사무소에서 2년간 보관 - 화재안전조사 시 확인) |
| 65 | 아파트의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업체 선정 시 일정금액 이상은 공개 입찰을 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다수 소요됨. 대략적 보완기간 산출표 지침이 필요함. |
| 66 | 고장정도, 수리 기간 및 시급성 등을 고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기간을 부여(종전 법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 등을 참고) |
| 67 | 이행계획완료 연기 신청시 신청 가능한 횟수? 이 법에서 제한은 하고 있지 않아 불가피한 경우 연기 신청은 가능함. 다만, 소방시설 정상작동 상태 유지를 위해 신속히 수리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함. |
| 68 | 관계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자체점검 유예대상으로 관리해오던 대상(직권으로 유예 대상) 처리 절차? 종전 지침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을 참고하여 처리. 이행계획기간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간(10일 / 20일)과 부적합 또는 기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기한 산정후 산정된 이행기간 문서통보 해야 함. 이행계획서 접수 ~ 이행기간 재산정 문서통보까지의 기간?(담당자 사고발생시 처리기한) 담당자 사고발생시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 대행자가 사고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고를 사유로 업무처리 기간을 미룰 수 없음. 법령등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처리해야 함 |
| 68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3 자체점검의 점검 시기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빠른 날 기준이 사용승인 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에 증축 등 건축행위가 있었지만 최초 사용승인일로 진행하고 있는 대상도 위 기준에 따라 전부 변경하여 자체점검을 해야 하는지? |

| | |
|----|---|
| | 변경할 필요는 없음. 다만, 작동점검 대상이 종합점검 대상으로 변경된다든가, 새로운 소방시설이 신설되어 최초점검 대상이 되어 점검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번 답변 참고 |
| 69 | <p>최초점검 적용 대상이 사용승인일 12월1일 이후 대상인지 아니면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교부일이 12월1일 이후 대상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점검 대상부터 적용하는지? - 12월 점검 제출된 대상부터 적용하는지? <p>「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날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제22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특별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12월1일 이후 사용승인을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사용승인이 필요없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교부일)</p> |
| 70 | <p>「소방시설법」 부칙 제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특별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의 자체점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p> <p>→ 여기서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특별소방대상물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함. 문구대로라면 신축건물 및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대상물만 해당되는 것인데, 현재 이 문구로 기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부분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건축물의 경우 관계인이 자가점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함.</p> <p>이에 집단소송의 움직임이 있으므로 소방청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이 필요함. 또한 법령문구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 법 시행 이후 점검시기가 도래되는 특별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부터 적용한다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p> <p>1) 최초점검 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 신설되는 경우에 한함. 기존 건축물은 「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실시</p> <p>2) 기존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어 관계인이 작동점검하고 있는 대상은 '22.12.31.까지 관계인이 점검 가능, 다만, 2023.1.1.부터는 불가함을 안내 바람</p> |
| 71 | <p>공동주택의 개인세대 내 점검시 소방펌프 및 화재수신기 등 점검을 완료한 후 야간 또는 휴일 점검시 소방시설 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하는지?</p> <p>→ 맞벌이세대, 점검기간 부재세대 등 야간 및 휴일에 점검을 신청하는 세대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의 현장배치가 법적으로 의무인지? 소방시설관리사의 배치여부에 따라 점검비용이 더욱 증폭됨에 따라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함</p> |

| | |
|----|--|
| | 공동주택 세대점검 의무는 개인 사생활 공간임을 감안하여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 및 입주민(거주자)에게 부여되어 있음. 이 경우 관리자 및 입주민이 점검이 곤란하여 관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점검기간 내에는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나, 점검기간이 끝난 후 추가 의뢰한 경우에는 배치신고 없이 점검 가능 |
| 72 | <p>공동주택의 개인세대 점검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일 경우 해당 세대 내 점검이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장기간 부재의 세부기준이 필요함(인정범위)</p> <p>→ 2년이내 공동주택 자체점검 시 세대 100%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장기간 부재의 세부적 기준 필요하다고 사료됨. 2년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만 인정되는지?</p> <p>점검기간 동안 부재 시 경우만 인정되는지? 점검기간 부재 시 2년간 4회 점검기간 동안 부재시 면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입원, 해외출장(여행), 세대주만 부재로 인정할 것인지 등</p> <p>공동주택 세대내 점검은 2년 이내 관리자 및 입주민이 실시하는 것으로 자체점검 기간 일시적 출장이나 해외여행 등은 장기간 부재에 해당되지 않음.</p> <p>세대 내 점검의 목적은 소방시설이 시스템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대 내 소방시설이 불량한 경우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 않기 위함이며,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며 처벌 목적은 아님.</p> <p>※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같이 주거시설에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임</p> |
| 73 | <p>「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에 대한 해당사유 중 공동주택 및 복합상가(시장) 등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보수비용에 대한 대금결재를 위한 기간이(회의 의결) 존재하는 데 이를 반영하는 법정사유가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업무처리지침 등 시달 계획이 있는 것인지?</p> <p>→ 타 법에 의하여 적법한 자금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대한 절충안의 부존재로 인하여 집단소송의 여지가 있음</p> <p>별도의 업무처리지침 시달 계획 없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연기할 것</p> |
| 74 | <p>‘22.12.1. 이후 점검종료 후 15일 내 결과보고서 제출이라고 바뀌었는데 3급 대상 중 관계인이 직접 점검 후 제출 시는 기준 그대로 7일(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인지?’</p>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p> |
| 75 | 자체점검 시 점검장비 이용(의무)에 대하여 대상 관계인이 장비를 이용해서 점검한건지 이용 안했는 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 | |
|----|---|
| | 관리업자등이 점검할 때 확인하는 등 장비사용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져야 함. |
| 76 | <p>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한 여부와 관계 없이 혹은 배치통보일과 관계없이 점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인지?</p> <p>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 점검인력 배치신고를 하고, 제23조제1항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관계인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토록 규정 되어 있음.</p> <p>※ 관련 규정을 연찬하시기 바랍니다.</p> |
| 77 | <p>개정된 자체점검 법령의 경우 기존 법령에서 부적합 대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조치명령 통보 하던 것에 대비하여 조치명령 통보 전 먼저 관계인이 부적합 사항에 대해 조치 후 이행결과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 조치명령을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 맞는지?</p> <p>자체점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 고장난 소방시설에 대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입니다.</p> |
| 78 | <p>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내 점검을 세대 수 대비 종합 30%, 작동 50%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해당 범위를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서류를 반려시켜야 하는지?</p> <p>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은 세대점검 비율하고 관계없음. 다만, 관리자 및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세대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필요</p> |
| 79 | <p>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대상이 여러 동으로 만약 전체 동을 일괄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의 기준이 되는 빠른 사용승인일은 해당 동의 월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점검 의무가 발생한 최초 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예시 : A동-2007년 11월(최초 사용승인동), B동-2010년 3월(증축동)일 경우 어느 동을 기준으로 일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p> <p>자체점검 의무가 발생한 최초 연도를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면 됨</p> |
| 80 | <p>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인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은 이상없이 제출 되었으나, 점검업체의 배치신고인 “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내 신고”가 기한 초과된 경우 처리 방법은?</p> <p>57번 답변 참고(「소방시설법」 제22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관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p> |

| | |
|----|---|
| 81 | <p>종합정밀점검의 “최초점검” 대상이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도 “최초점검” 대상이 되는지?</p> <p>58번 답변 참고(용도변경되어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에는 최초점검 대상에 해당됨)</p> |
| 82 | <p>「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적시한 바, 관계인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지연 제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 과태료 부과처분 상한액은 구법과 개정법 중 어느법을 적용해야 하는지?</p> <p>사례 1) 작동기능점검일자 : 2022.10.31. 보고서 제출기한 : 2022.11.10.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일자 : 2022.1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 시점을 2022.11.11.로 보고 구법을 적용하여 과태료 30만원 부과 2. 위반행위 시점을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2022.12.2.로 보아 개정법에 의하여 과태료 50만원 부과 <p>사례 2) 작동기능점검일자 : 2022.11.30.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일자 : 2022.12.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고서 제출 기한을 구법에 의하여 7일(휴일 미산입)로 보고 위반행위 시점을 2022.12.10.로 보아 구법에 의하여 30만원 부과 2. 보고서 제출 기한을 구법에 의하여 7일(휴일 미산입)로 보고 위반행위 시점을 2022.12.10.로 보아 개정법에 의하여 50만원 부과 3. 개정법의 보고서 제출기한이 15일(휴일 미산입)로 변경되었으므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미부과? <p>사례 1)의 경우 구법을 적용하여 과태료 30만원 부과 사례 2)의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과태료 미부과</p> |
| 연번 | 질의내용(인천본부) |
| 83 | 보고서(이행계획서)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행계획 기간을 통보해야 하는지? |
| 83 | 67번 답변을 참고(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을 준용하여 통상적으로 10일 이내 처리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즉시 문자, 전화 등으로 통보) |
| 84 | 작동점검 자격자 중에 특급점검자라고 있는데 특급점검자는 특급기술자를 말하는 건지? |
| 8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기술등급을 말함(특급기술자는 설계·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 |
| 85 | 이행계획서 산정 기간(ex. “기계, 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 |

| | |
|----|--|
| | <p>내") 중 이행 기간은 초일, 공휴일 산입하여 이행해야하는지?</p> <p>이행계획 기간 산정 시에는 초일, 공휴일 및 토요일 산입하고(신속한 정비목적), 소방관서 보고일 산정에는 초일, 공휴일 및 토요일 미산입함</p> |
| 86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 3 제6호가목 중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분에서 관리자와 소방기본법의 관계인 중 관리자와 동일한 것인지? 아니라면, 아파트등에서만 해당하는 것인지?</p> <p>이 법(아파트등)에만 해당되는 용어임</p> |
| 87 | <p>자체점검 연기신청 이후, 기존 유예업무지침에 따르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건물이 사용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받아야 할 때, 유예기간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에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는다면 자체점검 실시일은 1)유예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60일 이내 인지, 2)유예만료 후 한 달 뒤인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인지?</p> <p>2) 유예만료 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하면 됨</p> |
| 88 | <p>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 2023년 1월 중 자체점검 특정소방대상을 해당 여부</p> <p>「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p> <p>다만,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이 제도 취지 상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후 1년 동안은 자체점검 면제 가능함</p> |
| 89 | <p>기존 유예처리지침에 따라 중인 유예중인 대상들은 현시점부터 다시 연기신청서를 받아서 연기해야 하는지?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받을 때 연기신청을 받아서 처리해야하는지?</p> <p>유예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받을 때 연기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면 됨</p> |
| 90 | <p>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안전관리자(전기, 가스, 위험물 등)와 업무를 겸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같은 업체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겸할 수가 없는지?</p> <p>같은 업체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와 전기, 가스, 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와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p> <p>※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제32조 등</p> |
| 91 | <p>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민터로 제출 시 이행계획서나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식이 없습니다. 시스템정비를 요청합니다.</p> |

| | |
|----|--|
| | 시스템 정비 완료됨(업로드 기능 정비) 2022.12.26.부터 사용 가능 |
| 92 | <p>복합건축물 건축물 관리대장상 2층(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6층(공동주택, 다세대주택) 표기 대상 세대점검 여부?</p> <p>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으로 아파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점검대상이나 4개층 이하인 다세대주택은 자체점검 대상에서 제외</p> |
| 93 | <p>공공기관(군부대 등)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가능여부?</p> <p>〈국가나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18.12월, 법제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 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으로 명시 - 현행 질서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당사자간의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때 당사자는 현행 질서법 제2조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될 수 없는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p>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기관의 상급기관(감사부서)에 통보하여 보완조치 필요</p> |
| 94 | <p>2022년 11월 작동대상입니다. 22년11월30일 작동점검 후 22년12월26일 제출시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은 기준법 적용해서 30만원인지 현행 법 적용으로 100만원인지?</p> <p>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현행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p> |
| 95 | <p>공동주택 세대점검 2년 동안 전세대를 못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은? 예를 들면 공동주택 1000세대중 300세대 미점검시 300세대(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관리자 1명에게만 부과하는지 아니면 300세대 및 관리자에게 모두에게 부과하는지?</p> <p>세대점검의 목적은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 및 입주민에 대해 과태료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하여 주거공간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세대점검을 기간내에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처벌 규정 적용</p> |
| 96 | <p>관계인 점검시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p> <p>관계인 점검시에도 별지 제4호의 서식을 활용하여 점검하여야 함</p> |
| 97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과 관련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

| | |
|-----|--|
| | <p>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수 있다.” 예로 아파트 경우 수리비용이 많이 들 경우 입주자대표회 의를 거쳐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 기간을 20일 이상 길게 줄 수 있는지?</p> <p>고장정도, 수리기간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p> |
| 98 | <p>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점검현황을 제외하고 제출 시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 건가요? 자체점검 미실시로 입건 또는 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벌인지?</p> <p>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자체점검 기간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2년이내 실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점검인력 배치기간 중에 점검한 사항만 점검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계획대비 세대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불가함 ※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과 세대점검 완료 여부와는 관계없음(현황만 기록 유도)</p> |
| 99 | <p>폐업 등의 사유로 연기신청시, 자체점검은 자체점검 연기신청서로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로 각각 신청해야 하는건가요?</p> <p>적용 법령이 달라 각각 받는 것이 원칙이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함께 처리해도 가능함</p> |
| 100 | <p>이행계획서 작성 제출 시 법에서 정한 기간 (단순교체 10일, 재설치 20일)을 꼭 지켜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민원인이 제출한 계획 기간이 부적합 또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방서 기간 적합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행기간 최대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p> <p>고장정도, 수리기간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하면 됩니다.</p> |
| 101 | <p>점검인력 배치확인서 5일 여부 꼭 확인해야하는 것인지? 위반했을 시 점검업체 처벌조항이 있는 것인지?</p> <p>57번 답변 참고(「소방시설법」 제22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관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p> |
| 102 | <p>자체점검의 면제나 연기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ex. 6개월, 1년 등)</p> <p>면제나 연기 신청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상태 유지를 위해 신속히 수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함)</p> |
| 103 | <p>자체점검 연기기간은 최대 작동기능점검은 1년, 종합정밀점검은 6개월인지? (작동은 1년에 한번, 종합은 6개월 후 작동기능점검)</p> <p>102번 답변 참고</p> |

| | |
|-----|--|
| 104 | 일반→작동기능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 기준, / 증축, 대수선등 작동→종합대상은 증축, 대수선 일자를 기준인지, 기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하는지? 3번 답변 참고 |
| 연번 | 질의내용(광주본부) |
| 105 |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 시 증빙서류(단전·단수 등) 필요 여부?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첨부(필요시 단전·단수 증빙서류 보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 토록 규정하고 있음 |
| 106 | 이행계획서 적합 통보 또는 부적합 통보 문서로 내부결재 시 해당 서식에 대한 부분은 본부 차원에서 통일된 서식을 만들 것인지 여부?(통일된 서식을 사용 않는다면, 각 관할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이행기간을 달리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특별한 서식 없음) |
| 107 |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이나 자진으로 옥내소화전 설치, 사용하고 있는 대상(3급)에 대하여 관계인이 직접 점검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사항 많음. 현재 법대로 해석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SP설비만 관계인이 점검 가능하다 안내하고 있음) - 옥내소화전설비는 자진설비라도 관리업자가 점검토록 권장하고 관계인이 점검하더라도 점검비를 갖추어야함 옥내소화전설비가 자진설비로 설치된 경우 관계인 점검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토록 하고 있고, 펌프성능시험 등을 하여야 하므로 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권장 필요 |
| 108 | 중대위반사항 즉시조치 부분도 이행계획서상에 기재하여 제출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점검 시 지적사항으로 중대위반사항이 생길 시 즉시 조치, 조치 된 것으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에 불량사항란에 넣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 |

| | |
|-----|---|
| | <p>중대위반사항은 이행계획서 제출 시에 즉시조치 사항(공사계약서 또는 공사진행 사항 등)을 기재 ※ 완료되었더라도 불량사항란에 기재</p> |
| | <p>관리업자가 점검 중 중대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즉시 조치 완료된 경우에는 점검결과보고서에 작성안해도 됨. 다만, 중대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에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해야 함</p> |
| 109 | <p>어떤 사유까지는 면제가 가능하고 어떤 사유는 연기가 가능한 것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p> <p>“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만 면제 신청 가능(시행령 제33조 제2항)</p> |
| | <p>「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 가능합니다.</p> |
| 110 | <p>(자체점검 점검자) 작동대상인 간이SP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을 점검자에 일반 소방안전관리자도 점검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p> |
|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가능하다 적혔음)</p> <p>가) 관계인(해당 건축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포함)</p> <p>※ 관리사기술사 필수조건 아님</p> <p>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p> <p>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p> <p>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p> |
| | <p>해당건축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도 작동점검 가능합니다.</p> |
| 111 | <p>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면 평가를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려면 점검실적이 있어야함. 그럼 점검실적이 있을 수 없는 신생 업체의 경우 점검능력 평가를 받을 수 없고 자체점검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보고서 접수할 때 업체가 평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p> |
| | <p>「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참조</p> |
|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및 별표 7에 따라 신규로 업을 등록하는 자도 점검 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p> |
| 112 | <p>이전에는 사전통지 절차가 있어서 지적사항이 잘못나오는 등의 경우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면 의견제출을 통해 검토 후 수정이 가능했음. 이제 사전통지 절차가 없어졌는데 지적사항을 수</p> |

| | |
|-----|---|
| | <p>정해야할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계획서 제출 후 지적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이행계획 미완료 시에는 사전통지(의견제출) ⇒ 조치명령 <p>이행계획서 제출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인이 수정하여 제출 가능</p> |
| 113 | <p>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관련 업무지침에 의하면 이행계획서상 기재된 기간이 시행규칙에 따른 기간에 부적합하거나 기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우편송달 기간을 포함하여 이행기한 산정 후 문서통보 하라고 되어있는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산정(10일 또는 20일)에는 초일·공휴일·토요일을 포함(기준과 같음) - 구체적인 기간 산정 예시가 있는지? 지침 등은 없으나 어느 정도 소방서별 통일된 기준 필요 <p>자체점검결과(이행계획 완료) 보고기간에는 초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미산입. 다만, 이행 계획 기간 산정 시에는 초일, 공휴일 및 토요일 포함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고장정도, 수리기간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행기간 산정할 것</p> |
| 114 | <p>관계인이 이행계획 기간 산정 시에는 초일 · 공휴일 · 토요일을 포함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12.14. 점검완료 후 이행계획을 12.30.일 까지 완료 예정으로 제출할 때, 소방서 담당자가 필요 기간을 10일 이내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관계인은 당초에 언제까지 완료 예정으로 제출했어야 했는지? <p>관계인이 보고서 제출할 경우에는 초일 · 공휴일 ·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이행계획 기간에는 초일 · 공휴일 · 토요일 포함됩니다.</p> |
| 연번 | 질의내용(대전본부) |
| 115 | <p>자체점검 등의 연기 사유로 개정법에는 없지만 기준 유예 업무처리 지침에 있던 사항(증축, 대수선, 폐업, 건축물 미사용 등 인정이 되는 건지??</p> <p>「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을 참고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p> |
| 116 | <p>소방시설 자체점검 연기 기간 만료 후 며칠 이내에 자체점검을 진행해야 하는지?</p> <p>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연기기간을 통보할 때에 자체점검 일정을 명시하여 통보</p> |
| 117 | <p>중대사항 또는 소방시설 불량사항이 발견되어 자체점검 서류 접수 전에 조치 완료되었을 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행완료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p> <p>자체점검결과보고 전에 중대위반사항을 완료한 경우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첨부 불필요</p> |

| | |
|-----|---|
| 118 | 소방시설 등 불량사항에 대하여 조치명령 기간 산정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 | 종전 법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을 참고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산정하면 됨. |
| 연번 | 질의내용(울산본부) |
| 119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게시)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기록표를 30일 게시 후 제거해도 되는지? |
| | 30일 이상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게시)한 후 제거하여야도 됨 |
| 120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과 관련하여, 현재 추상적인 이행계획 조치기간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
| | 현재까지 없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재량권 존중 필요. ※ 법 시행 후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개선 필요 |
| 121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과 관련하여,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절차 과정으로 인해 10~20일 이내 이행이 불가한 부분에 대한 규정이 생길 계획인지? |
| | 소방시설의 고장정도, 수리기간 및 시급성 등을 고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기준 조치명령 기간 등을 참고)하여 기간을 부여하면 됨. |
| 122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와 관련하여, 기준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에 있던 '연기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계획인지? |
| | 추가할 계획 없음. 다만, 연기신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결정할 때 자체점검 이행시기를 명확히 하여 문서로 통보 필요 |
| 123 | 「소방시설법」 제22조와 관련하여, 최초점검 후 6개월 뒤 작동점검은 실시해야 하는지? |
| | 최초점검 실시 후 작동점검 대상은 그 다음 해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점검 대상은 그 다음 해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에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6개월 뒤에 작동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함 |
| 124 | 「화재예방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관련하여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 기간 연장 신청 시(신청기간 불명확), |
| | 「소방시설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에 따른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신청과 동일한지 ? |
| | 「화재예방법」에서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과 관련, 신청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준용할 필요는 없음. 조치명령등 기간완료일까지 신청하면 됨. |

| | |
|-----|--|
| 125 | <p>자체점검 불량 시 이행기간이 너무 짧아 아파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까지 진행되면 30일은 걸리는데 법령에 나와있는 최대 기간이 20일밖에 되지않아 관계인들의 문의가 많은데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제출해도 상관없는지?</p> <p>소방시설의 고장정도, 수리기간 및 시급성 등을 고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기존 조치명령 기간 등을 참고)하여 기간을 부여하면 됨.</p> |
| 126 | <p>전산시스템(소민터)에 문제점이 많은 상황인데 최초점검은 전산시스템(소민터)로 꼭 제출해야 하는지?</p> <p>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향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소민터 제출 필요</p> |
| 127 | <p>자체점검 대상물 부분 연기가 되는지?</p> <p>관계인이 부분 연기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부분연기 결정하면 됨.</p> |
| 128 | <p>공동주택 전세대 점검 2년동안 100% 대상인데 협조가 안 되는 세대가 있어 100% 완료되지 않았을 시 처벌 규정은?</p> <p>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소방시설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공동주택 화재저감을 위해 행정지도 필요)</p> |
| 129 | <p>각 점포주가 분양받은 상가일 경우 자체점검 지적사항에 따른 이행이 특정 점포주로 인하여 조치가 안될 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이 아니라면 특정 점포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p> <p>* 기존은 소방안전관리자 대상 처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p> |
| | <p>128번 답변 참고(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소방시설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p> |
| 130 | <p>「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각 사유 외에 업체의 업무 차질로 늦어지거나 부품수급 등의 사유로 완료하지 못한 대상은 단서조항으로 연기사유 신청이 되는지?</p> <p>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연기신청 가능</p> |
| 131 | <p>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미제출대상 확인한 결과 폐업처리된 대상이라면 그 시기부터 관계인에게 자체점검 연기신청을 받아도 되는지?</p> <p>(예) 8월 작동점검 대상인데 보고서가 들어오지 않아 9.16.에 확인한 결과 폐업 중인 대상을 이 있는 경우, 8월부터 폐업으로 단전단수가 된 상황이라면, 9.16.부터 연기 신청을 받</p> |

| | |
|-----|--|
| | <p>아도 되는 건지? 이런 대상물은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p> <p>불가피한 경우 소방관서장 직권으로 자체점검 연기처리 가능(관계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는 관계인에게 연기 신청토록 하고, 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연기신청한 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함) / ※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부과 가능</p> |
| 132 | <p>변경된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 1쪽 하단에 관계인의 서명만 들어가면 되는 건지? 아님 업 체시설 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 서명 모두가 1쪽 하단에 다 써야 하는 건지?</p> <p>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를 기재하고 서명하면 됨. 위임장을 받아 관리업자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리업자, 관계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 계인 이름을 적고 서명하면 됨.</p> |
| 133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 관련, ▷ '바.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업자</p> <p>▶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간주하여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p> <p>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 처 분 가능</p> |
| 134 | <p>「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선임증 및 선임이력서 발급 관련, ▷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상에 선임증 발급, 미발급 선택 및 선임 이력 확인서 발급, 미발급 체크에 따라 발급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p> <p>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상에 신고인의 요구에 따라 발급 미발급 여부 결정 가능함</p> |
| 연번 | 질의내용(세종본부) |
| 135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점검인력 배치기준 [비고]란 보조 기술인력의 등급구 분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하는데, 점검인 력에 대한 등급 구분은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이나 소방공사 감리원의 기술등급에 준하여 적 용하면 되는 것인지? 별도 점검인력에 대한 등급 구분이 차후 법령 개정을 통해 진행되는 것 인지?</p> <p>「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점검자 기술 등급 신설 예정(2022.12.30. 공포·시행)</p> |

| 연번 | 질의내용(경기본부) |
|-----|--|
| 141 | <p>청 워크숍 때 업체 스케줄 등의 문제 등으로 종대 위반사항 즉시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처음 답변은 벌금, 사전통지, 조치명령 하라고 했으나, 나중에는 공사계약서 첨부하여 보고서 접수 시 제출하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p> <p>4번 등 종대위반사항 처리 답변 참고</p> |
| 142 | <p>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대상의 사용승인일 변경 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 점검을 진행해야 하는데, 빠른 날의 기준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관련 주요 Q&A 7, 8, 9번 관련 질의</p> <p>3번 등 자체점검 이행시기 관련 답변 참고</p> |
| 143 | <p>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보고서 제출한 기간 확인 방법?</p> <p>현장 표본조사 시 관계인에게 문의 또는 서류확인 등을 통해 확인</p> |
| 144 | <p>증축(별개동/가로 증축)이 아닌 세로 증축일 경우로서 증축된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될 경우 최초점검을 실시하는 것인지?</p> <p>최초점검 실시 시 기존 부분+증축부분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인지?</p>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하단 비고에는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p> <p>증축으로 인해 소방시설이 새로 신설된 경우 최초점검을 실시. 소방시설이 기존부분과 분리된 경우에는 증축부분만 실시하고 연계된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하여 최초점검을 실시함</p> |
| 145 | <p>전력구(지하구) 관련 소방시설 신설시 최초점검을 해야 하는 것인지?</p> <p>※ 전력구(지하구)는 시설물로서 사용승인일이 없으나 최초점검을 해야한다면 기준일을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삼아도 되는 것인지? 최초 점검후 다음연도부터는 작동점검만 해도 되는 건지? 종합점검 시기에는 시설물의 경우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문구가 없음</p> <p>최초점검 대상은 소방시설 신설 + 건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p> <p>신축 · 증축 ·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없이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이 소급 설치되는 경우에는 최초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소방시설완공검사일 다음연도부터 자체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p> |
| 146 |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다수관계인이 속한 대상물의 경우에 각 개별 관계인에게 조치명령을 통보하였는데 개정 후 이러한 대상물의 전용부 불량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은 개별 관 |

| | |
|-----|---|
| | <p>계인(소유자·점유자)이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p> <p>관리단이 구성이 안된 경우라면 전용부 불량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제출은 개별 관계인이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리업자가 위임받아 대리작성 제출도 가능</p> |
| 147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을 보면, 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p>이 경우 이행완료보고서 및 이행계획 건별 전후사진 증명자료,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메일 또는 FAX를 통해 제출을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담당자에게 직접 소방서 방문하여 제출하는지?</p> <p>서면, 메일, 팩스 또는 전산시스템(소민터)으로 제출 가능. 가급적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산시스템(소민터)로 제출</p> |
| 148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쪽 하단에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안전관리자·관계인 서명란이 있는데, 보고서 제출은 관계인이 해야하는데 소방시설관리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서식에 작성되어 있는 이유는? 위임장 첨부하여 소방서에 보고서 제출시 관계인 서명이 아닌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서명을 위한 작성인지?</p> <p>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위임받은자의 이름으로 제출 가능합니다.</p> |
| 149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쪽 하단 첨부서류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제출하는 경우 소방시설등점검표가 작성되어 있는데, 소방시설관리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위임장을 첨부하여 소방서 보고서 제출시 점검표를 소방서에 제출하는 것인지?</p> <p>소방시설점검검표는 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제출하는 서류임</p> |
| 150 | <p>60일 이내 최초점검 이후 소방시설 불량 발생 시 소방시설업체(설계, 공사, 감리) 처벌 가능 여부? → 건물주(발주자) 처벌 요청 시 or 미 요청시</p> <p>최초점검 도입목적은 부실 시공 및 감리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나 부실 시공 및 감리가 명백한 경우 현장 조사 후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은 가능</p> |
| 151 | <p>영 제34조 중대위반사항 중 2번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의 해당범위가 광범위한데 수신기에 표시된 소방시설 전체 범위로 보는 것이 맞는지?</p> |

| | |
|-----|---|
| | 감지기 불량 등으로 수신기 음향을 정지하거나 연동된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경우 등 수신기에 표시된 소방시설 전체임 |
| 152 | <p>영 제34조 중대위반사항 중 4번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의 해당범위가 광범위한데 방화문이나 방화셔터가 완전밀폐되지 않는 경우로 해석해서 적용시켜도 되는지?(완전 밀폐 불량, 폐쇄력 불량 등)</p> <p>“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본래의 기능”이란 방화구획의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완전밀폐를 말하는 것은 아님. 철거 또는 훼손되어 화재시 연소확대우려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함</p> |
| 153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자체점검 이행계획 완료기간 산정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2.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부터 20일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음. <p>※ 질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적내역은 여러 사항이 산재되어 있어 10일 이내, 20일 이내인 사항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20일 이내로 산정하면 되는지 각각 10일, 20일이내 산정해야 하는지? 2. 각각 산정이 될 경우 10일 이내 조치사항인 것과 20일 이내 조치해야하는 사항을 각각 해당 완료일에 확인 해야하는지? 최장소요되는 지적사항의 완료일에 모든 사항을 확인하면 되는 것인지? 3. 제23조제5항에 “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 사항처럼 여러사항이 산재되어 있고 복잡한 경우 담당자 재량으로 이행 완료 기간을 30일 산정 후 해당 완료일에 확인하면 되는 것인지? <p>이행계획 완료기간 산정은 소방시설별로 각각 산정하거나, 최장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다만, 최종 확인은 이행계획 완료일 이후 관계인이 제출한 이행계획 완료 증빙자료 제출 후 10일 이내 실시</p> |
| 154 | <p>관계인이 이행계획서 제출 시 기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수정이 가능한지? 이럴 경우 내부결재를 통해 기한 산정 후 산정된 이행기간 문서를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p> <p>이행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과 협의 후 문서로 통보(10일 이내)</p> |
| 155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소방시설을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10일 이내 이행 계획의 완료기간을 정하라고 되어있으나, 업체 선정과정에서 아파트 및 특급대상물 등은 계약방식이 입찰로 진행하고 있어 계약방식선정→입찰공고→현장설명→업체선정→착공→준공 |

| | |
|-----|--|
| | <p>등의 절차 진행시 최소 필요기간이 8주라고 하는데, 단서조항(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에 따라 이행계획서 상 해당 과정의 내용을 기입한다면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8주 이상 정할 수 있는지?</p> <p>소방시설 고장정도, 수리기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가능함. 다만, 절차상의 이유는 기간 연장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최대한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
| 156 | <p>기존 폐쇄, 공사 및 미사용 등으로 유예 처리 했던것이 신법의 연기/면제 사유에는 빠졌는데 연기가 가능한 근거는? 바뀐 연기신청 서식에 그밖의 사유(폐쇄, 공사 등) 적는 부분이 빠졌는데 어떻게 표시 및 처리 해야 하는지?</p>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연기 신청서 신청 내용란 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기재하여 연기신청 처리하면 됨</p> |
| 157 | <p>「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가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보고서 및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어길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는데, 1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제출했다는 증빙자료는?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해석 및 적용하고 업자가 관계인에게 준 보고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적발의 증빙자료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p> <p>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제출한 날짜와 보고서에 기재된 일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오타 등 기재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계인의 확인서 등이 필요</p> |
| 158 | <p>자체점검 면제 및 연기 등에 따른 추후 자체점검 시기(기준)는?</p> <p>※ 〈기존 업무지침〉 기한만료 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내</p> <p>연기결정 통보시에 기한을 명시하여 통보</p> |
| 159 | <p>영 시행 이전의 점검대상이 자연제출/ 미점검 시 별칙규정 적용은 구법? 신법? (점검시기는 구법적용이되지만 자연제출 등의 위법행위는 신법이후에 발생된다고 판단됨)</p> <p>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신법 적용</p> |
| 160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이행계획서(10일,20일, 달리정한 기간)의 적합판단 기준은? 이행계획서에 기재된 기간과 다르게 통보할때만 문서로 통보하는 건지?</p> <p>예) 이행계획서의 기간 40일(규모·내부절차등 사유) 작성 제출 시, 이행계획서의 기간을 인정할 때 제23조제5항 후단을 적용하여 구술 등으로 40일 통지?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제1·2호의 기간과 다르니깐 기간을 달리 정해서 문서 통지?</p> <p>통보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기간을 달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문서통보를 원칙으로 함. 관계인이 정한 이행계획 완료 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문</p> |

| 연번 | 질의내용(경기북부) |
|-----|---|
| 162 | <p>이행계획의 시작일 기간의 기준 명시 필요</p> <p>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계인과 일선서 담당자와의 이행계획 기간 산정에 있어 혼선 우려</p> <p>② 평일에 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제출일 다음날부터 이행계획 시작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보고서가 금요일에 제출되거나 보고서 제출일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 이행계획 통보에 어려움이 있고, 계획된 공사 일정 내에 조치하기 어려울 수 있음</p> <p>※ 이행계획 시작일 :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초일 불산입, 공휴일 제외 후 시작</p> <p>162번 참고(관계인이 보고서 제출할 경우에는 초일 · 공휴일 ·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이행계획 기간 산정 시에는 초일 · 공휴일 · 토요일 포함)</p> |
| 163 | <p>이행계획 완료 후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법 제23조제4항)</p> <p>① 이행계획 완료 결과가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법에 명시된 부분 외에는 담당자가 꼭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p> <p>② 기준 시달된 문서인 “청 화재예방과-2727호(2019.4.15.)”와 달리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한 건 아닌 건지</p> <p>③ 이행 완료 결과가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최대 며칠 이내에 현장확인 해야하는지 지침에 기재 요청</p> <p>1) 법 제23조제4항에서 이행계획 완료 결과가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그 이행계획 완료여부를 확인도록 하였으며,</p> <p>2) 관계인이 제출한 증명자료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불필요</p> <p>3)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10일 이내 현장 확인</p> |
| 164 | <p>이행계획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행 완료 연기에 대한 기간(시행규칙 제24조) ① 지침 상의 최대 일수 명시 필요 ex) 최대 1년</p> <p>고장정도, 소요기간 및 시급성 등을 고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p> |
| 165 | <p>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 교체 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에서 이행을 위한 기간</p> <p>① 지침상의 최대 일수 명시 필요 ex) 최대 90일</p> <p>고장정도, 소요기간 및 시급성 등을 고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p> |

| | |
|-----|--|
| 166 | <p>자체 점검 면제, 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① 지침상으로 법률 단어에 대한 정의 필요함 ex) 면제: 자체점검을 해당 연도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연기: 자체점검을 해당 월에만 실시할 수 없는 경우로 해당 연도의 다른 달에 실시할 수 있는 경우</p> |
| | <p>영 제33조제2항 후단에서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면제 가능하고 다른 사유로는 면제 불가능함</p> |
| 167 | <p>자체점검기록표 게시 기간(30일 이상)에 대한 기준 (시행규칙 25조)</p> <p>① 게시하고 30일이 지나 점검기록표를 바로 미게시 할 경우 적발 가능 여부 ② 법령상 문구를 “30일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로 해석 가능한지</p> |
|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도록 명시하였음(게시기간: 30일 이상)</p> |
| 168 | <p>점검인력 배치기준일 초과나 배치 부적합 시 업무처리 방법 (법 제22조제2항)</p> <p>① 보고서 제출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일 초과 및 배치 부적합이 발견되었을 경우 바로 적발 가능 여부 ② 화재예방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 거짓점검이나 불성실점검으로 행정처분을 해도 무관한 건지?</p> |
| | <p>배치기준일 초과나 배치 부적합시 「소방시설법」 제22조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른 표본조사나 「화재예방법」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후 행정처분 가능함</p> |
| 169 | <p>관계인이 점검시 점검장비 사용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p> |
| | <p>관계인이 점검할 때 표본조사나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 점검장비 사용여부 확인</p> |
| 170 | <p>중대위반사항 조치시 조치완료 결과를 점검결과보고서와 이행계획서를 함께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경미한 불량사항조치완료 사항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기존에는 점검결과에 (현지시정완료)만 기재후 제출했음)</p> |
| | <p>자체점검시 경미한 불량사항을 시정한 경우 또는 중대위반사항을 조치완료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서 작성 불필요</p> |
| 171 | <p>업체문의) 세대별 점검후 점검현황 제출시 서식유무 별도 서식 없음(관계인이 요구하는 입주민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p> |

| | |
|-----|---|
| 172 | 자체점검 결과 이행확인서 작성 시 지적사항이 많은 경우 페이지 수가 상당할 들토 보이는데 간략하게 별첨으로 첨부가능한지? 별첨으로 첨부 가능함(소민터에 별도 첨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 |
| 173 | 공동주택 세대점검 시 관계인의 장기 부재로 인한 세대 점검이 불가피한 경우 세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경우에 증빙자료를 받아서 첨부를 해야 되는지? 72번 답변 참고(점검결과보고서 제출시에는 세대점검률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리자는 점검하지 못한 사유를 점검현황을 작성·관리하면 됩니다.) |
| 174 | 최초점검 사용승인일 관련하여 도청 혹은 시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소방시설법」 제6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허가부서에서 소방관서로 통보하고 있으며(소방서 건축민원 담당자로부터 사용승인일 통보 요청), 국토부 건축물이력관리시스템(건축물대장)과 예방소방행정시스템 연계·구축 예정임 (2023년말 완료 예정) |
| 175 | 점검업체가 관계인 대신 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업체가 관계인에 제출한 보고서(점검업체용 보고서) 갑지의 사본으로 위임장의 역할이 가능할지? 위임장 서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민법」에 따른 위임장도 가능(신분증 사본 첨부 제외)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및 전산보고 관련 업무처리 지침」(2021.7.2.)서식 사용가능 |
| 176 | 법 제24조제2항에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공개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공개 가능 |
| 177 | 점검실시 후 보고서 제출 전 중대위반사항을 조치하였을 경우, 기타 다른 불량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행계획서 대신 이행완료보고서만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지? 불량사항이 없는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불필요. 자체점검결과보고서만 제출 |
| 178 | 공동주택 세대 전수점검 내용 중 2년의 기간동안 100% 점검이 완료 되었다면, 이후 다시 2년마다 새로운 전수점검을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 분기(작동대상은 반기)별로 최근 2년 간 점검세대를 확인하였을 때 계속 100%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인지? 2년마다 세대별 점검 필요 |
| 연번 | 질의내용(강원본부) |
| 179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의 규정에서 연기의 사유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는 재난, 경매, 질병, 부도 등의 사유만 명시됨. 위 사유는 실무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이고, |

| | |
|-----|---|
| | <p>① 기간내 완료하고 싶지만 공사업체의 업무 과다로 계약이 늦어지는 경우 ② 관공서, 군부대 등 예산신청 절차 등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도 연기 사유가 되는지?</p> <p>「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입법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사유가 중대한 위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소방시설의 고장정도, 수리기간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 연장 필요</p> |
| 180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1) 관련, 관계인이 점검할 수 있는 범위에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도 포함되는지? 또한,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대상 급수와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는지?</p> |
| 180 | <p>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포함)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펌프방식, 캐비닛형 등 모두 포함) 2)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이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체점검 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3)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이 별도로 제정됩니다.</p> |
| 181 | <p>「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가목4)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중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다세대주택) 또는 라목(기숙사)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음. 기존 아파트에 대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해당 여부 및 자체점검 보고 지속 여부?</p> <p>1)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가목4)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의 아파트에 해당이 되고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며 자체점검도 실시하여야 함.</p> <p>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p> <p>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p> |

| | |
|-----|---|
| | 2) 또한,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8호자목의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되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며,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함. |
| 연번 | 질의내용(충북본부) |
| 182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 면제 또는 연기에 관한 규정에 있어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담당자 재량으로 면제 또는 연기를 판단하라는 것인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 또는 연기사유에 해당이 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임을 소명할 때 면제 또는 연기가 가능하다는 규정임. |
| 183 | 세대 내에 '중대위반사항' 중 감지기 작동불량이 나왔는데 세대인의 부재(연락두절 및 외국출장 등)로 인해 이행(수리)이 불가능한 경우 처벌대상은 누구인지? 세대 내에 설치된 감지기가 일시적으로 작동불량인 경우는 중대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다른 세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조치를 한 후 향후 수리해야 할 사항임 |
| 184 | 「소방시설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자체점검 결과 공개 조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이트 개설 및 사용 관련 준비되어 있는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왜 사전고지가 없는지? 자체점검 결과 공개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거나 화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면 됨 |
| 185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7호 관련, 자체점검은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함. 자체점검 시 점검장비 사용 의무화에 따른 유무 확인 방법과 담당자 확인이 필수인지, 증빙 자료 관련 사항은 무엇으로 갈음 하는지? - 업체 대여시 대여비 계산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는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은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자체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업자등이 자체점검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임. 점검장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의심 되는 경우 사용여부를 직접 조사하거나 자료제출 명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님) |
| 186 |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 적합, 부적합 관련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음. 다만, 기간을 달리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의 고장정도, 수리기간 및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최대한 빨리 통보 (최대 10일 이내 처리) |

| | |
|-----|---|
| 187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자체점검 조치·이행 명령 연기신청 서식은 있으나 조치·이행 명령 서식 없는 이유는?</p> <p>통상적으로 조치·이행명령은 문서형식으로 하고 있어 별도 서식을 만들지 않았으며, 필 요한 경우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하면 됨</p> |
| 188 | <p>점검결과보고서는 적정기간 내에 제출하였으나, 이행계획서를 보고서 제출일자 보다 늦게(또는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p> <p>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시에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보고서 접수 시에 담당자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수리해야 하는 사항임. 소민터로 제출시에는 이행계획서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 불가함</p> |
| 189 | <p>‘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자체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의 ‘자체 없이’는 어느 정도 기간을 말하는 건지?</p> <p>‘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자체 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 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자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 석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함</p> |
| 192 | <p>이행계획 기간 협의가 필요하여 소방서에서 기간산정을 해야하는 경우 시행규칙의 기간(10일, 20일)에 맞추어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해도 되는지?</p> <p>소방시설의 고장정도, 수리기간 및 시급성 등을 고려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p> |
| 193 | <p>자체점검 자격구분란에 특급점검자에 대해서 신설되었는데 특급점검자에 대한 자격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 2의 ‘다’(자체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에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없음. 언제 시행될 예정인지?</p> <p>2022.12.31. 이전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공포 · 시행 예정임</p> |
| 194 | <p>현재 자체점검 조치명령 서식이 없는데 당장 12월 점검대상에 대하여 조치명령 발부 시에는 어떠한 서식으로 발부해야 하는지?</p> <p>2022.년 12월 1일부터는 이행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조치명령을 문서형식(기존 서식 활용 가능)으로 발부하면 됩니다.</p> |
| 195 | <p>이행계획서 관련하여 연기신청 횟수 제한은 없는지?</p> <p>제한 없습니다.</p> |

| 연번 | 질의내용(충남본부) |
|-----|--|
| 196 | 「소방시설법」 부칙 제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최초 점검과 자체점검 면제, 연기 등 여러 개정사항이 존재하는데 어느 항에 대한 내용을 최초로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부터 적용하는지? |
| 196 | 건축물 등이 신축 · 이전 · 개축 · 재축 · 증축 · 용도변경 등 되어 소방시설이 신설(자동화 재탐지설비 이상)된 경우 2022.12.1.부터 최초점검을 건축물 등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하면 됩니다.(제22조제1항제1호 규정임) |
| 197 |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서식 중 9쪽 작성 방법 중 8번 “교육훈련(전년도)” 라고 나와 있는데 보고서 서식에는 교육훈련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둘중 어떤게 맞는 건지? |
| 197 | 작성 방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교육훈련을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연도에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연도에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
| 198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체점검 연기사유에 유예내용이 스며들었다면, 부분연기는 가능한 지? 2. 이행계획 완료 연기 사유(기준 유예지침은 스며들지 않은 것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 갑자기 인테리어 공사 및 리모델링 등으로 전기를 끊거나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등 연기사유처럼 시장, 상가, 복합건축물 등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이행계획 완료 연기 사유에 추가 필요(기준에는 제4항으로 연기 가능했는데, 빠짐으로써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3. 이행계획 완료 연기, 조치명령등(이행명령, 조치명령)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제35조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 연기는 3일 전까지 연기신청 하여야 하고, 영 제49조에 따른 조치명령등(이행명령, 조치명령) 기간 연장은 5일 전까지 신청토록 한 이유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분연기도 가능 2) 영 제35조제4항 그 밖의 사유에 영 제49조제4항 등 준용 가능(폭넓게 규정) 3) 자체점검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신청(자율성이 강함)과 법 제54조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성격(강제성이 강함)이 달라 신청 기간에 차등을 둠 |
| 199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대위반에 대한 조치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p>① 자체점검 지적내역서에 중대위반사항이 적혀있을 경우 이행계획서 내에 있는 계획사항에 다른 것들보다 좀더 기간을 짧게 정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 이행계획서 내에 계획사항은 ①과 같은 의도로 만든 것인지?</p> |

| | |
|-----|---|
| | <p>② 아니면, 이행조치기간과 동일하게 다 적어도 상관없는 것인지</p> <p>2. 중대위반에 대한 조치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없다면, 자체점검을 할 때 즉시 처리 해야되는 것인지? 이 벌칙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업자등이 점검하는 경우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자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은 자체 없이 수리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함. 2) 소방서에 보고서 제출일까지 수리가 안된 경우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점검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기간은 달리 정할 수 있음) 3) 중대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 적발은 자체점검 표본조사 등을 통해 적발 |
| 200 | <p>「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알림</p> <p>- 6. (행정사항) 사전통지 미실시 하게 될 경우, 이행명령 통지 발부 후에 관계인으로부터 적법한 의견을 받았을 경우</p> <p>※ (기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수용하게 되어있었음</p> <p>관계인이 제출한 이행계획 기간에 대한 사전통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처분이 아니기에 사전통지(의의신청) 절차를 두지 않고 구두 협의 등을 통하여 기간을 협의하면 됨</p> |
| 201 | <p>아파트 세대별 점검현황 서식 ① 정해진 서식이 있는지? / ② 관계인 보고서 제출시 점검현황도 제출 하라고 나와 있는데, 제출시에는 점검날로부터 고작 15일 이내인데, 점검계획 및 현황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점검현황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p> <p>별도의 점검현황 서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음, 비고란에 점검기간 중에 전체 1,000세대 중 300세대 점검(또는 점검시까지 전체 1,000세대 중 500세대 점검)했다고 작성하면 됨. 다만, 관계인은 세대별 점검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p> |
| 202 | <p>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관련 주요 Q&A</p> <p>- Q33, 작동점검만 실시대상: 입주민 점검 + 관리업자 세대점검 = 50% 이상, 종합대상도 동일하게 입주민 점검 + 관리업체세대점검이 맞는 것인지</p> <p>세대점검은 입주민, 관리자, 관리업자 등 모두 점검 가능(2년 이내 실시)</p> |
| 203 | <p>특급점검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특급기술자, 특급감리원인지?</p> <p>특급점검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 점검 점검자(특급, 고급, 중급, 초급) 중 특급점검자를 말함</p> <p>※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 신설(2022.12.31. 이전)</p> |
| 204 | <p>아파트나 대형대상물의 이행완료보고서 제출 시 불량사항이 많을 경우 각 건별로 전후 사진</p> |

| | |
|-----|--|
| | 을 전부 받아야 하는지 동일 불량건의 대표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수십, 수백개 이상의 동일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 |
| | 이행계획 완료 여부는 불량사항이 많을 경우 불량 건의 대표사진만 받고, 완료 증명자료가 의심될 경우 현장확인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 205 | 관계인등이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때 전후 증빙사진에서 조치 후의 사진과 공사계약서만 있을 경우 결과처리 가능한지?(조치 이전 사진이 없음, 간혹 업체 등에서 조치 전 사진 분실) |
| 205 | 전 · 후 사진이 없을 경우 조치 후의 사진과 공사계약서만 있을 경우에도 완료처리 가능. 의심되면 현장 확인 |
| 206 | 이행계획서 제출 후 관계인이 부도 · 경매 · 유치권 행사 등의 이유로 관계인과 연락이 두절 되었을 경우 담당자가 이행계획 완료 연기가 가능한지?(연기 기한은 경매 낙찰 등으로 소유권이 정리될 때까지) |
| 206 | 소방서장 직권으로 이행계획 완료 연기 가능(다른 방법이 있나요?) |
| 207 |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은 폐지 되는 건지? |
| 207 | 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은 폐지됨(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지침은 유지) |
| 208 | 연기 신청이 법 제22조에는 기간이 3일 이내 통보로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서식 7에는 별도의 기간이 없습니다. |
| 208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만료 3일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
| 209 | 최초점검(종합) 사용승인일월이 12월일 경우 60일 이내 2월에 최초점검을 했다면 6개월 후인 8월하는지? 사용승인일월 후 6개월되는 달에 가는게 맞는지? |
| 209 | 최초점검(2월), → 종합(12월) → 작동(그 다음해 6월) → 종합(12월) |
| 210 | 아파트 세대 전수점검을 관리소장이 충분한 연락을 취했음에 불구하고 세대에서 비협조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210 | 소방서에서 세대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함(행정지도 등) |
| 211 | 아파트 세대 전수점검 미실시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211 |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발견 시 그에 따른 처벌 가능(세대 전수점검 미실시한 사유만으로 관리자 및 입주민 처벌 불가) |
| 212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서 공장, 창고시설 등이 삭제되었는데 기존 설치된 대상물은 |

| | |
|-----|--|
| | <p>자동화재속보설비를 정지, 폐쇄, 철거한다 하더라도 소방시설법의 위배되는가?</p> <p>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철거는 가능. 다만 정치·폐쇄는 불가(법 위반)</p> |
| 213 | <p>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관리업자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10일 이내에 준 것을 확인하는 근거 및 방법은?</p> <p>표본조사 등을 통해 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제출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일자 등 확인 및 관계인 진술 확보(「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8조)</p> |
| 214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 이행완료 보고서에 이행계획 견별 전·후 사진 등 증명자료 및 소방시설공사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공사 이전 사진을 첨부 없이 공사 완료 사진만 첨부 했을 시?</p> <p>관리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다른 경우 또는 공사전 사진을 안찍은 경우에는 전·후 비교가 불가하기에 완료된 사진 및 소방시설공사계약서 첨부만으로 완료처리 가능.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본조사 실시</p> |
| 215 | <p>이행계획 완료 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조치명령을 통보하면 되는 것인지?</p> <p>과태료 처분 및 조치명령 발부하면 됨</p> |
| 216 | <p>조치명령 등(조치명령, 이행명령) 이것에서 이행명령이란 정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p> <p>「소방시설법」 제5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라함. 조치명령(대물)과 이행명령(대인) 혼용 사용</p> |
| 217 | <p>자체점검 보고서에 위임장 첨부의 위임장 양식을 따로 배포해 주는건지</p>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시 위임장 서식이 있었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위임장 서식을 만드는 것은 부적정하여 삭제됨(기존 서식 활용)</p> |
| 218 | <p>기존 조치명령보고 외에 이행계획 완료대장을 만들어서 유지해야 할 것 같은데 서식이 있는지? 각 서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인지?</p> <p>별도 서식은 따로 정하지 않음. 기존 조치명령서 발부 대장 활용</p> |
| 219 | <p>〈점검기록표 게시〉 ① 규칙 별표 5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정비기간을 기재를 정확히 해야하는지 여부, ②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자체점검 대상은 모든 대상물인지? 아님 공개해야 할 대상물이 있는지?</p> <p>자체점검기록표 게시 할 때 정비기간은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p> |

| | |
|-----|--|
| | 며, 자체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모든 대상물이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음(공개 안해도 됨) |
| 연번 | 질의내용(전북본부) |
| 220 | <p>공동주택 세대 점검 시 101동은 종합점검, 102동은 작동점검으로 각각 다른 경우, 101동 2023년에 100% 점검하고 102동은 2024년 100% 점검하면 인정 해주는지?</p> <p>2년 이내 세대점검 완료하면 됨.</p> |
| 221 | <p>공동주택 점검 결과보고 제출 시 세대점검 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을 작성하여 점검한 세대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별도 자체서식 만들어서 제출해도 되는지?</p> <p>1) 별지 제36호서식은 입주민이 세대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서식임.</p> <p>2) 관리업자 또는 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도 서식 없이 점검 가능</p> <p>3) 자체점검 결과보고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8쪽 소방시설등 불량 세부 사항 기타란에 총 1,000세대 중 300세대 점검함으로 표기하여 제출하거나 점검한 세대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 가능</p> <p>4)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을 작성하여 관리</p> |
| 222 | <p>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상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점검해야 하는데 관계인이 한 경우, 조치 방법은? 미실시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한지?</p> <p>2022년도 자체점검 계획 및 예산편성이 끝난 상황임을 고려, 2022.12.31.까지 관계인 점검하여 결과보고서 제출한 경우 인정.</p> <p>관계인 점검대상에 대해서는 2023년도부터는 불가함을 안내할 것</p> |
| 223 | <p>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에 자진설비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될 경우 최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p> <p>자진설비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추가로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최초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다중이용업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다만, 자체점검 대상에 해당되어 자체점검시에는 해당시설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p> |
| 224 | <p>여러개 동 중 한동을 증축해서 시설이 증설될 경우 해당 동만 최초점검 및 별도 관리하면 되는지?</p> <p>소방시설이 별도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동만 최초점검을 하고, 소화펌프 및 수신기 등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최초점검 해야 합니다.</p> |

| | |
|-----|--|
| 225 | <p>증축으로 인하여 옥내소화전 방수구가 추가될 시 건물 전체를 최초점검 실시해야 하는지?</p> <p>소방시설의 종류가 신설된 것이 아니므로 최초점검은 안해도 됩니다.</p> |
| 226 | <p>관리업자가 실시한 결과보고서의 경우에도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는건지?(기준의 배치일 기준은 상관 없는 건지)--시행규칙 제22조</p> <p>4번 답변을 참고</p> |
| 227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결과보고서 제출일에 대한 질의</p> <p>2022년 11월 점검 후 2022.12.1. 이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간은 종전 법에 따라 7일 이내인지 개정 법에 따른 15일인지?</p> <p>4번 답변을 참고하여 개정 법에 따라 15일 이내 제출(신법우선의 법칙)</p> |
| 연번 | 질의내용(경북본부) |
| 242 | <p>자체점검 연기 사유 중 건축물 폐쇄 또는 폐업도 연기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건축물 폐쇄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p> |
| | <p>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연기 신청서에 건축물이 폐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관계인이 입증- 단전 · 단수 등)하여 제출</p> |
| 243 | <p>세대 점검의 경우, 2년 이내 100% 이상은 해야되는데, 2년마다 매번 세대점검을 해야 하는지?</p> <p>최소 2년 이내 세대점검을 해야 함(가스안전점검은 1년에 2회 이상임)</p> |
| 244 | <p>이행계획 미완료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조치명령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부품수급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행을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p> |
| | <p>※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르면 고의가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불가</p> <p>불가피한 사유로 이행계획을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연기신청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가능함</p> |
| 245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최초점검을 60일 이내 종합점검을 하여야 하는데,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가 신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증설도 포함되는 것인지?</p> |
| | <p>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란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것을 말함</p> |
| 246 | <p>소방안전관리자 유예 및 자체점검 연기신청을 동시에 하게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서 및 자체점검 연기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p> |

| | |
|-----|--|
| | 같이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처리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작성 · 제출 |
| 247 | <p>건축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등)이 법 개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어 3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별도로 없는데 법 내용에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최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p> <p>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최초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p> |
| 248 | <p>공동주택 특수감지기 점검 가능 시 관리자가 세대 미방문해도 되는지? 아니면 점검표에 보면 다른 사항 점검위해 방문해야 하는지?</p> <p>아날로그감지기 등 수신기에서 원격점검할 수 있는 경우 세대 직접방문 안해도 됩니다. 다만, 단선 등 이상 신호가 있는 경우 방문점검해야 합니다.</p> |
| 249 | <p>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접수 등 업무처리 방법(소방서 담당자)</p> <p>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및 이행계획서(불량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p> <p>② ② └ 불량사항(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 수리(종결)</p> <p> └ 불량사항(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 이행계획 기간 적정 : 구술, 문자 등</p> <p> └ 이행계획 기간 부적정 : 문서 통보</p> <p>※ 이행기간을 달리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이행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p> <p>③ (관계인) 이행계획 완료 보고 : 이행계획 완료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p> <p> ↳ 이행계획 기간 내 완료 불가 시 증명자료 첨부하여 연기 신청</p> <p>④ (소방서) ④ └ 이행계획 완료 보고가 적정한 경우 - 종결</p> <p> └ 이행계획 완료 보고가 부적정한 경우 └ 과태료 부과</p> <p> └ 이행계획 조치명령 순</p> <p>※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및 이행계획 완료 보고 등은 전산시스템(소민터)으로 제출 가능(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대리인도 제출 가능)</p> |
| 연번 | 질의내용(경남본부) |
| 250 | 자체점검 이행계획서 이행기간 관련하여 법령에는 10일 이내, 20일 이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행기간을 준수해서 계획서 제출하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소방시설 수리, 교체, 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각호 기한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최대 며칠까지 이행기간을 통보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의 경우 기계, 기구 수리, 정비하더라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수리 |

| | |
|-----|---|
| | <p>하는 방식이라서 30일 이상 이행기간을 요청하는데 관계인이 원하는 기간을 최대한 맞춰줘야 하는지 아님 법령의 취지대로 이행가능한 최단기간을 통보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p>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후단에서 기간을 달리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소방시설의 고장정도, 수리기간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p> |
| 251 | <p>이행기간 통보 시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서식이 있는지, 조치명령 하듯이 공문 작성 후 우편발송 해야 하는지 등</p> <p>249번 참고</p> |
| 연번 | 질의내용(창원본부) |
| 252 | <p>「소방시설법」 제23조제3항(점검결과보고서 관계인 제출 관련) 위임장 첨부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 보고서 제출 가능 여부?</p> <p>제출 가능합니다.</p> |
| 253 | <p>「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4조(중대위반사항 관련) 중대위반사항을 즉시 수리 않고 이행계획서에 포함할 경우 즉시처리 하지 않은 걸로 보아 처분을 해야 되는지?</p> <p>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행계획서 작성 제출합니다.</p> |
| 254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표준이행기간 관련) 이행계획서의 기간 시작일을 우편 발송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가능 여부</p> <p>가능합니다.(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p> |
| 255 | <p>「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p> <p>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p> <p>-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를 확대 해석 할 수 있는지?</p> <p>확대해석 가능합니다. 부도 또는 도산 “등(폐쇄, 단전 · 단수 등)”</p> |
| 연번 | 추가 질의내용(세종본부) |
| 256 | <p>「소방시설법」 제23조제1항에는 자체점검 후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수리 완료 또는 계약서 및 견적서 작성 등 어디까지 인지? 대부분 규모가 크거나 비용이 과다하여 기한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필요한 조치 없이 이행계획서에 기재가 되었다면 처벌하여야 하는지?</p> |

| | |
|-----|--|
| | <p>1) 자체점검은 관계인이 점검하여 불량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모두 한 후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상태 유지)</p> <p>2)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소방관서 보고 후 조치명령, 조치명령에 따른 행정절차 등으로 고장 수리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개선된 제도임.</p> <p>3) 따라서 행정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관계인이 최대한 빨리 소방시설을 정상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p> <p>4) 보고서 제출시간을 고려, 중대위반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취한 사항이 있다면 과태료 등 처분은 불가합니다.</p> |
| 257 | <p>자체점검 연기/면제 신청 관련해서 기준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부분유예를 실시하였는데 개정된 법령에는 부분 연기/면제 관련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p> <p>예시) 본동과 부속동 모두 자체점검 실시 대상인데, 본동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부속동은 항시 이용 중일 경우</p> <p>부분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p> |
| 258 | <p>자체점검 연기와 면제 신청대상 기준은 어떻게 나뉘는 건지?</p> <p>「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 가능</p> |
| 259 | <p>자체점검 이행계획서 접수 시 비전자문서 접수로 내부결제를 갈음할 수 있는지?</p> <p>전산시스템(소민터)에서 상급자 결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음</p> |
| 260 | <p>관계인이 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하는데, 30일 이전에 불량사항을 모두 이행 완료하였을 경우, 이행 완료일 기준으로 자체점검기록표 게시를 중단해도 되는지?</p> <p>30일 이전에 불량사항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도 자체점검기록표를 게시하여야 합니다(불량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30일 이상 게시)</p> |
| 261 | <p>자체점검 면제, 연기 근거 신설되었는데, 자체점검 연기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점검종료 후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는지?(기준: 유예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보고)</p> <p>별지 제8호서식 자체점검 (면제/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 통보 시에 자체점검 시행일자 및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p> |
| 262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

| | |
|--|---|
| | <p>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법 제48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30일 이상 공개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공개를 하여 30일간 인지 불분명(점검완료 후인지, 결과보고서 제출 후인지)</p> |
| | <p>자체점검 결과 공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표 게시와 같이 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이후 공개합니다.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공개여부를 알리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30일 이상 공개(단,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p> |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질의 답변(국민신문고)

| 연번 | 질의내용(서울본부) |
|----|---|
| 1 | <p>「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종전법에 따라 설치했던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자진설비가 되어 자체점검이 제외 되는지?</p> <p>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만약, 미설치 대상에 해당되어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 후 해당 시설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소방서는 철거 사실 확인 및 소방시설 정리)</p> |
| 2 | <p>소방시설공사를 한 자 또는 소방공사감리를 한 자가 소방시설관리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최초 점검에 참여 가능한지?</p> <p>소방시설공사를 한 자 또는 소방공사감리를 한 자의 자체점검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와 같이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필요시 관련 법률 개정 예정</p> <p>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별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3.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4.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
| 3 | <p>2022년11월30일 이전에 계약한 대상처 또는 2022년 11월30일 이전 입찰공고 게시된 대상처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을 2년 이내 모든 세대를 해야 하는지?</p> <p>모든 공동주택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입주민 등이 2024.11.30.까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세대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관리업자 및 관리자는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세대별점검표 및 점검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점검방법은 소방청 및 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p> <p>※ 관할 소방서는 세대별 점검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서한문 등 발송</p> |
| 4 | <p>공동주택(90세대)으로 사용승인일 1988년11월15일이며, 연면적 6천제곱미터이고 소방시설 비상경보, 스프링클러, 유도등 대상이며, 세대내에 소화기(자동화산소화기,주방자동소화장치 포함)가 없고, 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도 없습니다. 계단에 비상경보설비(발신기), 소화기가</p> |

| | |
|---|--|
| | 공용부위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세대내에 점검할 소방시설이 없습니다. 세대점검을 해야하는지? |
| | 상기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며, 거실바닥면적 이 33㎡ 이상인 경우 세대내에 소화기 1개 이상, 3층부터 10층까지는 인근세대로 피난 이 불가능한 경우 피난기구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시설이 설치된 경우 세대점검을 해야 합니다. |
| 5 | 도시형생활주택 5층 이상일 경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배치신고를 면적으로 하는지 아파트에 해당되어 세대수로 하는지? |
| | 도시형생활주택 5층 이상은 소방시설법 상 아파트등에 해당됩니다. 자체점검 배치신고시 아파트에 따라 배치신고하여야 합니다. |
| 6 |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에 “관리업자의 아파트 세대 점검률은 중복 가능”명시되어 있는데, 의미는? |
| | 원칙적으로 2년 이내 모든 세대를 점검을 하여야 하며, 1회 점검 시 같은 세대를 중복하여 점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
| 7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다목(1급, 2급) 주된 기술인력이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으로,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9 관리업 등록기준은 모두 1, 3, 5년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목은 경력이 1년 이상만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
| |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9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점검인력 배치기준입니다. 관리업에 등록된 관리사는 경력에 관계없이 1, 2급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
| 8 | 자체점검(관계인 점검) 점검일 - 2022.10.31. 보고서 제출기한 '22.11.10.까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2022.12.2.일 경우 위반행위 발생일을 2022.11.11.로 보고 과태료 30만원 대상인지? |
| | 현행 「소방시설법」 부칙 제1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2022.11.11.)에 대하여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함(과태료 30만원) |
| 9 | 자체점검(관계인 점검) 점검일 - 2022.11.30.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일 2022.12.13. 경우 종전 법에 의해서 보고서 제출일이 7일인지, 15일 인지? 또는 과태료 대상인지? |
| | 상기 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2022.12.1.시행)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

| | |
|----|---|
| 10 | <p>자체점검 점검일- 2022.11.30. 배치신고 2022.12.9.일 경우 「소방시설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인지?(종전법에 따라10일 적용, 현행법 5일 적용인지)위반일 경우 과태료 기준은 현행법인지)</p> |
| 11 | <p>자체점검 점검일이 이 법 시행 전이므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10일 이내 점검인력 배치신고 가능합니다. 법 시행 초기이므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바랍니다.</p> |
| 11 | <p>하나의 부지내 여러동(소방안전관리자 1명) A동 1급, B동 2급, C동 3급일 경우 C동은 관계인 점검이 가능한지?</p> |
| 12 | <p>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3급대상)은 관계인이 점검 가능합니다. 그 외 대상은 관계인 점검 불가능합니다.</p> |
| 12 | <p>중대위반사항은 소방서에 지적사항으로 제출하지 말라(즉시 조치사항 이므로)는 지역소방서의 사전 설명이 있었는데 반드시 이 안내에 따라야 하나요?</p> |
| 12 | <p>「소방시설법」 제23조에 따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과 병행하여 자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의미이며, 소방서에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일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사전에 수리 중 이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p> |
| 13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종전서식과 개정서식을 3개월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등의 해당여부?</p> |
| 13 | <p>종전의 “점검기록표”(관리업자/벌금 300만원)와 현행 법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관계인/과태료 300만원)는 작성 주체가 상이하며, 위반 시 벌칙도 다릅니다. 또한, 부칙 제5조에서 말하는 서식에 해당하지 않기에 3개월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p> |
| 14 | <p>소방시설등 작동점검(1급~3급)을 소방안전관리자가 못하게 되었는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는지?</p> |
| 14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관계인이 점검 가능하고, 그 외 대상은 관계인이 점검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2년12월 작동점검 실시대상에 한해서는 관계인이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2023.1.1.부터는 불가)</p> |
| 15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세대수 산정 시 적용되는 아파트등 범위는? (종전법에서는 아파트 → 현행법 아파트등)</p> |
| 15 | <p>「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아파트등”은 주택으로 쓰는 총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 +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p> |

| | |
|----|--|
| 16 | <p>공동주택 세대점검시 입주민 및 관리자가 점검할 경우 불량사항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체점검결과에 첨부하는지?</p> |
| 17 | <p>자체점검 기간에 실시하는 세대점검은 자체점검결과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그 외 기간에 실시하는 세대점검은 관리자가 취합·정비하여야 합니다.</p> |
| 18 | <p>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은 아니나 예방차원에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화재예방안전진단을 사용승인월 이전에 받을 경우)</p> <p>화재예방안전진단이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자체점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연도의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p> |
| 19 | <p>최초점검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란 건축물 등이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를 말하며, 2)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의 변경 없이 경계구역 등이 증설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자체점검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부터 실시하기에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 신설되는 경우를 말하며 3)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피난기구 등 신설은 해당 없습니다. |
| 20 | <p>최초점검시 증축할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8번 답변을 참고 2) 증축 부분에만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증축부분만 최초점검. 다만, 수신기, 소화펌프 등을 기존 부분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최초점검 실시 |
| 21 | <p>2022.12.1.이전에 관리업에 등록된 업체에 관리사가 변경될 경우, 신규 관리사를 채용할 경우 경력없는 신규관리사를 채용 가능한지?</p> <p>「소방시설법」부칙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2022.12.1. 이전 등록한 관리업은 2024.11.30.까지는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신규로 일반 또는 전문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는 경력 없는 소방시설관리사 채용 가능하며,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도 관계 없습니다.</p> |
| 22 | <p>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지하구에 해당되어 2급소방대상물이며, 소방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있을 경우 관계인이 점검가능한지?</p> <p>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되어 있는 대상은 관계인이 점검 가능합니다.</p> |
| 23 | <p>종합대상(사용승인 1월)일 경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1월에 받을 경우 1월에 종합점검 7월에</p> |

| | |
|----|--|
| | <p>작동점검 모두 면제받는지?</p> <p>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 모두 면제됩니다.</p> |
| 23 | <p>자체점검 연기 신청시 연기기간을 통보할 때에 자체점검 일정을 명시하여 통보할 경우, 명시한 날까지 자체점검 미실시 할 경우 처벌가능한지?</p> <p>자체점검 연기 사유가 해소되고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가능합니다.</p> |
| 24 | <p>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인데, “소방안전관리자를 언제까지 자체선임해야 하는지? 미선임시 처벌 기준일?”</p> <p>(완공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사용승인일 날부터 30일이내)</p> <p>건축공사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으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까지는 자체선임 되어 있어야 함.</p> |
| 25 | <p>지상4층건물(자탐대상)에 5층, 6층 증축으로 방화구획하여 해당부분만 옥내소화전이 추가될 경우 최초점검대상에 해당되는데 최초점검을 전체건물에 대해서 하는지, 5층, 6층 증축부분만 최초점검을 실시하는지?</p> <p>18번, 19번 답변 참고</p> <p>옥내소화전 펌프실 및 감시제어반이 증축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증축부분만 실시가능하나, 옥내소화전 펌프실이 기존 부분에 있거나 감시제어반을 기존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실시합니다.</p> |
| 26 | <p>기존 지하구(전력구) 비상경보설치 대상에서 자탐 이상 등 소급설치된 경우 최초점검 대상인지?</p> <p>최초점검은 건축행위(신축 · 증축 · 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가 있어야 합니다.</p> <p>건축행위 없이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는 경우(지하구, 병원 등)에는 최초점검 대상이 아닙니다.</p> |
| 27 | <p>“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방문을 하지 않아도 특수감지기 설치 시 세대 미 방문 점검 가능, 다만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현장점검을 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세대 방문 점검을 안 해도 된다면 점검업체가 아파트에 30퍼센트나 50퍼센트의 세대점검현황 서류를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세대점검률에 따라 해야하는지?)</p> <p>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세대방문 점검 대신 수신기에서 관</p> |

| | |
|----|--|
| | <p>리업자 등이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단선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 또는 단선 난 세대를 직접 방문 점검합니다.</p> <p>이런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세대점검을 하였다는 기재를 비고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세대 점검률은 100% 기재. 만약 부재로 못한 경우에는 못한 세대 기재)</p> <p>※ 관리자는 입주민이 세대내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필요</p> |
| 28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3 제6호나목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란?</p> <p>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란 화재동작 신호만 전송하는 일반감지기(유선, 무선방식 포함)와 달리 실시간 감지기 이상유무 확인 및 감도조정 기능이 있어, 비화재보 저감에도 효과적이며, 개인주거 공간인 세대를 방문하지 않아도 점검 등이 가능하므로 공동주택 적용에 효과적인 감지기입니다.</p> |
| 29 | <p>「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4조 “중대위반사항”에 충압펌프는 고장이나 주펌프는 정상작동하여 소방시설이 작동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p> <p>소화펌프에는 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충압펌프 고장도 중대위반사항에 포함됩니다.</p> |
| 30 | <p>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하단에 신고인 서명이 이전 양식에서는 건물관계인 서명을 기입 하여야 했는데, 이번 양식에서는 신고인에 업무대행란이 생겨서 업무대행의 경우 대행업체의 서명을 기입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p> <p>업무대행의 경우 대행업체의 서명을 기입하면 됩니다.</p> |
| 31 | <p>「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3조제1호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문구의 뜻이 공항시설에는 여객터미널을 제외한 여러 건축물(공항시설로 분류)이 있는데 이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은 모두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상물은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이 아니므로 자체점검 대상물에 해당하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p> <p>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여객터미널이 있는 공항시설은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이며, 공항시설내에 있는 모든 대상물은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이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p> |
| 32 | <p>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화재예방법」 제25조제2항(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1차-경고, 2차-자격정지 6개월, 3차-자격취소)인데, 관리사가 아닌 점검자(특급, 중급, 초급)가 위반 할 경우 처벌규정은?</p> |

| | |
|----|--|
| | <p>이 규정은 소방시설관리사가 관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 대행인력의 관리 · 감독 소홀로 관리업자 과태료 부과 및 관리사 행정처분 가능하며, 기술인력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p> |
| 33 | <p>최초점검을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 시행이 '22.12.01 기준이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방필증발급일 기준이면 최초점검을 안받아도 되고, 사용승인일 기준이면 최초점검을 받아야 하기에 문의드립니다.</p> <p>임시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최초점검을 받아야 하나, 부분 또는 일부분을 임시 사용승인한 경우 등이 있어 건축물 전체를 사용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p> |



기타 법령 개정 관련 질의 답변

| 연번 | 질의내용(서울본부) |
|----|---|
| 1 | <p>건축허가 동의 및 부동의 관련 불임 2 검토의견서 통보가 있는데 동의 시에도 검토의견서를 불임으로 첨부해야 되는지?</p> <p>검토의견서는 「소방시설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p> |
| 2 | <p>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소방시설 착공신고 시에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착공신고를 내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p> <p>「화재예방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며,</p> <p>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다만, 건설공사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함)</p> <p>따라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시에 선임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4일 이내 선임신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하기 바랍니다.</p> <p>※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별개의 행위임으로 선임신고를 안했다고 하여 착공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p> |
| 3 | <p>「소방시설법」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항제1호에 자동화재탐지설비 포함되었는데, 현행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제12조에 따라서 모든 대수선 시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p> <p>기준이 변경되거나 강화된 경우 변경 전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때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감지기 설치 종류 · 장소 등이 변경되어 기존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소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 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면 되므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변경 전의 소방시설 기준 적용합니다.</p> |
| 4 | <p>「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경보설비)다목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 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건축물 중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층만 해당되는 것인지? 1개층만 숙박시설로 사용해도 전체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적용하라는 것인지?</p> <p>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는 면적 · 층수 등에 관계없이 모든 층에 설치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p> |

| | |
|---|--|
| | <p>2) 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은 면적·층수 등에 관계없이 모든 층에 설치</p> <p>※ └ 모든 층 : 용도·면적·층수 등에 관계없이 모든 층에 설치 ┌ 것 : 특정소방대상물 ┌ 해당 부분(장소) : 해당 용도 또는 해당 장소 └ 시설 : 해당 용도 또는 장소</p> |
| 5 | <p>「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4 제2호(경보설비)다목6)호 “노유자 생활시설 경우에는 모든 층”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건축물 중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는 층만 해당되는 것인지? 1개층만 노유자시설로 사용해도 전체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적용하라는 것인지?</p> <p>1개 층만 노유자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에 설치하라는 규정임</p> |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태) 「소방시설법」 제6조제5항에 따르면 「건축법」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의견을 첨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그 중, 「소방시설법」 제6조제5항제3호(방화벽, 마감재료 등)는 방화구획 및 소방관 진입창과는 다르게 상당히 생소한 부분(용어 및 기준 등)이라 검토자체가 어려움. • (개선방안) 해당부분(방화벽, 마감재료 등)에 대해 중앙소방학교 주관 전문 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함. <p>건축허가동의 담당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2022.12.31.한 소방관서에 배포예정임</p> <p>※ 중앙소방학교 전문교육과정 운영 중이며, 업무담당자가 교육 이수 필요</p> |
| 7 | <p>건축허가 동의 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법령 등 검토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 동의 회신하여야 하는 것인지?</p> <p>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자)을 작성·제출</p> |
| 8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가목6)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한해 제출하는 것인지?</p> <p>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한해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대규모 건물 등 소방차 진입 동선 및 부서 공간 위치가 필요한 경우 검토 필요.</p> <p>※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 참고</p> |
| 9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나목4) 내진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허가동의 제출 서류에서 제외되는데 그럼 완공 시 제출 받음 되는 것인지?</p> <p>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에 서류 접수 및 검토(건축허가동의시 서류 간소화 필요 – 실제 소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단계에서 작성)</p> |

| | |
|----|---|
| 10 | <p>용접 · 용단 작업 시 설치하는 방화포의 크기 및 재질, 설치기준은?</p> <p>방화포 관련 「성능인정 및 제품검사 기준(KFI)」을 제정하고 있으며, 설치기준은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23.7.1. 시행 예정) 참고 ※ 발령은 '23. 2월 중</p> |
| 11 | <p>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중 피난구유도등, 통도유도등,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면 설치기준은?</p> <p>피난구 · 통로 · 비상조명등 각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참고</p> |
| 12 | <p>법률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된 시설 중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추가되었는데 기존의 대상물에 적용해야 하는지? 대수선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적용해야 하는 부분은 대수선에 포함되는 면적인지 건물 전체 면적인지?</p> <p>3번 답변 참고(대수선은 해당 안됨)</p> |
| 13 | <p>의료시설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설치와 관련하여 의료시설 단일 용도의 건물(복합건축물 아님)에 의료시설의 부속시설인 기계식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에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적용해야 하는지?</p> |
| 14 | <p>「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20대 이상 또는 지하주차장 바닥면적 200m² 이상은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입니다.(주차장에는 간이SP 소급 안됨)</p> <p>기계식주차장 설치면적 및 설치연도 등을 확인하여 설치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대상인 경우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거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p> |
| 15 | <p>「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제4항제1호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개념과 별도로 전체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 가능한 부분인지?</p> <p>6, 7, 8번 답변 참고(향후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을 고려 검토 의견 첨부 필요)</p> |
| 16 | <p>건축허가 동의 시 (갑지) “건축허가 동의여부통보서”만 첨부해도 되는지 아니면 (을지) “부동의 사유 및 건축법령 등 검토 의견서”도 첨부해야 하는지?</p> <p>6, 7번, 8번 답변 참고</p> |
| 17 | <p>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의무가 있는지?</p> <p>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연동형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자체점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p> <p>※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50세대 이상이고 지하주차장에 물분무소화설비등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은 자동차관련시설로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체점검 의무대상입니다.</p> |

| | |
|----|---|
| | 기존 성능위주설계 고시의 화재·피난 시나리오는 없어진 것인지? |
| 17 | 기존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고시는 폐지(2022.12.1.)되었으며, 화재·피난 시나리오 수정이 필요하여 개정 중에 있음, 보완이 완료되면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개정 전까지는 기존 시나리오 대로 시뮬레이션 가능합니다. |
| 18 | 「소방시설법」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건축허가 동의서에 건축법상 피난시설, 진입창, 마감재료 등의 검토 의견서 필수 첨부 여부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필요 6, 7, 8번 답변 자료 참고 |
| 19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등 동의여부 통보시 별지 제6호서식의 을지서식도 함께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의여부 통보시만 작성 하는지? 6, 7, 8번 답변 자료 참고 |
| 20 | 1)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중 수저터널의 정의는? 2) 수저터널은 길이와 깊이 등 상관없이 성능위주설계 대상인지? 수저터널이란 호수 또는 바다 밑(바닥)을 굴착 등을 하여 만든 터널을 말하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심의 요청하는 대상은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해당됨. |
| 21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소방시설 착공신고 이전 또는 이후에 하는지? 소방시설 착공신고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동시에 신고하여도 되는지? 2번 답변 참고 |
| 22 |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동의시 방화구획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방시설만 검토해도 되는지 여부? 6, 7, 8번 답변 참고 |
| 23 | 임시소방설치시에 현행 법에는 간이소화장치 설치 대상에 대형소화기를 일정수량 이상 배치하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면제가 가능한데,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면제 금지하고 있는데 화재안전기준이 우선인지 아니면 기술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 우선인지? 간이소화장치 설치대상에 대형소화기로 대체 하였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임시소방시설은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아닙니다. 성능위주설계 평가시 평가위원이 건설현 |

| | |
|----|--|
| | 장 화재예방을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는 면제 가능하며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
| 24 | <p>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연면적 4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400㎡ 미만인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p> <p>건축허가부서에 2024.12.1.부터는 연립·다세대 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허가동의 대상임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p> |
| 25 | <p>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의 대체설비로 대형소화기로 면제할 경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가 반드시 필요한지?</p> <p>연결송수관설비 미설치 대상의 경우는? / 연결송수관설비 없이 단순 대형소화기만 분산배치 경우는?</p> <p>건설현장 화재에 대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조기에 연결송수관설비 및 옥내소화전 설비를 사용하기 위해 만든 규정입니다.</p> <p>연결송수관설비 및 옥내소화전 방수구가 미설치된 경우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우선 설치도록 안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형소화기 설치 유도</p> |
| 26 | <p>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시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전산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서 일괄적으로 공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홈페이지란을 만들어주는지?</p> <p>소방청에서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화재안전정보조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고도화 중이며, 공개 시에는 대상별로 사전안내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소방서 또는 본부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타당</p> |
| 27 | <p>특급, 1급은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은 어떤 담당자가 맡아서 하는지, 직접 제출만 받는 건지, 소민터에 훈련 및 교육 접수창구가 생기는 건지 ?</p> <p>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를 어느 부서(대응/예방)에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사무분장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p> <p>업무 담당자는 제출된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확인하여 훈련이 미흡한 경우에는 훈련을 추가로 실시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수리하여야 합니다.</p> <p>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은 서류 또는 전산시스템(소민터)으로 제출 가능하며 소민터 고도화 작업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 가능도록 개선 중에 있음</p> |
| 28 |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축 분야 관리방안? |

| | |
|----|---|
| |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정 예정(2023년)이며, 주택용 소방시설과 같이 입주민이 자율관리해야 함 |
| 29 | 건축허가 부동의 시 검토 의견서에 마감재 관련 부분 확인 방법은? 6, 7, 8번 답변 참고(「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가목5)에 따른 첨부서류 중 실내·실외 마감재료표를 확인 검토) |
| 30 | 임시소방시설에서 방화포에 대한 세부 기준 및 규정, 지침은? 10번 답변 참고 |
| 31 | 건축 허가동의서 작성 시 검토의견서를 언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부동의 하지 않고 동의하는 경우에도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방화구획, 소방관진입장 등은 소방관련법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은 사실이나 엄연히 건축과 소관사항이며 소방서에서는 의견을 제시할뿐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어 기록을 남김으로 추후 법적 다툼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에 있어서 건축과 쪽에서 우리 쪽으로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 전가시킬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6, 7, 8번 답변 참고 |
| 32 |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은 전혀 문제가 없으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 건축법령상 문제가 확인되었을 시 부동의 사유로 적시하여 부동의 처리할 수 있는지? 화재확대 방지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건축법령」 검토사항에 대해 개선하도록 보완통보는 가능하나 부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
| 33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함. 여기서, 공동주택이 399m^2 이하인 대상은 허가동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허가청(자치구)에서는 소방협의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음. 건축허가 동의 범위와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우선 건축허가부서에 건축허가동의 대상임을 안내하고, 필요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개정하겠음 |
| 34 | 성능위주설계 특성소방대상을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저(水底)터널이 추가되었으나, 수저(水底)에 대한 정의가 강 아래, 바닷속, 수중 아님 일부 거쳐서 지나감 등 애매모호하여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함. 20번 답변 참고 |
| 35 | 인명구조기구(공기호흡기세트) 설치와 관련 (기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 (개정)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

| | |
|----|--|
| | (적용) 7개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1개층 이상의 관광호텔이 있을 시 1개소(공기호흡기 세트)만 설치하는게 맞는지? |
|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건축물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층에는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
| 36 | 「소방시설법」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와 관련 /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 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기준)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신규)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화재안전기준 변경사항이 많은데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될 때 마다 소급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소화기구 표지가 축광식표지로 바뀌었는데 지금 소급해야 하는지? 3번 답변 참고(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 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연번 | 질의내용(대전본부) |
| 37 |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화재안전기준이 화재안전 성능 기준인지, 또는 화재안전 기술기준인지 여부? ex) 소방시설을 화재안전 성능기준에는 적합하고, 화재안전 기술기준에는 부적합하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
| | 화재안전기준이 성능기준(소방청 고시)과 기술기준(국립소방연구원 공고)으로 이원화 되었으며, 성능기준 및 기술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
| 38 | 건축허가동의 검토 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 성능기준과 화재안전 기술기준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 |
| | 화재안전 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여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
| 39 |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의무가 있는지? 16번 답변 참고(선임신고 및 자체점검 의무 없음) |
| 연번 | 질의내용(인천본부) |
| 40 |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설치하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하여 별도의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추가 생기는건지 아님 주거용 전용헤드 인지 여부? 별도의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제정 예정(2023년) |
| 41 |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의 화재알림설비 설치에 대하여 건축허가동의(착공, 완공)여부 |

| | |
|----|---|
| | <p>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한 곳임.</p> <p>‘전통시장’을 지정하는 부서에 전통시장 지정 시 건축허가동의,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도록 안내 필요(기준 지정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시에도 적용)</p> <p>※ 화재알림설비는 ‘23.12.1.부터 적용 –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기준 제정 필요</p> |
| 42 | <p>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설치하는지 여부</p> <p>2022.12.1.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p> |
| 43 | <p>소방시설 기준적용 특례의 단서 문구가 종전 법은 강행규정(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이었으나, 현행 「소방시설법」 제13조제1항은 임의규정(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음. 변경된 이유와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p> <p>3번 답변 참고(강행규정은 강화된 소방시설을 무조건 설치해야 하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임의규정으로 변경)</p> <p>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한 이유는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소방시설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p> |
| 44 | <p>「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 기숙사 관련,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기숙사로 판단하는지 여부</p> <p>1개동의 공동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학교 등과 같이 기숙사 동 안에 공동취사시설이 없으나, 별동으로 구내식당동(공동취사시설)이 경우에는 기숙사에 해당</p> |
| 45 | <p>「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관련, 건축허가 동의 여부 통보서 및 부동의 사유 및 건축법령 등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는 부동의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동의제외대상, 비동의대상, 보완 또는 반려 대상 포함여부)</p> <p>1번, 6번, 7번, 8번 답변 참고</p> |
| 46 | <p>「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공동주택(다세대 주택)의 경우 연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총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 되어있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는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되는데, 연면적 390㎡인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건축허가 비동의 대상이 되는지? 동의대상으로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구분 없이 동의대상으로 개정되어야 대상물관리,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데 용이하다고 판단됨</p> |

| | 24번, 33번 답변 참고(필요시 법령 개정 예정) | | | | |
|---|---|----|----|---|--|
| 47 | <p>「소방시설법」 제13조에 강화된 기준 적용 관련하여, 제1항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이전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해당하는 시행령이 없어 적용을 못했으나, 개정된 법령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이 추가됨. 이에 따라 기존건물에 대해 소방시설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해야 하는지?(소급 적용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p> <p>3번, 12번, 36번, 43번 답변 참고</p> | | | | |
| 48 | <p>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조항 변경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준</th><th>변경</th></tr> </thead> <tbody> <tr> <td>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td><td>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것. ·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td></tr> </tbody> </table> <p>3번, 12번, 36번, 43번 답변 참고(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 부칙에서 따로 정함)</p> | 기준 | 변경 |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것. ·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 기준 | 변경 | | | | |
|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것. ·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 | | |
| 연번 | 질의내용(광주본부) | | | | |
| 49 | <p>「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시는 있는지?</p> <p>○ “비상구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지침”(소방청) 참조(붙임)</p> <p>“정당한 사유”란 정부청사처럼 출입통제가 필요한 경우, 공사 중인 경우 등등</p> | | | | |
| 연번 | 질의내용(대전본부) | | | | |
| 50 | <p>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의무 가 있는지?</p> <p>16번, 39번 참고(선임의무 및 자체점검 의무 없음)</p> | | | | |
| 51 | 기존 성능위주설계 고시의 화재·피난 시나리오는 없어진 것인지? | | | | |

| | |
|----|--|
| | 17번 답변 참고 |
| 연번 | 질의내용(울산본부) |
| 52 | <p>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화재예방법 29조)에 대하여 별동 증축으로 착공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12월 1일 이전에 1동 착공신고가 들어오고 2동 착공신고가 12월 1일 이후에 들어 왔을 때, 같은 공사현장이라도 12월 1일 이전에 착공신고가 들어온 1동 건설현장에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p> <p>「화재예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은 2022.12.1.부터 신축 · 증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부터입니다.(착공신고가 아니라 건축허가동의 대상부터임)</p> |
| 53 | <p>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안전원과 기술원에 위탁한 업무가 빠짐에 따라 향후 개정 시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를 소방서에서 받게 되어 있는 실정임.</p> <p>개정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착공신고를 접수한 경우 및 특정소방대상을 완공필증을 교부한 경우에 한국소방안전원에게 즉시 통보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통보 하면 되는지?</p> <p>소방예방정보시스템(소방청)과 종합정보망(안전원)을 연계 · 구축 중에 있으며, 화재예방법 개정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안전원에 위탁할 예정입니다.(별도 지시 공문이 있을 예정임)</p> <p>※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원활한 실무교육 등을 위해 안전원과 공유 필요</p> <p>건축허가동의 - 착공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완공 - 사용승인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등</p> |
| 54 | <p>소방시설 설치 적용시점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질의회신에서 해석하고 있음. 그렇다면, 건축허가 신청일 이후에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된 경우(예: 자동화재속보설비 30층 이상 설치 규정 삭제) 소방시설 설치를 면제 시켜 줄 수 있는지?</p> <p>법적안정성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만 완화된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완화된 기준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제외 가능합니다.</p> |
| 55 | 개정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6호(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을 작성해야 됨. 이 부분은 대응구조과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으로 통상 완공시점에 소방차로 현장에서 전용구역 위치를 조율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전용구역 설치 갯수만 기재하면 되는지? 아니면, 설치위치의 적정성까지 건축담당자가 고려해야 되는지? |

| | |
|----|---|
| |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 참고하여 건축허가동의 시 검토 |
| 56 | <p>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는 동의제외 대상임. 위 규정이 완공이후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최초 동의가 나간 후 착공 전이나 착공 후에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소방시설의 변동은 없는데 재동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동의제외 대상인지?</p> <p>「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사용 중인 건축물 등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p> <p>건축물이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축물은 설계변경에 해당됨</p> |
| 57 | <p>건축 관계법령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내인 경우 방화창을 대신하여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p> <p>이 경우 자진설비로 간주하여 착공신고를 해야 되는지? 또한, 자진설비에 대해서도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p> <p>「건축법」 제52조제4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라 다음의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함.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div> <p>이 규정은 인접건축물로 연소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설치한 경우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p> |

| | |
|----|---|
| |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4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방화유리창 대신 설치한 경우에는 자진설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진설비인 경우에도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도 가능합니다. |
| 58 | <p>가설건축물은 동의제외 대상이나, 모듈러 등 임시교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p> <p>모듈러 교실은 특성상 조립전 제작 단계에서 소방시설 설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 경우 설치(조립) 단계에서 착공신고를 할 경우 뒤 늦게 소방시설 공사업자를 통해 착공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p> <p>※ 제작단계에서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는지 알 수 없음</p> <p>모듈러 등 임시교실은 현장에서 모듈러 등 임시교실을 설치하기 전(조립단계)에서 착공신고하면 됩니다.</p> |
| 연번 | 질의내용(경기본부) |
| 59 | <p>연면적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적용하는 것인지?</p> <p>연립 및 다세대주택에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합니다.</p> |
| 60 | <p>「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4 개정으로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추가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가 개정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ex.연면적 300제곱미터 숙박시설→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의 경우 건축허가등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관계인의 혼란(사용승인까지 소방시설 적용이 안 될 경우 책임소재 불분명)이 우려되는데 동의대상물의 범위 개정 계획이 있는지?</p> <p>※ 그간 '6층 이상 건축물', '의원(입원실 있는 것)',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등이 소방시설 설치 대상 개정으로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추가되었음.</p> <p>24번, 33번 답변 참고(필요시 법령 개정 예정)</p> |
| 61 | <p>「소방시설법」제6조 관련 '22.12.1.부터 적용 예정인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벽, 마감재료까지 소방동의 시 검토해야 하는지?</p> <p>6번, 7번, 8번 답변 참고하여 검토의견을 허가부서에 통보</p> |
| 62 | <p>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접수 시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p>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변경신고 접수 시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p> |

| | |
|----|---|
| 63 | <p>해당 특별소방대상물의 연면적, 높이, 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대상인지?</p> <p>「소방시설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소방대상물의 연면적 · 높이 · 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p> |
| 연번 | 질의내용(경기북부본부) |
| 64 | <p>기존 성능위주설계 고시의 성능위주설계 변경사항이 화재안전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하지 않을수 있다 라는 항목이 삭제 된건지? 삭제되었다면 경미한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 접수 후 처리절차는?</p> <p>「소방시설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소방대상물의 연면적 · 높이 · 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 대상이며, 그 외의 대상은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일지에 기록도록해야 합니다.</p> |
| 65 | <p>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에 대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지하 층수 2개층 이상인 것~ 냉장창고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소방시설법 시행령」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기준부분과 방화구획등이 되지 않아 건물 전체에 대해 소방시설 공사를 할 경우에도 증축 부분 면적만 적용되는지?</p> <p>「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아닌 건축공사(증축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입니다.</p> |
| 66 | <p>「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제1항,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급설치해야 하는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사목의 단서(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에 해당이 되는 대상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p> <p>개정된 규정에 따라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
| 연번 | 질의내용(강원본부) |
| 67 | <p>「소방시설법」 제6조제5항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따라 건축법령 등의 검토의견은 검토 결과를 부동의로 통보하는 경우에 한해 그 사유와 건축법령 등의 검토 의견을 명시하여야 하는지?</p> <p>부동의 하는 경우 또는 「소방시설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p> |

| | |
|----|--|
| 68 | <p>「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 숙박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함. 하지만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는 소규모 숙박시설이 동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는?</p> <p>24번, 33번, 46번 답변 참고(건축부서와 사전 협의)</p> |
| 69 | <p>「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서 제외 되있음.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차후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p> <p>24번, 33번, 46번 답변 참고(건축부서와 사전 협의 / 필요시 개정)</p> |
| 70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2호에서 가목(건축물 설계도서) 나목2)(소방시설별 층별 평면도) 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총 평면도)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의 의미는?</p> <p>또한 3)(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의 경우 실제 건축주가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할지 여부를 알수 없는 상황에서 필수 서류로 받아야 하는 부분인지? 내진계산서 제출은 이제 제외되는 부분인지?</p> |
| 70 | <p>〈건축허가동의 절차 등 서류 간소화를 위해 불필요한 서류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 2) 설계 단계에서 목재·합판 등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설계에 반영 3)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상세도서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시에 제출 <p>※ 내진설계는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등 일부분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동의단계에서 제출로 인해 이중설계로 인한 시간과 비용추가</p> |
| 71 | <p>「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검토 여부?</p> <p>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에는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가 해당됨.</p> <p>현재, 화재안전기준에는 시각경보기(청각장애인)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피난구조설비는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의 용도에 적합한 피난구조설비가 설치되도록 검토하면 됩니다.(ex. 요양원, 요양병원 등 - 승강식피난기 등 적용)</p> |
| 72 | <p>「소방시설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 대상의 경우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우는 변경신고 의무를 제외하고 있음. 이 경우, 기존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폐지에 따라 기존 심의내용 변경에 대한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변경 업무처리 지침(21.11.2.)”의 적용 가능 여부?</p> |

| | |
|----|--|
| | <p>소방시설법령 개정 · 시행에 따라 2022.12.1.부터 기존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및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변경 업무처리 지침(‘21.11.2.)」은 폐지됩니다.(64번 답변 참고)</p> <p>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 높이 · 층수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감리자와 협의하여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p>※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반영</p> |
| 연번 | 질의내용(충북본부) |
| 76 | 개정된 법령에 자체점검 유예제도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제도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제도는 유지되는지? |
| | 유지됩니다. |
| | |
| 74 | <p>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기준일은 무엇인지?</p> <p>- 2022년12월1일 이후 소방시설 착공신고일, 건축허가 소방동의일, 건축허가일</p> |
| | 2022년12월1일부터 건축허가등 소방동의를 신청하는 대상입니다. |
| | |
| 75 | <p>「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첨부서류 중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총 평면도만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내진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어느 시점에 제출토록 해야 하는지?</p> |
| | 70번 답변 참고(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시에 접수 및 검토하여 수리) |
| | |
| 76 | <p>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시 첨부해야 할 건축물 설계도서 중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위치도(조경계획을 포함한다)”의 표준서식 혹은 반영해야 할 검토사항에 관한 업무 지침이 있는지?</p> |
| |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 처리 매뉴얼” 참고(2023.1.1.) 배부 예정 |
| | |
| 77 | <p>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시 첨부해야할 소방시설 설계도서 중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건축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제외한다)”의 표준서식 혹은 반영해야 할 검토사항에 관한 업무지침이 있는지?</p> |
| |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 처리 매뉴얼” 참고(2023.1.1.) 배부 예정 |
| | |
| 연번 | 질의내용(충남본부) |
| 78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관련, 소방동의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고 4일 이내에 보완(재협의)되지 않으면 반려한다고 되어있는데, 건축허가부서에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반려조치를 해야 하는지? |

| | |
|----|--|
| | <p>1)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특급 10일) 동의여부를 허가기관에 회신하여야 하고.</p> <p>2)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기관에 반려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음.</p> <p>3) 반려통보를 하지 않을 시에는 건축허가등의 또는 부동의 통보를 하여야 함.</p> <p>※ 행정상 조치를 하지 않고 서류 방치시에는 관련 법령 미준수로 징계사유에 해당</p> |
| 79 | <p>위의 질의에서 반려조치를 해야한다면, 건축허가부서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소방서에서 반려회신 이후에 들어오는 재협의나 보완재협의를 최초허가 신청으로 판단하고 법령적용시점을 재협의가 들어온 시점으로 보면되는지?</p> <p>1) 반려통보한 경우 건축허가부서에서는 소방 등 협의기관에는 오는 보완사항을 모두 취합하여 건축주에게 보완통보하는 관계로 기간내 보완이 안될 수 있음.</p> <p>2) 건축허가 신청이 취소 또는 취하된 경우가 아니면 반려회신 이후에 재협의나 보완된 것은 건축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적용해야 함</p> |
| 80 | <p>「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에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에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이면 치과의원이나 한의원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제외가 된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사용용도로 봤을 때 한의원과 치과의원 일반의원에 차이가 전혀 없는데, 단순법령해석의 오류로 누락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또한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의 설치장소별 적응성에 대한 질의회신에는 방염에 대한 질의와 상반되게 “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에 치과의원이나 한의원도 포함한다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어있음. <p>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포함되므로 의원에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p> <p>※ 입법적 오류임(향후 법개정 반영). 다만, 별칙 적용은 명확성의 원칙 위배로 불가</p> |
| 81 | <p>건축허가등의 시 A, B, C동 인 경우 A동이 건축허가등의 대상이고 나머지 B,C동이 건축허가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A동에 대한 소방시설 설계도면만을 받는게 맞는지, A,B,C동 전체에 대한 설계도서를 받는게 맞는지?</p> <p>소방활동 공간 등을 고려할 때 A,B,C동 전체에 대한 설계도서를 받는 것이 타당</p> |
| 82 | <p>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적으로 선임하여 관리하는지 아니면 추후 시스템 입력하여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지?(민원시스템 등)</p> |

| | |
|----|---|
| | <p>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소민터(소방청) 또는 종합정보망(안전원)에서 가능합니다.</p> <p>※ 소방예방정보시스템(소방청)과 종합정보망(안전원)이 연계, 소민터에서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중에 있음</p> |
| 83 | <p>「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관련 철골구조로 기둥과 지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공장의 경우 소방시설 면제가 가능한지?(축사의 경우 강파이프로 벽이 없는 구조일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p> <p>축사의 경우에는 인명피해의 우려 등이 없어 제외하였으나, 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방시설이 면제될 수는 없음.</p> |
| 84 | <p>1) 소방시설법 제6조 제5항 의거, 동의단계 시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소방관진입창, 방화벽, 마감재료 등의 검토사항이 필수사항인 건지, 2) 위 사항이 필수 검토사항일 경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통보할 수 있는지?</p> <p>6번, 7번, 8번 답변 사항 참고</p> |
| 85 | <p>「소방시설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방서 검토의견을 소방공사 감리원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p> <p>「소방시설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은 허가기관에 통보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이 건축설계 및 소방시설등에 반영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업무에 포함. 기타 사항은 건축감리 소관업무임.</p> <p>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
| 86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불가능한 이유, 추후 개정 가능한지? |

| | |
|----|--|
| | 1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규모도 크고 수용인원이 많아 사용단계에서부터 이용자의 안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고, 1급 및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관계로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임 |
| 87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민원정보시스템 입력 여부? 82번 답변 참고 |
| 88 | 「건축물관리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자진설비로 보아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면제되는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으로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자진설비에 해당되어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방시설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소급대상인 경우에는 법정설비이며,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자진설비라고 하더라도 자체점검시에는 자진설비를 포함 점검해야 합니다. |
| 89 | 「소방시설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 동의 시 「건축법」 관련한 피난시설, 방화구획, 소방관 진입창, 방화벽, 마감재료에 대한 검토자료 및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건축법」에 보완이 있을 시 보완요구가 가능한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완을 요구하였는데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허가기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 연번 | 질의내용(전북본부) |
| 90 | 건축허가 동의 시,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소방관 진입창 등에 대한 검토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라는 개정 법령에 관한 구체적 서식 또는 서류에 관한 지침 필요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 처리 매뉴얼” 참고(2023.1.1.) 배부 예정 |
| 9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옥내소화전)2)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지하층을 포함? 지상 4층 이상? 「소방시설법」에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라는 표현이 없으면 「건축법」을 준용하므로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은 지상층을 의미합니다. |
| 92 |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의 특정소방대상물 용도 시행일(2024.12.1.) 이전에 건축협의가 들어올 경우 기존의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목에 해당될 경우에도 개정 법령으로 해야하는지? |

| | |
|----|--|
| | <p>1) 50세대 이상 연립 및 다세대 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면적이 200㎡ 이상 : 자동차 관련 시설('22.12.1.부터 ~) └ 주차장 면적이 200㎡ 미만 : 2024.12.1.부터 공동주택 <p>2) 50세대 미만 연립 및 다세대 주택 : 2024.12.1.부터 적용 공동주택으로 적용</p> |
| 93 | <p>「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4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적용대상에 업무시설, 공장, 창고 등 개정으로 건축 허가 진행 중인 대상에 제외시켜도 되는지?</p> <p>개정된 규정을 적용 가능합니다.</p> |
| 94 | <p>「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8 제3호 대체설비 중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에 비상조명등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에도 비상조명등이 동일 규정으로 들어있을 경우 하나만 설치해도 무방한지?</p> <p>그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인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경우임(하나만 설치 가능)</p> |
| 연번 | 질의내용(경북본부) |
| 95 | <p>「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4 제2호다목1)에 해당(아파트등 · 기숙사 · 숙박시설의 자동화재탐지설비)하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시행령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소방대상물의 업무처리 절차는? 동의 없이 착공·완공 신고만 처리하는지?</p> <p>24번, 33번 답변 참고(다만, 건축허가동의를 안한 경우라하더라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p> |
| 96 | <p>화재알림설비에 대한 법정설비 해당 여부 인정 기준(형식승인 등)은? 동의대상 및 착공 · 완공 신고 해당 여부는?</p> <p>2022.12.1.부터 화재알림설비가 소방시설(경보설비)에 추가됨에 따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화재알림설비의 형식승인 기준」을 제정(2023.11.30.까지) 중에 있으며, 2023.12.1.부터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p> <p>※ 현재까지 화재알림설비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없습니다.</p> |
| 97 | <p>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지하주차장을 공동주택과 별도로 보아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적용하는지?</p> <p>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p> |
| 98 |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 서류인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조경계획 포함) |

| | |
|-----|--|
| | <p>는 아파트가 아닌 특정소방대상물도 제출 의무대상인지?</p> <p>여러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 등이 필요한 대상은 제출대상입니다.</p> |
| 99 | <p>전통시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화재알림설비 모두 설치해야하는지?</p> <p>「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화재알림설비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됩니다.</p> |
| 연번 | 질의내용(전남본부) |
| 100 | <p>운동시설 중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제외 대상인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3)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p> <p>바닥면적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스프링클러설비 제외대상입니다.</p> |
| 101 | <p>숙박시설 중 연면적 400㎡미만(소방동의 대상 아님)에 대한 소방시설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p> <p>* 간이스프링클러설비(300㎡이상 600㎡ 미만), 자동화재탐지설비(면적기준 없음)</p> <p>24번, 33번 답변 참고(다만, 건축허가동의를 안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p> <p>따라서 사전에 건축허가부서와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p> |
| 102 | <p>법규 개정으로 완화된 소방시설은 기존 대상물에 적용해도 되는지? 자동화재속보설비(업무, 공장 등 바닥면적 1,500㎡이상 층이 있는 것)</p> <p>* 소민센① 지침에 따르면 옥내소화전도 철거 가능함. '상기 질의1'의 운동시설이 제외대상이라면 스프링클러설비 철거도 가능한지?</p> <p>가능합니다.</p> |
| 103 | <p>건축허가 소방동의 시 첨부서류 중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공간 위치도(조경계획 포함)'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이 아닌 모든 대상물에 해당 되는지?</p> <p>여러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 등이 필요한 대상은 제출 대상입니다.</p> |
| 104 | <p>「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3)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바닥의 불연재료는 층을 구분하는 바닥(주요구조부)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바닥에 매트를 고정 설치하는 경우 매트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p> |

| | |
|-----|---|
| | 건축허가 시점에 바닥에 매트를 고정하여 건축설계(소방설계)에 반영된 경우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입니다. 다만, 매트가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제외 가능합니다. |
| 105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0) 라) “랙식 창고 중 8)에 해당하지 않은 것”에서 8)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 이하의 것도 포함되는지? 10m 이하인 띡식 창고도 포함됩니다. |
| 연번 | 질의내용(창원본부) |
| 106 | 「소방시설법」 제18조 별표 8(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제3호가목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의미는 무엇인지?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대형 소화기를 배치하라는 것인지? ②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에 연결된 옥내소화전설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건설현장 화재가 대부분 공정율 70~80% 이상인 경우에 발생. 공사장 화재시 연결송수관 설비를 소방대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시공하라는 의미에서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대형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면제토록 하였음 |
| 연번 | 추가 질의내용(세종본부) |
| 107 | 「소방시설법」 제11조와 관련, 1. 자동차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여부 확인 결과 부적합 시에는 자동차검사 결과도 부적합으로 재검사하는 사항인지? 2.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받는 결과는 공문으로 각 시도에 공문발송 등으로 전달이 되는지? 1. 자동차에 차량용소화기 설치 여부에 대한 검사는 국토부에서 자동차 정기검사시에 확인하며, 소화기 유무만 확인(소화기가 없다고 부적합 사항은 아님) 2. 국토부(교통안전공단)와 소방예방정보시스템과 연계(공문 발송은 없음) |
| 108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중 해임서식이 없어졌는데, 해임자(前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지?(ex. 성명, 해임일자 등) 소방예방정보시스템(소민터)와 종합정보망(안전원)을 구축·운영하여 소방안전리자 자격취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해임확인서를 원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 | |
|-----|--|
| 109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표는 해당하는 대상만 첨부 해야하는지? |
| |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만 첨부하면 됩니다. |
| 연번 | 추가 질의내용(부산본부) |
| 110 | <p>1.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관련</p> <p>(기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층 → (변경)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 ·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p> <p>2. 거실제연설비 설치 관련</p> <p>(기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text{m}^2$ 이상인 층 → (변경)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text{m}^2$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p> <p>1)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만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경우 → 1층 실내부분을 제외한 주차장 부분 <p>2) 지하층 · 무창층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1,000\text{m}^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제연설비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지하 1층 500m^2 + 지하 2층 300m^2 + 지상 1층 무창층 300m^2인 경우 → $1,100\text{m}^2$이므로 해당하는 부분에 제연설비 설치 <p>※ (개정취지) 지하층 · 무창층에 대한 피난안전성 강화</p> |



화재안전기준 관련 질의 답변

| 연번 | 질의내용(울산본부) |
|----|---|
| 1 | <p>피트공간(EPS, TPS, PS실)은 '파이프덕트·덕트피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적용 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함.</p> <p>연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옥상에 삼각형태의 지붕아래 공간(가로·세로·높이 1.2m이상)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라면 여기도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해야 되는지?</p> <p>2021.4.29. 시달된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소민센1)”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부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되, 화재 위험이 적거나 소방시설 적용성이 없는 공간(감지기, SP 헤드 설치제외 공간, 피트증(공간) 등)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방시설 설치를 제외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제외장소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p> |
| 2 | <p>[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 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 수동잠금 밸브를 선택밸브 직전이 아닌, 방호구역별 배관에 설치하여 공사 등에 따른 밸브잠금 시, 작업 중이지 않은 구역의 화재안전을 확보 <p>추진 중인 화재안전기준 개정사항에 포함하여 검토하겠습니다.</p> |
| 3 | <p>[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4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안전장치의 배관은 옥외로 설치하여 방출된 소화약제가 약제실내에 머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p>2022.4.22. 수립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계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개정 추진 중)</p> |
| 연번 | 질의내용(경기본부) |
| 4 | <p>화재안전기술기준과 화재안전성능기준이 다를 경우 어떤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는지?</p> <p>화재안전성능기준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이며, 화재안전기술기준은 성능기준을 총족하는</p> |

| | |
|---|---|
| | <p>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입니다.(소방시설법 제2조제6호)</p> <p>따라서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의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성능기준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됩니다.</p> |
| 5 | <p>감지기 설치 면제조항이 간소화되었는데, 기준의 완화로 보아도 무방한지?</p> <p>기존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5항 감지기 제외 규정과 현행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3) 2.4.5 감지기 제외규정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감지기 설치하지 아니한다”에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제외 조항에서 재량행위로 변경된 것이므로 감지기 설치 제외장소에 관계자는 감지기가 필요한 경우 설치 가능합니다.</p> |
| 6 | <p>2022년 12월 시행된 화재안전기술기준 해설서 제작 계획 여부?</p> <p>화재안전기준 해설서는 2023년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제작할 예정입니다.</p> |
| 7 | <p>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헤드제외 장소 중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대피공간에 제외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피공간이 아닌 하향식피난구실에는 헤드제외가 불가능한지?</p> <p>아파트의 대피공간은 헤드설치 제외장소입니다.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장소는 대피공간과 같이 별도로 구획된 공간이 아닌 발코니의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샷시가 설치된 발코니는 헤드 제외장소가 아닙니다.</p> |
| 8 | <p>근린생활시설이나 사용승인 이 후 상가입점 전 내부 반자의 여부가 확인되기 전의 상태일 때 스프링클러헤드를 고정해야하는데 이 때 케이블타이 또는 철사 등으로 고정하는 것이 적합한지?</p> <p>완공 당시 반자가 있는 경우 반자에 고정해야 하고, 반자가 없는 노출 천장의 경우 천장에 고정해야 합니다. 즉, 완공 당시에 적합한 상태로 완공되어야 하고, 영업장 입점 이후 반자 유무에 따라 반자 또는 천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완공 이후 입점을 고려하여 반자없는 천장에 노출로 매달아 시공하는 것은 감리 및 시공 위반입니다.</p> |
| 9 | <p>공동주택 전실제연설비 적용 시 피난층이 방화문이 아닌 경우에는 제연설비가 제외되는데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도 제외가 가능한지?</p> <p>아니면 상반되게 제연구역인 경우에는 헤드를 제외하고, 제연구역이 아닌 경우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p> <p>제연구역과 스프링클러헤드 제외는 관련이 없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한해 헤드를 제외하는 것입니다.</p> |

| | |
|----|---|
| | <p>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제5조(피난구유도등)</p> <p>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에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p>③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p> <p>공장 등 층고가 높거나 시야가 트여있는 공간의 경우 추가 설치 제외 가능한지?</p> <p>현재 피난구유도등 추가 설치에 대한 제외 규정은 없으나, 개정이유(재실자가 피난시 벽부형 피난구유도등을 측면에서 바라 볼 경우 시인성이 좋지 않아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에 추가설치)를 고려하여 현장상황에 따라 설치여부 판단 필요합니다.</p> |
| 10 | <p>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제8조9항2호</p> <p>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p> <p>오기로 판단되며 정정 요함, 오기가 아닐시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에 간이헤드로 설치되는것인지?</p> |
| 11 | 오기입니다. 정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연번 | 질의내용(경북본부) |
|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1항제10호 '제8호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호 :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 제9호 :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 (후략)' · 개정전(2022.10.13.) 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1항제9의2호 '제9호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 (후략)' |

⇒ 제9호 :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 (후략)'

◎ 화재안전성능기준 정정 고시사항 (기준 고시일 : 2022. 11. 25.)

| 연번 | 고시명(고시번호) | 기존 고시사항(22.11.25.) | 정정 고시사항(22.12.16.) |
|----|--|--|--|
| 1 | 국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전부개정 발령 (제2022-32호) | 1)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1항 제 10호 10. 제8호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 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 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 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 치할 것 | 1)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1항 제 10호 10. 제9호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 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 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 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 치할 것 |

2022.12.16. 정정 고시하였습니다. (소방청 공고 제2022-259호)

I

소방시설법

1

건축허가등의 동의 [^(약정)소방시설법 제6조, 시행령 제7조]

건축허가 소방동의 관련 절차등

[소방시설법 제6조]

관계법령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 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건축물 등의 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하 생략



질의 1

- 신축 등 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건축허가에 따른 소방동의' 진행시 소방관 진입장이 소방청의 소방분야의 소방공무원의 검토 대상인지?



회신 1

-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소방관진입장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 건축과 소관이나,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장’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소방공무원의 건축허가등의 소방동의 검토 범위에 포함됩니다.



질의 2

- ▣ 건축허가 접수 후 소방관계법령 개정시 개정사항 적용 여부?



회신 2

- 해당 부칙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시점은 인허가 서류를 갖추어 건축허가등의 접수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령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부칙에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건축허가 접수 후 소방관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3

- ▣ 용도변경 신고대상으로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인지, ②항의 행정기관의 신고 수리 대상인지?



회신 3

- 용도변경의 신고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해당하여 건축허가 전 소방동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변경 및 신규로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 협의토록 할 수 있습니다.
- 용도변경의 신고사항도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에 해당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범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관계법령

제12조(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이하 생략



질의 1

- 1층에 50m²의 사무실을 휴게음식점으로 기재사항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별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 용도에서 휴게음식점 용도로 표시변경하는 것은 소방시설을 추가할 사유가 없어 건축허가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2

- 연면적 400m² 미만 6층 건축물의 건축허가 소방동의 및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 문의



회신 2

-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건축허가등의 소방동의 대상이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에 해당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법 제12조]

관계법령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질의 1

-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충압펌프도 소화펌프로 보아 고장 상태로 방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지?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2)가)에 따라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압펌프도 소화펌프로 보아 고장상태로 방치하였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의 2

- 오동작시 CCTV 또는 육안으로 확인 후 오동작이 판명되면 R형 복합식 수신기의 경보 동작을 멈추고 원인 파악이 가능하면 오동작 원인 제거 후 리셋을 하여 소방설비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소방법 위반인지?



회신 2

- 질의와 같이 화재 현장을 확인하여 오동작 확인 후 경보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 오동작 원인 제거하고 즉시 소방시설을 정상상태로 리셋하는 행위는 소방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보기 동작시 현장의 화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신기를 조작하여 정지하는 행위 및 오동작의 원인을 해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신기를 정상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의 3

- 소방시설 유지·관리시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을 하는 경우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인지? 제12조제3항 위반으로 벌금형인지?



회신 3

- 평상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중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화재 발생시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제56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4

- 소방시설 교체를 하게되면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을 하는건가요 아님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회신 4

-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 주체는 사인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 관계 법령에서 그 부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와 임차인 간 계약 또는 민사등을 통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5

- 면적과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 옥탑층에 소방시설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5

- 면적 및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내부 공간도 소방시설 설치 범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피트공간, 외기와 접하지 않는 발코니, 옥탑층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옥내소화전 방수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와 같이 시설별 화재안전기준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라고 규정한 소방시설은 건축관계 법령에 따라 층으로 산정되지 않았으므로 옥탑층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유도등설비,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등의 소방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라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면적과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 옥탑층에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시설 유지 관리할 때 폐쇄 및 차단 행위

[소방시설법 제12조]

관계법령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질의 1

- 건축물의 한 개층이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고 소방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층의 화재 경보설비 작동을 정지할 수 있는지?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고 규정된바 소방시설 착공신고 후 해당 공사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정상 운영에 지장이 간다면 소방안전 관리자 지도감독 하에 해당 부분에 한하여 소방공사 기간 중 정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 오동작시 CCTV 또는 육안으로 확인 후 오동작이 판명되면 R형 복합식 수신기의 경보 동작을 멈추고 원인 파악이 가능하면 오동작 원인 제거 후 리셋을 하여 소방설비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소방법 위반인지?



회신 2

- 질의와 같이 화재 현장을 확인하여 오동작 확인 후 경보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 오동작 원인 제거하고 즉시 소방시설을 정상상태로 리셋하는 행위는 소방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보기 동작시 현장의 화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신기를 조작하여 정지하는 행위 및 오동작의 원인을 해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신기를 정상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의 3

- 소방시설 유지·관리시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을 하는 경우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인지? 제12조제3항 위반으로 벌금형인지?



회신 3

- 평상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중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화재 발생시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제56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시설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대상 및 기준

[소방시설법 제7조]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제7조】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 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질의 1

- 사진으로 설치하는 소화설비(스프링클러 등)에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1

-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은 소방시설법 부칙<제11037호, 2011.8.4.>제3조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2012.2.5.) 후 최초로 신축 · 개축 · 증축 · 재축 ·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설치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합니다. 건축행위와 무관하게 사진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내진설계기준 적용 의무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 설치를 권고합니다.



질의 2

- 원자력 발전소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2호에 원자력 발전소 중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원자력안전법령에 소방시설 내진설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소방시설 내진 설계를 적용할 사유는 없습니다.



질의 3

- 1984년도 준공난 건물에 수평으로 증축하는 경우 내진설계를 해야하는지?



회신 3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1037호, 2011. 8. 4.) 제3조(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구 법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축·개축·증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특별소방대상물에 ‘새로 설치’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 준공난 기준 건축물의 소방시설에 내진 설계가 되어있지 않으며 별동 증축이 아닌 수평증축인 경우에 수조, 가압송수장치, 배관등을 겸용하는 소방시설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할 내진설계를 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법 제16조]



피난방화시설등에 폐쇄, 훼손, 물건적치등 위반행위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제16조]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질의 1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복도 및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회신 1



기존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으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2024.12. 1.부터 포함되므로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질의 2

-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를 영업시간 종료 후 잠가도 되는지?



회신 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중 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및 비상구를 폐쇄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해당 영업장에 근무자 및 손님이 없다면 방범을 위한 폐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질의 3

- ▣ 공용복도에 자전거를 2단으로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계속적으로 자전거를 복도에 보관해도 소방시설법 저촉되지 않는지?



회신 3

-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서서는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혀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방 시설법 제16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물건적치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적치물에 대한 이동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전거를 피난통로상에 세워두는 것은 자물쇠로 잠그든 그렇지 않은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현장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자물쇠로 잠가놓는 경우 이동조치가 불가하므로 위반행위 정도가 더욱 크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의 4

-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이 옥상을 폐쇄하는 경우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회신 4

- ▣ 옥상문 의무개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옥상 폐쇄 또는 잠금 행위에 대한 소방시설법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 ▣ 옥상문 개방 및 자동폐쇄장치 설치대상은 건축법상 옥상광장 설치대상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2016. 2. 29. 이후 허가받은 공동주택의 옥상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옥상문 개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인의 판단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질의 5

- ▣ 공동주택 공동 복도 끝을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소방시설법에 접촉되는지?



회신 5

- ▣ 피난경로가 아닌 복도 끝 공용부분을 특정 개인이 무단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건축관련부서에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소방시설법 제15조, 시행령 제18조]



임시소방시설 유지 관리 책임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제15조]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제15조】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질의 1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은 시공자 중 건축 시공업체 모두를 부담해야 하는지? 소방 설비로 보고 소방공사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회신 1

- 소방시설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 공사를 하는 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2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의 집행주체가 시공사이면 타현장에서 사용한 성능상 이상이 없는 자재를 사용해도 되는지? 자재의 수량과 규격을 발주처와 상의하여 감(삭제)할 수 있는가?



회신 2

- 소방관계법령에서는 공사현장의 화재위험작업시 안전을 확보하고자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이전 사용시설의 재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 임시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감소하여 설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8]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해야하는 작업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 · 가연성 ·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 · 용단(금속 · 유리 · 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한다)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질의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호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에 절삭(그라인더작업, 금속컷팅작업등)작업이 해당하는지?



회신 1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작업 항목 중 '불꽃을 발생시키거나'에 절삭 작업이 해당 된다고 해석됩니다. 용접·용단작업은 주변에 인화성 물질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고온의 불꽃, 불티의 비산이나 열로 인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나, 연마나 절단작업은 인화성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높은 마찰열이나 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작업 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6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의료시설 소급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30029호, 2019. 8. 6.〉

제4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마목1)나) 및 같은 표 제2호마목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

제5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4),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마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5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질의 1



기준 의료시설의 2~5층 부분을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일부 부분만 의료

시설에 해당함. 이 경우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도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 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4호에 규정된 의료시설로서 소방시설설치기준의 강화된 기준 적용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라목5) 및 부칙<대통령령 제30029호, 2019.8.6>제5조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2

- 병원 스프링클러설비등 소급설치 시 병원 부지 내 별동의 장례식장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소급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해당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도 스프링클러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3

- 기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시설의 입원실에 설치된 일반형 헤드를 조기반응형 헤드로 교체되어야 하는지?



회신 3

- 기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조기반응형 헤드로 교체할 사유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소방시설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강화된 기준의 적용은 시설 단위의 강화를 말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변경(추가)되는

경우나, 신설하는 소방시설은 설치 당시의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기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재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이 경우가 조기반응형 헤드의 병원 입원실 적용(2007년 12월 28일) 이후에 의료시설로 신축, 용도변경, 증축 등의 건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면, 입원실 부분에 조기반응형 헤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노유자시설 소급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3.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질의 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연면적 5,500m²인데, 소급대상이라는 감사결과를 받았음. 소방시설법상 적법한지?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에 규정된 노유자시설은 부칙조항에 당시 별표4에 추가된 노유자생활시설에 한정되며,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은 강화된 대통령령 및 화재안전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일선서 또는 사회복지관련부서에서 제13조 제3호 규정의 노유자시설을 전체 노유자시설로 잘못 해석하여, 전체 노유자시설이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관련 조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조항에 따라 추가되는 노유자생활시설에 한정하여 적용해야함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노유자시설의 범위 해석

■ 질의요지

- ▲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6 제1호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모든 노유자시설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 제1항제3호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 적용대상으로 노유자시설을 명시하고 있고,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같은법 시행령 15조의6 제1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명시하고 있어, 모든 노유자시설이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됨

■ 답변

- ▲ 해당 관련 규정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 조항 중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에 따라 노유자생활시설 및 적용례에 따라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으로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이유

- ▲ 경과조치는 구법에서 신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어, 유예기간이 포함된 시행시기를 명시하여야 하고, 적용례는 해당 법령의 시행 대상 및 시행시기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노유자시설 중 노유자생활시설만 강화된 시설기준이 적용되는 이유
- 15조의6 제1호의 노유자시설은 당시 소방시설법 시행령[시행 2012.2.5.] 제15조의 2(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대상)에서 “소방시설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제23272호, 2011.10.28.>제6조제2항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등을 설치해야하는 노유자시설과 경과조치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시 개정법률부칙조항에 규정된 새로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노유자시설이란 노유자생활시설을 의미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1호나목 중 “아파트”를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층”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유자 생활시설(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특별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별소방대상물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노유자시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적용례에 따라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에 강화된 시설기준이 적용되는 이유

- 특별소방대상물의 분류 조정을 통해 시행령 별표2제3호라목에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병설유치원을 노유자시설로 분류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15조의6 제1호의 노유자시설은 당시 소방시설법 시행[시행 2018.6.26.] 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대상)에서 “소방시설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에 단독경보형감기”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부칙<제28996호, 2018.6.26.>제2조제4항에 별표5의 개정규정에 따라 400m² 미만의 유치원을 설치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 병설유치원의 경우 개정 적용례에 따라 노유자시설로의 소방시설을 기한안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나, 400m² 미만의 유치원에 한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만 강화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03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 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별소방대상물의 분류를 조정하고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바. 특별소방대상물의 분류 조정(별표 2 제3호라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 등)

특별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시장에 견본주택을, 판매시설에 전통시장을 추가하여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병설유치원을 노유자(老幼者)시설로 분류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함.

사.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별표 5 제2호라목, 마목 및 바목)

화재신고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 대통령령 제2899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제1호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다.

별표 2 제8호가목1) 중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를 "초등학교"로, "시설물을 말한다"를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나목 중 "(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를 "[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16호라목 중 "「유통산업발

전법」 제2조제14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나목2) 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2) 및 같은 호 아목2) 중 "장례식장"을 각각 "장례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제목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중 "방화복"을 각각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목 3)마)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6) 연면적 400m² 미만의 유치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2851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이하 "학교규정시행일"이라 한다) 당시 운영 중이던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2 제8호가목1) 및 같은 표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 개시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2 제8호가목1) 및 같은 표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립 병설유치원

2.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국립·공립 병설유치원

③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운영 중이던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5 제2호바목6)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 개시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5 제2호바목6)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립유치원

2.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국립·공립유치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15조의6 조문 변경 정리

- 15조의3(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말한다.
- 15조의3(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말한다.
- 제15조의4(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말한다.
- 제15조의5(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 6. 26.>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용도변경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질의 1

- 표시변경이 용도변경에 포함되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적용하는지?



회신 1

- 기재사항의 변경은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제4항에 규정되어 용도변경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용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 제연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지하1층을 판매시설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제연설비 철거 가능한지?



회신 2

-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용도변경하여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설치의무가 없다면 제연설비의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 지상1층을 스크린골프연습장으로 업종 변경하면서 건축물 내에 운동시설이 500㎡가 넘어 지상1, 3층이 근생에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 범위?



회신 3

- 금회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용도변경되는 장소가 지상1층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장소에 대하여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며,
- 건축법에 따라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지상1층과 지상3층 모두 용도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되는 장소 모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을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4

- 지하1층 지상10층 건축물로서 지하층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지상층 부분에 용도변경을 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4

- 민원인이 기재하신 지하층 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층 일부를 용도변경 시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는 부분에만 현행 소방시설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할 경우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별표4] 제1호라목에 따라 해당 층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경우는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5**

-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시 어떤 시설로 보아 소방시설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5**

-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용도변경 행위 없이 허가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용도를 적용하여 소방시설을 적용할순 없습니다.
- 허가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는 관할 건축부서에 통보되어 행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도변경 행위가 선행된 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4에 따라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증축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관계법령**【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 (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또는 같은 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 (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질의 1

- 건축물 외부에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해당 승강기의 설치가 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축에 해당된다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증축 당시의 소방 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감지기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질의 2

- 스프링클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증축할 예정임. 펌프가 주펌프, 예비펌프 모두 엔진펌프인데 소방시설법 증축 특례에 따라 주펌프를 전동기펌프로 교체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기존 부분과 증축부분이 방화 구획되는 경우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 민원인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증설과 관련하여 기존의 엔진펌프의 용량변동 (펌프 및 수조교체)이 없는 경우라면 전동기 펌프로 교체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엔진펌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질의 3

- 병원 증축되는 부분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간이스프링 클러설비를 설치해도 되는지?



회신 3

-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029호, 2019. 8. 6.>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되어 병원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나,
- 병원 내에 증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증축 시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현행법을 적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8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공장과 창고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여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5호 및 제16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15.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질의 1

- 공장 용도의 건물에 동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을 동일 건물 안에 저장하여, 공장과 창고(공부상 창고시설)로 사용시에 이 건물을 복합건축물로 보아야하나요, 공장 또는 창고 시설 보아야하나요?



회신 1

-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는 세부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 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8호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 제16호에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창고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같이 공장 내 창고가 공장의 필수 부속용도로 사용한다면 해당 지자체 건축부서 및 관할 소방서 협의 후 복합건축물이 아닌 공장시설로 특정소방대상물을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

- 주용도가 공장인 건축물에 창고가 있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공장 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30호가목3)에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물품을 저장하는 용도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를 공장 시설로 볼 수 있으나, 질의하시는 창고가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용도의 시설이 아니라면 건축물의 주용도와 관련없이 창고시설로 보아 복합건축물에 따른 소방시설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의 해석**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

관계법령**【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질의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을 적용하여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분리하기 위하여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조건”을 방화셔터에만 적용하는지? 갑종방화문도 적용하는지?



회신 1

- 갑종방화문의 경우 도어클로저에 의하여 항상 닫혀있다면 소방시설과 연동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방화문을 개방하여 사용한다면 소방시설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구 해당 여부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28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28. 지하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질의 1

- 정수장 부지 내에 설치하는 폭3M 높이 2.5M 길이250M 의 공동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해당하는지?



회신 1

- 일반적으로 사업장 부지 내에서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 또는 전력 또는 통신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8호나목에 규정된 '공동구' 해당하지 않으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특정소방대상을 분류 문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질의 1



● 공동주택 단지 내 별동의 부대시설(어린이집, 경로당등) 소방시설 적용 문의



회신 1



- 공동주택 부지 내 별동으로 설치된 부대복리시설은 개별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하나의 동에 같이 설치되며, 부대복리시설이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동 전체를 공동주택으로 적용합니다.



질의 2



● 상가위에 공동주택이 있는 주상복합건물로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하는 경우,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될수 있는지?



회신 2



●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를 적용하여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수 있을지 여부는 배관, 배선등의

관통부 및 개구부가 없으며 상호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구조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상가와 공동주택이 출입구를 공유하지 않고 직접 맞닿고 있는 부분을 통하여 배관 및 배선이 관통하여 연결되는 방식이 아니며, 또한 인접한 개구부를 통한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소확대 여부등을 비롯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소방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소방서 및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립주택의 세대수 산정 기준 문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8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의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질의 1



● 단지형 연립주택의 세대수 산정 기준이 한 동 기준인지? 단지 전체인지?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8호자목2)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기준은 하나의 지하주차장에 연결되어있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별 개별 주차장이라면 하나의 동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동에 연결되어 있는 주차장이라면 연결되어 있는 동의 세대수를 합산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역아동센터 노유자시설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9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9. 노유자시설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질의 1



지역아동센터가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지 ?



회신 1

- 지역아동센터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합니다. 별표2 제9호나목 아동관련시설 항목 중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있고, 「아동복지법」 제52조제8호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지역아동센터를 명시하고 있어,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에서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근거법 | 노유자시설(별표 2 제9호) | | 기타 |
|----------|-----------------|--|--|----|
| | | 생활시설(12조1항6호) | 이용시설 | |
| 노인 관련 | 노인 복지법 | <p>노인주거복지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p>노인의료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p>재가노인복지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p>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p> <p>※ 주택에 설치된 것 포함</p> | <p>노인여가복지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 ▷ 경로당 ▷ 노인교실 <p>노인보호전문기관</p> <p>노인일자리지원기관</p> | |
| | 노인 장기 보험법 | <p>재가장기요양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p>※ 주택에 설치된 것 포함</p> | | |
| 아동 관련 | 아동 복지법 | <p>아동복지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단기보호시설 ▷ 공동생활가정 | <p>아동복지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관 | |
| | 영유아 보육법 | | <p>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부모협동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

| 구분 | 근거법 | 노유자시설(별표 2 제9호) | | 기타 |
|-----------------|--------------------------------------|--|---|---|
| | | 생활시설(12조1항6호) | 이용시설 | |
| | 유아 교육법 | | 유치원 ▶ 국립유치원 ▶ 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병설유치원 | |
| 장애인 관련 | 장애인 복지법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지역사회시설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수련시설 ▶ 점자도서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보호작업장 ▶ 장애인근로사업장 | 장애인지역사회시설 ▶ 장애인심부름센터 (⇒ 근린) ▶ 수화통역센터 (⇒ 근린) ▶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 근린) |
| 정신 질환자 관련 | 정신 보건법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 중독자재활시설 ▶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24 시간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 정신요양시설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주간재활시설, 심신수련 시설 ▶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24 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 시설(근린 또는 판매) 정신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
| 노숙인 관련시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 노숙인복지시설 ▶ 쪽방상담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 근린) ▶ 노숙인진료시설 (⇒ 의료시설) |
| 기타시설 | 사회복지 사업법 | 기타 24시간 생활시설 ▶ 결핵환자 ▶ 한센인 | 기타 미분류 용도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 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지하구 해당 여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28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28. 지하구

- 가. 전력 ·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인 것



질의 1

- 십(+)자 모양으로 연결된 지하구의 길이를 합산하는지? 한쪽의 최대 길이를 기준으로 지하구 해당 여부를 정하는지?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28호의 지하구는 하나의 특별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귀하가 질의하는 지하구가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에는 해당 지하인공구조물의 길이를 합산하여 50m 이상이라면 특별소방대상물 중 지하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 케이블 접속구가 없는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은 특별소방대상물 중 지하구에 해당되지 않는지?



회신 2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이나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28호가목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음



종교시설과 단독주택 소방시설 적용 관련 문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30. 복합건축물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질의 1

- 종교시설과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 주택 면적 포함해서 자탐설치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주택 면적 제외해서 비경대상인가요?



회신 1

- 귀하가 질의하시는 주택의 주용도가 종교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이라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30호나목에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복합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교시설만의 면적을 적용하여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도서관의 특정소방대상을 분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및 제12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8. 교육연구시설
 바. 도서관
12. 업무시설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질의 1

- ▣ 도서관을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는지? 업무시설로 분류하는지?



회신 1

-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는 「건축법」이 아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분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시는 도서관이 교육연구시설 부지 내에 있으며, 주 이용자가 학생 또는 교직원인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의 국민 또는 시민을 위하여 개방된 공공 도서관의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여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23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23. 발전시설

- 가. 원자력발전소
- 나. 화력발전소
-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 라. 풍력발전소
- 마. 전기저장시설[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질의 1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23호의 발전시설 중 마. 전기저장시설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태양광발전을 하더라도 전기저장장치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만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요?



회신 1

- 전기저장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23호 발전시설 중 마목의 전기저장시설은 "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저장장치는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제2조 제1호에 따라 구성(배터리,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 내·외부와 상관없이 상기 기준을 충족한다면 전기저장시설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에너지 저장장치(ESS)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 부대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21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21. 교정 및 군사시설

사.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질의 1

- 군 부대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교정 및 군사시설로 분류하는지? 노유자시설로 분류하는지?



회신 1

- 군 부대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나목의 '아동 관련 시설'로 보아 '노유자시설'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같은 표 제21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 내의 어린이집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2

- 군부대 내에 설치되는 전투식량 및 중앙조달부식창고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문의



회신 2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21호사목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창고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될 경우 이는 교정 및 군사시설로 볼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대학교 체육관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및 제11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학교(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학교



질의 1



■ 대학교의 체육관을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운동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1)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는 체육관도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나,
-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교사 및 학교만을 교육 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대학시설의 체육관은 운동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9

특정소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지면과 접한 지하층 비상콘센트 설치 여부 문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5호 라목]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m^2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질의 1

- 피난층인 지면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1층의 주민공동시설과 피트에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라목2)에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대상으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m^2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에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피난층에 대하여 설치를 제외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법령에 따라 지하층으로 산정되어있다면 지면과 접하고 있는 지하층도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수용인원 산정시 건축물 제외 부분 포함 여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라목]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별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질의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별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회신 1

- 「건축법」 제3조에 따라 철도시설의 승강장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으나, 승강장을 포함한 철도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의 “운수 시설”로 특별소방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승강장 및 대합실과 같이 철도시설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수용인원 산정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승강장등이 외기에 개방 되어있는 구조라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공간에 스프링클러헤드는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제연설비 설치대상 해당 여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5호 가목]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m^2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질의 1

- 지하층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이 있고 면적이 1,300제곱미터일 때 근린생활 시설이 900제곱미터이고 주차장이 400제곱미터인 경우 주차장도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포함되어 거실제연을 설치 하여야 되나요?



회신 1

- 소방시설법 제2조제2항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 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산하여 1,000 m^2 미만인 경우에는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할 사유는 없습니다.



질의 2

- 제연설비 설치 기준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범위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규정된 “부속용도”는 제외하는지?



회신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해당 용도”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규정된 “부속용도”를 모두 제외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속용도” 중 펌프실, 기계실, 발전기실등과 같이 평상시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설비실등은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3

-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 창고도 판매시설의 면적에 합산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3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에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부속용도는 창고시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창고가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 경우에는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에 합산하여 그 합산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3)에 해당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4

- 피난층에 접해있는 지하층의 근린생활시설도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4

- 면적 및 층의 산정은 소방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방시설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으며,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지하층으로 정해진 층을 피난층이라하여 제연설비를 제외할수 없습니다.

- 다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7호가목2)를 충족하는 경우에 제연설비를 면제할수 있습니다.



질의 5

-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 저온저장고가 1천 m^2 이상인 경우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5

- 저온 저장고가 창고시설이 아닌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 경우에는 이를 판매시설의 면적에 합산하여 적용하며,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m^2 이상이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 3)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6

-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400 m^2 , 판매시설 면적이 800 m^2 일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면적이 각각 1천 m^2 미만인데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6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5호가목3)에 따라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m^2 이상인 층에는 제연설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시설이 1,000 m^2 이상일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m^2 이상인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0)의 해석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라목]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별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질의 1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의 문구의 뜻이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 지붕 또는 외벽이 내화구조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지?



회신 1

- "지붕과 외벽이 불연재료이며, 지붕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만 같은 표 제1호라목10)을 적용하며,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라목10)가) 내지 마)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해당 조항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500㎡ 이상인 층에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되는것인지 500㎡ 이상인 층이 있는경우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랙식창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라목]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8) 랙식 창고(rack warehouse):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질의 1

- 기존 창고에 랙식 선반이 설치한 창고입니다. 창고의 최고 높이는 10m를 넘지만, 평균 높이는 8m 미만입니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요?



회신 1

-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m^2 이상인 것에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으로 표현함으로서 이를 통해 해석시 바닥면에서부터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까지를 높이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해당부분에서의 높이는 평균 높이가 아닌 최고 높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

- 2007년 준공된 물류창고를 랙식 창고로 변경할 예정임. 이 경우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추지 않은 선반을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 소방시설설치기준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대상 중 랙식창고에 해당하는지?



회신 2

- 민원인의 기재사항에 물류창고의 건축물 현황, 허가일 등을 기재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라목8)에 스프링클러설치대상으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m^2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높이와 바닥면적 합계 두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령 개정 당시(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에서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 개정) 같은령 부칙<대통령령 제24304호, 2013.1.9.>제6조제2항에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 창고가 용도변경이나 증축등 추가적인 건축행위가 없었다면 최초 건축허가당시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당시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설비를 설치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세대 내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여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차목]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 차.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질의 1



- 공동주택의 각 세대 내에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차목에 공동주택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대상이 아니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에 “보일러”라 함은 사업장 또는 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주택 등 세대 내에 설치된 “가정용 보일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주택 내부의 가정용 보일러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운영 제외 가능 여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2호사목]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별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질의 1

-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1

-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사목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사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한다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에 소명하신 후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철거하지 않고 임의로 소방시설을 정지시킬 경우 같은 법 제12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별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m²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m² 미만인 시설
 - 3)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m²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질의 1

- ▣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에 연면적은 1,030.14m². 지하1층 주차장 바닥 면적은 348.09m²이며 지상1층에서 4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만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바닥면적 합계는 682.05m²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1

- 민원인이 기재하신 근린생활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에 기재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연면적 및 바닥 면적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맞으나, 제1호마목2)에 규정된 근린생활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 복합건축물 제외 요건에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사무, 주차 등)는 복합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면적으로 규정한 것은 부속시설의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소방시설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나, 해당

조항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따라 부속시설인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적용합니다.



질의 2

- 입원실이 있는 의원, 한의원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공간이 부족하여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밖에 설치를 못 하는데 가능할까요?



회신 2

- 상수도직결형과 캐비닛형으로 설치와 관련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 안전성능기준」 제14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에 따라 제5조제7항을 적용하지 않고 상수도직결형과 캐비닛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 2019년 하반기 시도본부 소방시설법 담당자 회의 결과알림(2019.09.06.)



질의 3

-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500㎡, 주택-300㎡, 의료시설-300㎡)인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마목7)에 따라 간이SP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3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아닌 “연면적”으로 규정된바, 복합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용하여 1,000㎡ 이상이므로 간이SP를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바목]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 발전실 ·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 · 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 · 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 · 축전지실 ·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외부 오염 공기 침투를 차단하고 내부의 나쁜 공기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흐를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질의 1

- 물분무소화설비 설치대상 중 전기실·발전실·변전실에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당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을 의미하는지? 가연성 피복이 아닌 전선이란 난연성능 이상의 전선을 의미하는지?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5)에 규정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의 물분무등소화설비 제외요건은 해당 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발전·변전설비에 사용되는 전선으로 해석되며, 가연성 피복으로 된 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 가연성 피복이 아닌 전선에 대해 소방시설법상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난연의 성능(불연, 준불연 포함)을 가진 피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필로티 주차장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 해당 여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바목]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질의 1

- 필로티 부분을 건축물의 내부로 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3호다목에는 필로티나 이와 비슷한 구조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필로티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필로티 부분을 건축물의 내부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필로티 부분은 외기에 개방되어 있고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안으로 건축물의 외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 해당 부분이 $200m^2$ 이상인 경우 물분무등 소화설비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8호자목의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같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의 2

-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인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에 보행자 통로도 넣어서 계산하는지? 바닥면적 산정시 산정기준은?



회신 2

-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주차장 및 필로티 주차장등에 대하여 물분무등소화시설을 적용하여 주차장 화재로 인한 피해 저감을 그 목적으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바목3)에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m² 이상인 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필로티 상층 외벽 바깥선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며, 주차를 하기 위한 사람 및 차량의 통행로도 주차의 용도로 보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지하주차장 면적 산정시에도 별도로 보행자 통로를 제외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여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3호가목]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질의 1

- 단독주택에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를 사용하고 있으면 피난기구(구조대)를 설치 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가목 및 별표 4 제3호가목,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표 2.1.1 제1호에 따라 적응성 있는 피난 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 건축허가등의 소방동의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노유자시설(노유자생활 시설)을 사용하여도 특별소방대상물이면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4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소방동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상 층에 해당하지 않는 옥상의 헨터실등에 소방시설 설치여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라목]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별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질의 1

- 건축법상 층에 해당하지 않는 옥상의 헨터실등에 스프링클러설비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건축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원칙적으로 특별소방대상물의 모든 부분에 설치하고, 화재 위험이 적거나 소방시설 적응성이 없는 공간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령에 건축물의 층수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었다

하여 스프링클러설비등의 소방시설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 다면,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등 개별 화재안전기준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라고 규정한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등의 소방시설은 설치하여야 합니다.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관련 문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5호 나목]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질의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나목1)에 규정된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이 지하층 포함인지?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나목1)에 규정된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m^2 이상인 것'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상인 경우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명시된 규정 중에 별도로 지하층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치소 내 수용거실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문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라목]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생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질의 1

- 교도소의 수용거실부분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고, 통행복도, 수용자 생활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이 있는데, 수용거실에 대한 기준이 어디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1)가)의 수용거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된 “수용거실”로 보아 통행복도, 수용자 생활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같은 시행령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창살 등이 설치되어 쉽게 탈출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무창층에 해당하여 신축 및 증축등의 건축행위를 하는 교도소 및 구치소라면 같은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7)에 해당하여 무창층에 해당하는 층 전체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소방시설 설치 여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 $600m^2$ 미만인 시설
 -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질의 1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도 노유자시설로 보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귀하가 질의하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 다목에 해당하여 ‘노유자시설’에 해당됩니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마목에 해당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해당합니다.
- 해당 시설은 소방시설법 별표 4 제1호마목5)가)에 따라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노유자 생활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유자시설’에는 해당되어 노유자시설에 갖추어야할 소방시설을 갖춰야합니다.

10

[별표6]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4조]



발효퇴비 보관창고의 옥내소화전 설치 제외 가능 여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2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2. 옥내소화전설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질의 1

- 습기가 많은 환경으로 옥내소화전의 부식 및 고장이 빈번한 발효퇴비 보관창고에 옥내 소화전설비 설치 제외 가능한지?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 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 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되므로 옥내소화전 대신 옥외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11조제4호에 규정된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과 같이 습기가 현저히 많고 화재의 위험성이 적은 장소는 관할 소방서 판단 하에 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 제외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기저장시설에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스프링클러설비 대체 가능 여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3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3. 스프링클러설비

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은 제외한다)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질의 1

- 전기저장시설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HFC-227ea)를 설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면제가 가능한지?



회신 1

- 가스계소화설비를 비롯한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전기저장시설에 소화능력이 낮아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도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은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면제 관련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4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4.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질의 1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인 근린생활시설에 상위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대신 토출량을 기준개수 10개로 잡아 800lpm으로 선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4호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개수 10개가 아닌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면제됩니다.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승강기 제연설비 설치 여부 문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7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17. 제연설비

- 나. 별표 4 제5호가목6)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5호의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질의 1

-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이란 승강장에서 노대가 별도로 설치되면 되는 것인지? 승강장 자체가 외기에 노출된 노대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회신 1

- 법령 개정 당시 개정 계획(2012.06.)을 검토한 바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

계단 또는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외기와 직접 항상 면하여 연기의 집적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연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문 규정이 없어 제외적용상 문제점이 있어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 계단등에는 제연설비 설치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토록 한 입법 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상 승강장과 노대 사이에 문 또는 창이 없이 외기와 직접 항상 면하여 설치된 승강장의 경우에만 제연설비의 설치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면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9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9.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화재알림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질의 1

- 습식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면제가 가능한지?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9호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지기가 감지부로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면제 됩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면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건축허가 시점이 2004. 5.30. 이전이라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

(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건축물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 면제가 가능하였습니다.



상수도소화설비 설치 면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6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16.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질의 1



서울소방본부에서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면제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6호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는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면제가 가능하나, 서울시에 확인 결과 '서울특별시 소방기술심의회' 결정에 따라 신축의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 면제를 일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축, 용도변경 등의 경우는 해당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소방기술심의 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른 조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무창층의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는 창호의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빌터를 향할 것
 -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질의 1



● 오버헤드도어가 개구부로 인정 가능한지, 오버헤드 도어가 외부에서도 쉽게 열수 있어야 하는지, 쉽게 부술수 있는 요건도 만족해야 하는지?



회신 1



● 오버헤드도어에 대해 기존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무창층의 정의 중에서 개구부'로 인정하는 것으로 답변되었으며, 무창층 제외 요건중 크기와 높이, 도로 또는 빌터의 규정을 충족하고, 자동(소방설비 연동을 의미하지 않음)으로 개방되는 구조이며 정전시에도 수동으로 열수 있다면 출입구에 해당 합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무창층 제외요건 중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에 대한 해석은 파괴 또는 개방 두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 하여야 된다는 의미로 내부에서 자동 또는 수동 개방이 가능하다면 쉽게 열수 있는 구조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질의 2

- 발판을 설치하여 체육관 바닥보다 450mm 높게 설치된 경우 개구부의 하단은 1,050mm가 됨. 무창층 제외 요건 중 개구부 요건에 해당하는지?



회신 2

- 해당 민원사항의 도면과 기재 사항을 검토한 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무창층 개구부 요건 중 '바닥면으로부터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조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됩니다.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에서의 바닥면은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상 용어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해당층 실내의 바닥마감면을 의미한다고 해석 됩니다.



질의 3

- 무창층 내용 중 쉽게 깰수 있는 구조의 유리 전체 두께 및 공기층의 두께가 있는지?



회신 3

- 무창층 기준해석에 의한 업무처리지침 중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복층유리의 총 두께로 규정하지 않고 복층유리의 구조(유리두께 + 공기층 + 유리두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공기층+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공기층+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 따라서 복층유리의 경우 일반유리 및 강화유리의 두께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기층의 두께 및 유리 전체의 두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4

- 4층의 외벽보다 3m 후퇴되어 있는 5층의 개구부를 무창층 계산시 유효한 개구부에 해당되는지?



회신 4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에 규정된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빙터를 향할 것’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선으로부터 일부 뒤로 후퇴되어 건축된 층의 개구부라 하더라도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빙터를 향하고 있다면 이는 무창층 계산시 요건을 갖춘 개구부로 볼 수 있다고 해석 됩니다.



질의 5

- 건축물 전면에 수십 5cm 이하의 연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부분을 접한 면에 있는 개구부를 무창층 계산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신 5

- 연못의 바닥면이 시멘트와 자갈 등과 같이 단단한 재질로 되어있어 소방 차량의 부서 및 소방관의 활동에 제약이 없다면 수십 5cm 이하이므로 무창층 계산시 해당 부분에 접한 개구부도 계산시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십이 낮더라도 소방관 및 소방차량이 밟고 활동할 수 없는 구조라면 무창층 계산시 해당 면에 접한 개구부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1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화재예방법 제24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질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별표 4에 따른 등급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중에서 등급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질의 1

- 기준 숙박시설(101동) 부분완공사용승인을 받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하고, 이후 숙박시설(102동~104동) 완공사용승인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이며 관리의 권원 또한 같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일 경우 숙박시설(102동~104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의무가 있는지?



회신 1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숙박시설 101동~104동을 하나의 특별소방대상물에 해당하므로 기존 선임신고 한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

- 연면적 4백제곱미터, 건물로 커피숍(다중이용업소)운영중입니다. 소방시설은 비상경보설비 대상으로, 자동문 화재연동을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하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회신 2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한 특별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별소방대상물 관한 질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3. 문화 및 집회시설

라.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별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m² 이상인 경 우에는 모든 층



질의 1

- '2018.6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견본주택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여기서 법 개정이전 견본주택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이라면 선임신고를 해야되는지 여부 및 자체점검 대상인지?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3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에 견본주택에 해당하고, 별표4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등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었다면 선임 대상에 해당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소방대상물에 견본주택이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되기(2018.6.27)이전에 허가된 견본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실시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안전관보조자 선임 기준 관련 질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관계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별표 4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 2) 의료시설

- 3) 노유자 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 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질의 1**

- ▣ 특정소방대상물로 연면적이 8만제곱미터일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몇명을 선임 해야 하는지요? 또한, 24시간 근무자 및 소방차가 있을 경우 몇명으로 완화 되는지요?

**회신 1**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따라 $15,000\text{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은 $80,000\text{m}^2 \div 15,000\text{m}^2 = 5.33$ 명(0.33 버림) → 5명,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근무하고 소방차가 있는 경우 $80,000\text{m}^2 \div 30,000\text{m}^2 = 2.66$ 명(0.66 버림) → 2명으로 적용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관련 질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겸 할 수 없는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관리보조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과니 책임자, 안전관리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과니 책임자, 안전관리원)
4.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과니 책임자, 안전관리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과ни 책임자, 안전관리원)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 따라 송유관설치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8.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자)



질의 1

- 소방안전관리자를 전담(겸직금지)으로 하여야 하는 대상은?



회신 1

-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을 만 겸직을 제한합니다.



질의 2

- 기존 소방안전대상물 특급, 1급인 경우에는 언제부터 겸직 금지가 적용 되는지?



회신 2

- 기존의 특급, 1급 대상의 경과조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시행일(2022.12.1.)로부터 6개월 이내 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1일부터는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이 금지됩니다.



질의 3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직이 가능한가?



회신 3

-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 관련은 소방관계법령에서는 겸직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의 겸직 제한 여부는 국토교통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겸직제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겸직이 금지되는지?



회신 4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만 적용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 5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도 겸직이 금지 되나요?



회신 5

- 공공기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만 적용 됩니다.



질의 6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특급 및 1급 대상에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지?



회신 6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단서규정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지금 국회에서 개정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7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는 단순히 법 조항에 따른 타 안전관리 분야와 중복선임 금지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소방업무만을 전담 다른업무 금지(건물총괄소장 역임하며 선임, 기계, 전기, 건축분야 업무 도움)에 해당하는지?



회신 7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관련은 다른업무에 대한 금지사항이 아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서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

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른 안전관리자”는 「예방소방 업무처리규정」 제14조(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범위 변경 관련 질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1조】

부칙 제11조(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기간에는 별표 4 제1호가목3)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질의 1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20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개정되는지? 소방안전관리자를 변경해야하는지? 유예기간이 있는지?



회신 1

- 「화재의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 됩니다. 또한, 같은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기간에는 별표 4 제1호가목3)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법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관한 질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조]

관계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 정의) 4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 하지 아니합니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질의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주체는?



회신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입니다. 여기서, “공사시공자”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공사를 하는자를 공사시공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사가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주체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 전체를 수주하여 소방공사업체에게 소방부문을 하도급 했을 시 또는 직영으로 소방부문을 공사 할 시, 공사 분리발주로 종합건설업체가 건축, 토목 공종을 수주하고 소방은 소방업체가 수주 했을 시 선임 주체는?



회신 2



공종 별이 아닌, 해당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공사를 하는 공사시공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질의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에 따른 적용시점은 기준은?



회신 3

- 법 시행 후(2022.12.1.) 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건축허가청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고 및 신청한 대상부터 적용합니다.



질의 4

- 기준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으로 착공신고의 경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연면적1만5천제곱미터이상, 지하 2층 이하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냉동 또는 창고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으로 적용하는지, 증축 하고자 하는 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신 4

- 상기 대상은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이 아닌,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질의 5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하나의 부지에 여러동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 중인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하나의 건축물에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신 5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하나의 건축물(한 동)에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질의 6

- 건설현장 소방안전리자가 공사 규모에 따른 배치 인원은 몇 명 인지?



회신 6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하나의 건설현장에 한 사람만 선임합니다.



질의 7

- 건설현장의 특성 상 한 명의 직원이 여러 현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이 다수 현장을 겸직하는 경우, 여러 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7

- 한 사람이 여러 현장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중복선임에 해당하여 선임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하나의 건설현장에만 선임 할 수 있습니다.



질의 8

-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



회신 8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건설현장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9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외 기타 업무 (소방업무와 관계없는 업무)와 겸직을 하여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 9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외 기타 업무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질의 10

- 기존 건물에 선임 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후 본 증축공사에 대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여부 ?



회신 10

- 중복선임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와 기존 건물에 선임 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각각 선임하셔야 합니다.



질의 11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제4호(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 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도 포함되는지?



회신 11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미 건축 완공 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대상입니다. 또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 바랍니다.



질의 12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하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소방 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건설현장에 선임해야 한다면 전담의 기준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만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12

-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규정이 아닌, 이미 건축 완공 된 특정소방대상물(특급, 1급)의 겸직금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관련 질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조]

관계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특급, 1급, 2급, 3급)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가. 소방안전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일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소방공무원 경력자
 - 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에 한정한다)



질의 1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몇 급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신 1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 중 규모 및 등급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취득 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하시면 가능합니다.



질의 2

-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하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2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시험없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자격수첩을 발급신청 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 하시면 가능합니다.



질의 3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가 해임하고 다시 다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될 시 다시 강습교육을 받아야하는지?



회신 3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1회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질의 4

-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현재 건설회사

에서 건설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2022년 12월 1일 이전에 강습교육을 받고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요?



회신 4

- 상기 자격으로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 중 규모 및 등급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취득 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하시면 가능합니다.



질의 5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자격(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으로 2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을 시험없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 가능하였는데, 법 시행 이후에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시험 없이 취득이 가능한가요?



회신 5

- 상기자격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상기 자격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되어 있는 사람은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2급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기 관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5.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 퇴직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③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본다.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질의 1**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언제까지 선임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회신 1**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법 제29조 제1항 공사시공자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까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 합니다.

**질의 2**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시 새로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신 2**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준용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조]

관계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질의 1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화재위험작업의 허가의 정의와 허가의 범위는?



회신 1

- 화재위험작업의 허가란 행정법상 허가가 아니고, 화재위험작업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승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질의 2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업무수행(업무대행)이 가능한가요?



회신 2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대행할 수 없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처벌 관련 질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조]

관계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제1항·제3항,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제52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질의 1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대상자는?



회신 1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별칙)제3호에 따라서, 선임 의무가 있는 공사시공자입니다.

1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 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질의 1

- 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전문가에게 의뢰해도 되는지 아니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신 1

- 기관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주관하에 전문가에게 교육 및 훈련을 받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 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22. 11. 29.)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 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 · 3) ·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질의 1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 공공기관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2

- ▣ 사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추가선임 관련입니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1명이 선임되어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내부 필요에 따라 추가로 1~2명을 더 선임하고자 합니다. 추가선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2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감독적 직위가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추가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는 있으나 추가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감독적 직위가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15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보고서제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하는 특별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별소방대상물)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별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질의 1

- 종합점검 대상으로 건물의 사용승인일 해당하는 달이 9월입니다. 종합점검 시작일을 9월 30일 마지막날 시작해서 10월5일에 점검이 끝나도 되는지?



회신 1

- 종합점검은 사용승인을 받은 달에 점검을 시작하여 종료일이 해당 달을 초과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질의 2

-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 제6호나목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이스프링클러도 포함되는지?



회신 2

- 간이스프링클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나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만 적용됩니다.



질의 3

- 종합점검대사의 건물이 작동점검 시기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종합점검 대상의 건물인데 사용승인일이 2020.2.3일인 건물이면 그 다음해인 21년 2월에는 종합점검을 하고 그이후 6개월 이후에 8월달에 작동점검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월에 종합점검을 하지 않고 일찍점검을 해서 1월달에 종합점검을 실시하였다면 작동을 6개월 뒤인 7월달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종합을 일찍하더라도 8월에 작동 점검을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3

- 종합점검 기준이 2월인 경우, 종합점검을 1월에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월에 종합점검을 실시하였다면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7월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질의 4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는 종합점검 대상의 내용에만 있고 작동점검만 받는 대상물의 내용에는 따로 명기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나요?



회신 4

- 작동점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5

- 특정소방대상물의 시설유지관리는 용역업체와의 계약관계에 있고, 자체점검 실시 관련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와의 계약을 관계인이 아닌 시설유지관리 용역업체와 계약 및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관계인이 직접 소방시설관리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은지? 소방시설관리업자와 관계인이 직접 계약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신 5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건물 유지관리에 대한 계약관계에 있으므로 시설 유지관리업체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와의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질의 6

- 아파트 단지 내 연면적 2천제곱미터 소방대상물에 유치원(1층~4층) 50%, 나머지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종합점검이 되는지?



회신 6

- 상기 건물이 공공기관 소유의 건물(유치원)이 아니면서, 건축물 일부를 사용하는 일반인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일반소방대상물로서 일반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점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이고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종합점검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자체점검대상 기준일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에 따

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질의 1

■ 일반대상에서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변경되는 경우

가. 작동점검 대상

나. 종합점검 대상

▶ 가목 및 나목은 최초로 자체점검대상으로 변경 된 사용승인일 기준

■ 작동점검대상에서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변경되는 경우

가. 작동점검 대상

나. 종합점검 대상

▶ 가목은 최초 사용승인일 기준, 나목은 종합점검대상으로 변경 된 사용승인일 기준

■ 종합점검대상에서 작동점검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 작동점검대상으로 변경 된 사용승인일 기준

□ 공공기관 외관점검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표3]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해야 한다.



질의 1

- 공공기관 소방시설 외관점검의 경우 점검자의 자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정하고 있어 자회사의 소방점검 상주점검자가(모회사 소방시설 담당 부서 부서장이 공공 기관소방안전관리자 → 업무지시, 감독) 관계인에 해당하여 자회사는 소방시설관리업 면허 취득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해석됨 (자회사 소방담당직원이 관계인에 해당하여 외관점검 가능) 자회사의 직원(소방설비기사등 소방기술인정자격자 이상 등)이 외관 점검을 하기위해 공공기관 자회사에 소방시설관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한지?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4호에 따라 공공 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외관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 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외관점검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이 점검을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회사가 외관점검을

하고자 한다면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만이 소방시설공사등을 할 수 있습니다.

II

다중이용업소법

1

영업장 내 안전시설등 설치 관련 질의 등



안전시설등의 설치 · 유지 기준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 정의]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상이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 이 「건축법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 2부터 제7호의 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종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질의 1



학원법에 따르면 독서실도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학원의 범위에 포함이 되나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가 아니므로 수용인원 산정기준은 어떤 용도로 적용해야하는지?



회신 1



시행령 별표4에서 열거하는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목을 적용하여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제곱미터로 적용



질의 2

- 소방시설법 상 수용인원 산정을 위하여 바닥면적을 정할 때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학원 정유부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가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하는 복도에 해당하는지, 또한 학원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를 휴게공간 등의 용도와 공용하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하는 복도에 해당하는지?



회신 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수용인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바다면적을 정할 때 복도(통행목적),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포함하지 않으며, 학원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는 복도에 해당하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도의 주 용도인 통행과 휴게공간 등을 겸하는 복도는 수용을 산정하는 취지상 바닥면적에 포함함



질의 3

- 다른 응영권자가 다중이용업소인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 이 있는 건물의 다른 층에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 부분이 다중이용업소인지?



회신3

- 설립하는 학원의 수용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에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2)에 따라 학원에 해당됨. 단, 방화구획 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방화구획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영업장 비상구 및 주된 출입구 관련 질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가. 공통 기준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비상구 구조

가)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不燃材料)로 구획된 부속실(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하고,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복층구조(複層構造) 영업장(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4)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질의 1



비상구의 위치는 어떻게 해야 적절한가요?



회신 1

- 비상구의 위치는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가장 긴 대각선 길이로 비상구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대각선 위치에 비상구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질의 2

- 대형마트 일반음식점 입점 시 다른 영업장과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영업장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가?



회신 2

- 법 시행규칙 별표2 비상구 규정에 의해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하였으나,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부서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 수리되는 면적과 다중이용업소법 상 영업장 면적 산정기준이 동일합니다.



질의 3

- 복층구조 영업장(1,2층) 1층도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으로 보아 비상구 면제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3

- 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나목1)에 따라 복층구조의 영업장인 경우 각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질의 4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안에 타영업장 입점이 가능한지?



회신 4

-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영업장 내에 타 영업장(타 시설) 입점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장이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내부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고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소 부분을 통해서만 피난이 가능한 경우 다중이용업소 입점에 관하여 관할소방서와 협의해아여 합니다. 또한, 다른 영업장(타 시설)의 허가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른 영업장(타 시설)에 해당하는 법률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질의 5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창문 대신 폴딩도어 설치 가능 여부



회신 5

- 창문 대신 폴딩도어 설치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다면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창문 대신 폴딩도어도 설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 6

- 비상구에 연결된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의 유효너비는 건축법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다중이용업소법에 규정된 비상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6

- 법 시행령 별표1의2 비고에 의하면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 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이하 직통계단 등)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통계단 등*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구는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의 규격을 확보하면 됩니다.

* 직통계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장 내부구획 및 구획된 실 관련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구획 관련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의2]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의2】

제10조의2 영업장의 내부구획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질의 1



창고 등 1층에 소방시설 시설 설치여부?



회신 1



카바레 콜라테업은 구획된 실 등에 소화기, 발신기세트,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안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창고등의 기타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은 건물 준공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등)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건축준공당시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의 적법여부 등은 현장을 확인한 관할방서 또는 소방본부에서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3

영업장 바닥면적 산정 및 방염 면적 산정 등



실내장식물 설치 가능한 면적 산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

제10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 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질의 1



구분상가로 된 집합건물에서 여러 영업장이 연결되어 있는 영업장 중 일부분의 영업장에 다중이용업소를 할 때 매장과 매장 사이 경계벽(유리)으로 되어있는 경우 방염 면적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회신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영업장 방염처리면적은 영업장을 둘러싸고 있는 벽과 천장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즉, 영업장의 내부구획 된 벽면과 건물 외벽 창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의 “벽”的 정의를 준용하여 유리창을 벽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 2

- 내화구조의 벽이 아닌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하기 위한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과 영업장 외벽 창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막은 벽은 방염처리면적 산정을 위한 벽으로 볼 수 없는지?



회신 2

-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목재 또는 합판에 대해서만 방염을 허용하고 있고, 방염할 수 있는 최대면적도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내화구조의 벽을 의미합니다.



실내장식물 사용 시 방염 관련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

제10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질의 1

- 내부마감재로 벽지를 부착(설치)하는 경우 벽지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방염벽지를 사용해야 하는가?



회신 1

-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종이류를 부착하는 경우 실내장식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이류 벽지의 경우 2밀리미터 미만은 실내장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2밀리미터 이상의 종이류 벽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벽지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다중이용업소 구획된 실의 출입문은 방염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다중이용업소의 구획된 실 출입문은 실내장식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의 문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관 또는 목재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질의 3

- 다중이용업소의 커텐류(블라인드) 방염제품 사용 가능 여부



회신 3

-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료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방염성능 제품을 사용할 수 없지만, 학관이나 목재의 경우 면적규정을 통해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염에 관해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커텐류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창문의 채광용 커텐류(브라인드 포함)에 대해서 다중이용

업소법에 따른 방염면적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방염대상 물품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채광용 커텐류는 실내장식물로 보지 않음. 다만, 소방시설법에 따라 방염물품대상에 해당됨.



질의 4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ABS도어 방염처리 가능여부



회신 4

- 다중이용업소에 사용하는 문의 경우는 실내장식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S도어의 경우는 합판 또는 목재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없고, 불연재료 또는 준연재료로 인정된 ABS도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바닥면적 산정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2조 다중이용업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 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질의 1

- 영업장 내부 창고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산정면적에서 제외 가능한지?



회신 1

-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자재 보관 등으로 사용하는 창고가 영업장 내부에 있거나 허가관청에 신고시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영업장 산정면적에 포함됩니다.



질의 2

- 다중이용업을 등록하려고 할 때 영업장의 면적을 산정 및 판단 주체는 관할 시·군·구청 인지, 소방서 완비 담당자인지?



회신 2

- 허가관청의 영업장 바닥면적 산정기준과 다중이용소법 상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허가관청에서 식품점객업으로 신고 수리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에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을 실측할 수도 있습니다.

4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등



선박(유선사업)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 다중이용업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 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1) 지상 1층
-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질의 1



선박(유선사업장)이 다중이용업소 해당 하는지?



회신 1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움직일 수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선박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상인 일반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영업장 출입문이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제5호】

제2조 다중이용업

제2조제1호·5호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1) 지상 1층
-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질의 1

- 해당 영업장 위치가 지상 3층 건물에서 3층에 해당하며 사방이 개방된 위치로 계단을 20계단 정도 내려가면 지면과 맞닿는 위치에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회신 1

-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에 접해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영업장과 같이 계단을 통하여 지면과 연결되는 경우는 피난 상 장애 여부 등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최대 수평거리 10M 이내인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협의 후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콜라텍업 위락시설 해당 관련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제2조 다중이용업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전화방업 · 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 · 텔레비전 ·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 · 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질의 1

- 카바레와 콜라텍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회신 1

- 카바레와 콜라텍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업종의 성격에 따라 개별법률에서 정의하며, 통상적으로 허가업종에 따라 구분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서 콜라텍업이란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가 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규정합니다.



질의 2

- 카바레와 콜라텍에 적용하는 소방법이 어떻게 구별하는지?



회신 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에 따라 건축허가시 같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되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면 추가로 안전시설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대로 카바레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락시설에 해당되면 건축허가 당시에 맞도록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콜라텍업으로 신고하는 당시에 맞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면 됩니다.



질의 3

- 사용면적에 따라 소방법 적용도 달라지는지?



회신 3

- 상기 카바레 영업장은 콜라텍업으로 층수와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다만, 건축물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물준공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에 따라 적용합니다.

5

기타 질의사항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교육 및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기록 관련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3조]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8조 소방안전교육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

제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질의 1



소방안전교육은 매장의 관리자 1명만 이수하면 되나요?



회신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주와 종업원 1명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하나의 건물에 여러개의 영업장이 있는 경우 어떻게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하는지?



회신 2

- 각 영업장마다 법 제13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검결과서 보관의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할소방서 점검 시 점검결과서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영업장 내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고, 각각의 영업장 별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고시원 관련 질의 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2

제9조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 1

- 법 시행규칙 별표2 영업장 내부의 피난통로 규정 중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고시원 영업장의 출입문 열림 방향이 구획된 실 내부로 열리는 경우 피난통로의 폭을 120cm 이상으로 적용 가능한가요?



회신 1

- 고시원의 각 실의 출입문 열림 방향이 실 내부로 열리는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2 3호가목에 따라 복도 폭은 120cm 이상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관련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5항]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5항】

제11조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④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3.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한 경우. 다만, 내부구조 변경 등이 있거나 업종 변경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질의 1

- 폐업신고를 한 후에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 없이 다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신청하였을 경우 ① 기존에 설치된 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설비)을 인정해도 되는지?
② 완비증명서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지?
- 영업장의 폐업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등록 취소 시 유사 업종으로 바꾼 후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1

- 다중이용업소를 폐업한 후 다시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 시설등 완비증명서”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한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되 ’다만,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준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인정 가능하고, 기타 안전시설등은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영업장 내부의 실이 감소하였을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재발급 가능한지?



회신 2

-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내부구조변경(영업장 면적증가, 구획된 실 증가, 내부통로 구조변경) 등이 없는 경우 그리고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구조 변경 없이 영업장 실 감소만 있다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부구조 변경이 있거나 안전시설등이 변경되었다면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III

초고층법



사전재난영향성검토회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관계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시·도 재난 안전대책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질의 1

- ▣ 기존 사전을 받은 A건물의 종합방재실 위치가 변경되고(도로에 면하는 위치에서 건물 안쪽으로 이동, 면적은 커짐)건축허가의 변경은 발생되지 않는 경우 사전심의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회신 1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사전 재난영향성검토협의 후 건축공사 중 종합방재실 위치를 건축물 도로면에서 안쪽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종합방재실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재협의를 받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방재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관계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 범·보안·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초합 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 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질의 1

- 종합방재실의 근무인원이 3명중 일글자1명 야근자1명 비번자 1명이므로 상주인원은 2명이 됩니다. 이런 경우 종합방재실의 상주인원이 3명이상이라고 초고층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데 문제가 될것인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지 문의



회신 1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은 법 제2조 제1호의 "초고층건축물"과 동조 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법적용 대상 건축물의 종합방재실에는 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3명 이상의 인력이(동시에) 상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및 법시행규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의 2

-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중 제3항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常住)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상주(常住)라함은 24시간 근무를 뜻하는지 해당 빌딩의 통상근무 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 인지해석이 필요합니다. 24시간 근무라면 주간에 3명 이상 근무하고 야간에 1명이 근무하면 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종합 방재실의 설치/운영)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제2항에 따라 종합방재실에는 3명 이상의 인력이 동시에 상주하여야 하며, 주간시간(09:00~18:00) 뿐만 아니라 야간시간에도 3명 이상의 인력이 상주하여야 합니다.

IV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업의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및 기술인력 겸임·겸직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관계법령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설계·감리 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것



질의 1



저희 회사가 감리원등록기준 미달로 일시 휴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휴업신고전 감리계약분에 대하여 휴업날짜 이후에 감리지정신 고를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의거 소방시설업자가 휴업·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휴업을 하여 등록증 등을 반납하는 행위가 영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 신고 전 소방공사감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휴업 이후에는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23조제2호에 따라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소방시설업의 운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업 운영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관계법령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④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질의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하도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최초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발주자("갑"), 소방설계사를("을")로 하여 소방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음.
- 사업승인 과정에서 건축주를 신탁사로 변경함에 따라 신탁사를 "갑", 발주자를 "을", 소방설계사를 "병"으로 하여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설계의 용역비는 발주자인 "을"이 소방설계사인 "병"에게 지급하도록 함.
- 사업승인 시 건축주를 신탁사로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하도급제한에 해당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 1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은 소방시설 설계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계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발주자(갑)와 소방시설설계업자(을)가 소방시설설계도급을

하였고, 다시 건축주가 변경되면서 승계 계약을 한 경우(신탁사 “갑”, 발주자 “을”, 설계업자 “병”), “을”이 “병”에게 소방시설설계비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 위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질의 2

- 관계인(당시 소유주는 신탁회사C)이 아닌 A(실질적소유자)와 소방시설업자가 도급계약을 맺고 몇달 후, 그 계약을 현소유자 B(신탁회사B)가 승계계약을 통해 승계해서 소방착공 및 감리자지정 신고를 했을 경우 이 계약이 위 법령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가요? 소방 공사업체는 신탁회사B와 승계계약이 아닌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요?



회신 2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A(실질적 소유자)와 소방시설업자가 도급 계약 후, 건축주 변경 등으로 B(신탁회사)가 건축주가 된 경우, A와 B간의 승계계약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B(신탁회사)와 소방시설업자 간 재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설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관계법령

제11조(설계)

-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 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③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의 1

- 제연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일 경우 기계분야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에서 제연설비 등을 설계를 하고, 전기분야는 일반소방시설업전기분야에서 별표1 비고 1의 나목 2)에 해당되는(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 제연설비의 전기적 부분을 설계해도 되는지, 전기분야도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에서 설계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제연설비는 기계분야에 해당함에 따라 제연설비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은 전문소방시설설계업자가 설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자(전기)는 아파트 및 연면적 3만제곱미터 (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

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질의 2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현장에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제연설비가 들어갑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의 경우 전기분야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기계설비 분야도 동일하게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를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제연설비는 제외한다) 라는 문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 현장의 근린생활시설에 제연설비가 들어 가게되어 전문소방시설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현장 감리분이 제연설비가 들어가면 전기분야도 전문설계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해서 질의 남깁니다.

- 1) 아파트 공동주택 및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에 제연설비가 들어갈 경우 전기분야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을 획득한 설계 사무소가 설계를 진행할 수 있나요?
- 2) 추가적으로 소방성능위주 심의를 받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이여도 아파트 설계는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서 아파트의 전기분야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성능위주설계를 하기 위하여는,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보유한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자는 아파트에 대한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 3



특급 특정소방대상물로 성능위주설계를 하였고, 사용승인일은 2020년 10월 21일입니다. 전기실 등에 소화가스설비의 아날로그 감지기를 1회로로 성능위주설계를 하였으나, 1개 회로로 되어 있다보니 오작동시(선로 전자파 또는 예비 화재감지와 동시에

주 화재감지 등) 소화가스가 방출되어 재산상 및 인명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실제로 방출 사례 있음) 화재안전기준 (NFSC 107A) 제 13조 2에 의거 화재감지기 1회로를 교차회로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화재감지기 1회로를 2회로로 (교차) 변경하여 시공하는 것이기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따른 신설, 증설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착공신고 없이 자체 변경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변경사항 등이 상기와 같을 시 자체 시공이 가능한가요? (관할 소방서에 문의한 결과, 상기 등과 같은 이유로 자체 시공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으나, 소방서, 상위 기관에 최종 문의하여 시공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화신 3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제13조 제2호에 따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구역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질의대상은 성능위주설계에 따라 완공 된 건축물에 해당함에 따라, 기존 설비의 간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소방서(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소방기술자 배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관계법령

제12조(시공)

-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질의 1



비상조명등설비의 소방기술자 배치 신고 여부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나' 항목의 비상방송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제외되며,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조명등설비의 경우에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에 소방 착공신고 및 기술자 배치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회신 1



비상조명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에 따라 소방시설에 해당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명설비와 비상발전기 등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영업범위에도 포함되고, 또한 현장에서도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일반 조명설비 부분까지 시공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2021. 9. 소방청(소방산업과)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비상전원(비상발전기)과 연계된 조명설비를 비상조명

등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자도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비상조명등을 시공하는 전기공사업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전기공사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를 착공 시에 현장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공사기간(작업 유/무 모두 포함) 동안 현장 대리인은 상주해야 하는지?
현장대리인 상주 or 비상주 관련 규정을 알려주세요.



회신 2

-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배치란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알맞게 나누어 둠’의 의미로 공사현장에 특정기간(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서, 소방시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 현장 이탈이 가능합니다. 즉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방기술자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참고: 소방기술자 현장이탈 지침사항

- (1일 미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발주자등의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감리원에게 알린 후 **현장을 이탈할 수 있음**
 - (승낙내용) 이탈시간, 장소, 목적, 비상연락처, 부재중 공사내용 등
 - (발주자등) 발주자 또는 공사현장 내 책임자
- (1일 이상) 법정교육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로 현장이탈할 경우 **업무대행자 지정 및 발주자등 서면승낙**

- (법정교육) 민방위 또는 예비군,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등
 - (업무대행자) 소방기술자 자격(등급 무관)이 있는 자
 - (승낙내용) 대행자, 이탈기간, 장소, 목적, 비상연락처, 부재증 공사내용 등
 - (승낙방법) 소방기술자 현장이탈 승낙서에 의한 서면 승낙
-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소방기술자는 소방감리자에게 통보, 사유발생일부터 해당 공사현장 사용승인일까지 증빙자료 보관
- (소방기술자) 현장이탈 서면승낙서 보관
 - (소방감리자) 감리일지에 기록 유지

5

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관계법령

제13조(착공신고)

-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질의 1

- 내년 2월 당사의 사옥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동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소방시설업등록증" 변경 후 현장별 변경신고서(착공신고서 접수 완료) 제출 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

상기 소방시설공사업 시행규칙에서 제12조(착공신고 등)에서 "시공자" 변경이 당사의 상황에 적용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변경은 "사업장소재지"만 수정될 예정입니다. (법인명, 대표자, 등록 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변경 없음)



회신 1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등록번호 등이 변경 없이 단순 소재지만 바뀐 사항은 시공자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착공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업소 소재지 변경 사항은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 2

- 저희 청사 지하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구역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프링클러 반경과 관련하여 스프링클러 배관을 추가로 연결하여 헤드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배관을 연결하여 헤드를 추가하는 것이 착공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2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방호 구역의 증설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6조에 따라 하나의 방호구역은 3천 제곱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층이 3천제곱미터 이내에서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배관 및 헤드를 증설하는 것은 방호구역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3

- 소방공사 시 펌프 교체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첨부서류 중 설계도서에 관련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 1 대 1 교체 (기존설치 그대로 교체만 하는 공사)가 이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어느 경우에 설계도서 제출이 면제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회신 3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에 대하여 개설, 이전, 정비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4

- 건물 내 같은 공간에 일반 화재감지기와 공기흡입형감지기를 이중화하여 설치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재감지기 및 공기흡입형화재감지기 각각 법적 기준 만족, 일반 화재감지기를 철거하고 공기흡입형 화재감지기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검토 중이며
이때, 화재감지기 경계구역 면적이나 경계구역의 수 증가는 없습니다.
이 경우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신 4

- 건축물에 일반 감지기를 철거하고, 기존에 설치되었던 공기흡입형감지기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존의 일반 감지기를 철거하고 공기흡입형감지기로 교체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설에 해당함에 따라 착공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 5

- 2022년 02월 10일 저희 회사가 이사를 하면서 대표자가 A에서 B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방공사업 등록번호는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대표자와 주소가 변경

되어 현장이 있는 00소방서에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방공사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경대상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5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착공 후 ①시공자, ②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③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가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단지 대표자만 A에서 B로 변경 된 경우는 시공자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표자가 소방기술자로 배치 된 경우 등 확인의 필요합니다.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관계법령

제14조(완공검사)

-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나 제2항에 따른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증명서의 발급,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질의 1

- 지하철 역사 상가 리모델링 현장이며 총 11개의 상가 공사 중 7개 상가는 완료되었으며, 4개의 상가가 공사 중입니다. 전체 소방준공은 2월중 예정이며, 소방시설물은 개보수 공사건이라서 기존 소방시설의 위치 이동 및 추가 설치건입니다 상가중 2개가 인테리어 공사 중이며 1월 중 오픈을 원하고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부분완공 신청서에 층 또는 동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1개층의 일부분을 부분완공 검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1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소방대상을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분 완공 부분과 공사 진행중인 부분에 대한 화재예방 등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건축은 부분사용 승인을하고 소방은 전체완공을 할 경우 면적이 상이한데 소방 전체 완공이 가능한가요?



회신 2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 및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따라 특정소방대상을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부분 사용승인을 하기 위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일부)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으며, 소방시설공사도 건축물의 부분 사용승인 신청 부분에 따라 소방시설 부분 완공검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8조]



감리 및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자 지정 대상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18조]

관계법령

제16조(감리)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질의 1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2년 01월 06일부터 접수되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기준으로 소방감리업자 선정이 입찰로 개정되었고 입찰 규모 및 대상으로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동주택만이 아닌 공동주택 + 오피스텔 즉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위의 법안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회신 1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에 따라 2022. 1. 6.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건축물(공동주택+오피스텔)이라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승인 대상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감리업무'관련입니다. 현재 비상방송설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가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비상방송설비는 감리대상에는 포함하나, 소방감리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제1항제4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현장 사용자재는 정보통신법에 의한 시공 자재입니다)



회신 2

-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에 대한 감리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즉, 비상방송설비는 소방시설이나, 비상방송설비를 이루는 확성기, 음량조절기, 증폭기 등은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비 전원 등은 소방용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상방송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작동이 되어야 함에 따라 비상방송설비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 3

- 소방시설물 개설공사 시 기존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없을 경우 소방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 지정여부와 감리지정시 상주감리 지정 및 일반감리 지정기준? 예를 들어 대규모 공장건물이나 아파트의 전체 리모델링의 경우일 경우



회신 3

-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소방시설공사 중 개설(기존 소방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 제3호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3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공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축행위와 관계

없이 소방시설을 개설하는 경우,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영업범위, 별표2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별표3의 상주공사감리대상, 별표4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및 소방공사감리지정 대상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리모델링 등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상주공사감리 대상에 해당하며,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공사 감리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종전에는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있는 특별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착공신고를 했으나,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특별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도록 2019. 12. 10. 개정(시행 2020. 3. 11.)되었습니다.



질의 4

- 기존에 CO₂ 캐비넷형 소화설비(모듈러)를 운영중인데 이너젠 캐비넷형 소화설비(모듈러)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변경하여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소방 설계감리가 필요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4

- 기존 CO₂ 캐비넷형 소화설비(모듈러)를 이너젠 캐비넷형 소화설비(모듈러)로 교체하는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개설에 해당하며,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너젠(IG-541)은 불연성·불활성기체 혼합가스(N₂ 52%, Ar 40%, CO₂ 8%)로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18조에 따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

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5

- 이번에 소방공사와 함께 감리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소방공사 부분에 바닥 도장공사가 일부분 있었습니다. 도장공사 부분이 수량이 늘어나면서 공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소방공사 부분이 아니라 감리 부분은 중지를 통해 소방공사와 감리 준공 날짜를 맞추려고 합니다. 감리만 공사를 중지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회신 5

-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와 관계가 없는 바닥 도장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나목 3)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법하게 감리업무를하고, 감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의 6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 8항 및 9항②시도지사는 법 제26조의2 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승인한 날부터 7일이내에 다른 공사와 별도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감리업자의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2022년 01월 06일 시행)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2022년 01월 06일이전 모든 심의를 완료하고 2022년 01월 20일 사업승인 신청한 경우

나. 2021년 12월 20일에 사업승인 신청후 현재까지 심의중인 경우

위 2가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PQ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6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2항 및 부칙 <법률 제17835호, 2021. 1. 5.>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시·도지사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 1. 6.부터 최초 「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합니다. 2022. 1. 5.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이 감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제출 시점으로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규제할 뿐, 사업계획승인서 제출 후 이루어지는 심의 부분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7

- 공동주택(아파트 500세대) 감리원 배치기준 적용에 대한 문의

* 현장 개요 : 공동주택 지하1층 지상 17층, 아파트 공사현장, 연면적 10만제곱미터입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1) (나)항 행정안전부령으로 연면적3만~20만, 그리고 지하를 포함한 층수 16~40층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은 특급1인, 초급1인 배치

2) (다)항 행정안전부령으로 물분무등소화설비 및 제연설비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연면적 3만~20만미만의 아파트의 공사현장은 고급1인, 초급1인 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의 아파트현장은 (다)항을 적용하여 고급1인, 초급1인이 배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에 해당되므로 특급1인, 초급1인 배치해야 된다는데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회신 7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감리원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연면적, 층수, 설치되는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감리원 등급을 구분하여 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아파트 500세대, 지상 17층 지하1층, 연면적 10만㎡)에는 나목 2)에 해당됨에 따라 특급감리원 이상의 책임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8

- 시도지사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소방시설 공사의 감리업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나, "누리장터"등의 소방감리용역 입찰 공고를 살펴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공고-입찰-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감리나 전기감리와 같이 시도지사가 용역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사업 시행주체(재건축/재개발 조합 등)가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8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1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은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주체가 감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 9

- 전문소방감리업체에 감리인력으로 등록되어 소방감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회사에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겸업할려고 합니다. 소방감리 자격과 기계 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가진자로서, 제가 동일한 회사의 "소방감리업"의 감리원과 "기계 설비성능점검업"의 기술인력으로 동시 등록이 가능한지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만 하고 실제현장 배치되어 일은 하지 않습니다.



회신 9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각 소방시설업별(방염처리업 제외) 비고에서 겸업 관련 소방기술인력에 대한 겸직(겸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관련업과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인의 다수의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라도, 소방시설업과 다른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을 겸직(겸임) 할 수 없습니다



질의 10

- 1개 현장에 법적으로 필요한 소방감리원은 책임감리 및 보조감리가 필요합니다. 1개 현장에 대하여 A사와 B사 2개의 회사가 건축, 토목, 설비, 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감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감리를 지분에 따라 배치하려 합니다. 소방감리원 배치 시 아래 각 항목별로 적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 가. A사와 B사 중 1개 회사에서 책임감리 및 보조감리 모두 배치하여야 하는지요?
 - 나. 책임감리원은 A사 보조감리원은 B사로 배치하여도 되는지요?
 - 다. 지분에 따라 A사와 B사를 소방감리원으로 배치 시 각 회사별로 별도로 책임감리 및 보조감리를 배치하여 하는지요?

참고로 타 공정의 경우 법적 필요 감리원 인수만 맞으면 공동 수급한 회사의 구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는 각 소방서 별로 해석의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신 10

- 감리업자들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관계인과 감리 용역에 대한 도급 계약을 맺은 경우, 공동이행 방식에 대한 소방기술자 배치 업무처리 기준(소방청 소방산업과 2021. 9.)에 준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공동이행계약 이후 협의를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체결하고, 공동으로 감리원 배치 협정 및 공동으로 배치한 감리원의 업무

등에 대한 공동책임에 동의한 경우에 협정서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면 될 것이나, 「소방시설공사업법」제17조에 따른 감리자 지정신고의 주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으로서 관계인의 공동으로 감리자를 지정 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1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 1호 나목 1) 특급감리원 배치대상 관련 질의입니다.
 - 2. 상기기준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상으로만 판단했을시 아파트 용도는 타용도의 비해 난이도가 낮기에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20만이상인 경우까지로 해석이 되어지는 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신 1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중 아파트의 층수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경우에는 특급감리원(기계 및 전기분야)을 배치하여야 하고,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중 아파트의 층수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경우에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층수와 관계없이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2조]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2조]

관계법령

제21조(공사의 도급)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

제22조(하도급의 제한)

-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질의 1

- ▣ 민간공사에서 한 건의 입찰공고에 소방분리발주 사항을 명기하여, 종합건설업A사와 소방공사업B사의 도급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분리발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신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함에 따라, 발주자가 종합건설업 A사와 소방시설공사업 B사에게 각 공정별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입찰공고에 소방시설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를 구분하고, 입찰참가 자격

및 낙찰자 선정 등 세부기준 등도 분리하여 공고 및 평가 선정하여야 합니다. 즉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종합건설업 A사와 소방시설공사업 B사는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형태의 공동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질의 2

- 민간설계용역에서 한 건의 입찰공고를 통하여, 건축종합설계업체와 소방설계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소방설계는 소방설계업체가 하도급 없이 직접수행 예정) 법 제21조에서 시공만 분리발주를 명기하고 법 제22조에서 설계, 시공, 감리는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설계 및 감리용역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2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은 소방시설설계는 소방시설설계업자에게 직접 도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입찰공고를 통하여 건축분야는 건축종합설계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시설설계는 소방시설설계업체와의 분담이행방식의 도급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 3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와 관련하여 민간공사의 경우 소방기계공사, 소방전기공사 이렇게는 나눠서 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공사의 경우 소방기계 2업체, 소방전기 2업체 이렇게 총 4개 업체에 분리 발주를 해도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아파트공사 포함)



회신 3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기계분야와 소방전기분야로 구분하여 각 소방시설공사 업자에게 도급이 가능하며, 각 분야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소방

시설별로 다수의 업체가 도급 및 시공이 가능합니다.



질의 4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적용'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1. 당 사업 진행현황

- 1) 공사종류 : 민간투자사업(BTO)
- 2) 제3자 공고 : 2018.05.11
-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8.09.06
- 4) 실시협약 : 2019.12.24
- 5) 도급계약체결 : 2019.12.27
- 6) 도급계약체결(수정) : 2020.12.22

2. 공사도급계약서(2019.12.27 체결)의 경우 실시협약서(2019.12.24)를 근거로 하여 계약 금액 및 공기 등을 산정하여 발주처 3개 공동도급사가 체결하였습니다.

3. 최초 도급계약 체결 이후 폐기물처리비가 증액되고 물가상승비가 반영되어 변경도급 계약을 체결('20.12.22, 공사금액은 동일)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 본 사업에 있어서 '20.09.10 개정된 소방공사 분리발주 적용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회신 4

- 2020. 9. 10.부터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의와 같이 2019. 12. 27. 최초 도급계약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부칙<법률 제17378호, 2020. 6. 9.>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함에 따라 2020. 9. 10. 이후 변경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질의 5

- 설계업/감리업의 소방 재하도급 금지법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제22조 하도급의 제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설계/감리를 2021/6/10일 이전에 계약을 하였는데, 2021/6/10일 이후에 설계 또는 감리역무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하도급 금지로 건축주와 신규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5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2조제1항 및 부칙 <법률 제17378호, 2020. 6. 9.> 제6조(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2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에 따라 2021. 6. 10. 이전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감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설계·감리에 대한 변경계약 및 다른 설계·감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 6

- 발주처(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공고에 따라 참여하여 도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입찰조건에 소방관련 분리발주 내용이 없어서 소방설계를 포함하여 도급을 받았습니다. 도급업체는 소방시설설계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소방관련 업무를 소방시설설계업체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완료하였고 소방시설설계업체는 새움터에 소방관련 도서를 UP-LOAD 할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 새움터 소방관련 문서 중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바 이 계약서는 도급업체와 소방시설설계업업체와의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2항에는 "소방시설 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업법에 명기된 "분리도급"에는 소방시설설계업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련된 사실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6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만 분리도급을 적용 받으며, 소방시설 설계·감리는 분리도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은 소방시설 설계를 도급할 때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등은 소방시설 설계를 도급받을 수 없습니다. (발주자와 건축사 모두 처벌 됨) 즉, 소방시설설계업을 보유한 건축사는 발주자의 설계용역(건축, 소방)에 대하여 분리하지 않고 건축과 소방설계를 일괄로 도급 받을 수 있으며, 일괄 도급을 받은 건축사(소방시설설계업 보유)는 소방시설설계를 다른 설계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6호에 따른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는 발주자와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말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만 분리도급을 적용 받으며, 소방시설 설계·감리는 분리도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7

- 개인택시와 상주소방감리원의 겸직이 가능한지요?



회신 7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주공사 감리원인 경우 주말 또는 야간에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 질 경우 감리업무를 하여야 하나,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일과시간(상주감리업무) 이후 또는 주말에는 개인택시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8

- ▣ 다른이 아니라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2 4항에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소방시설 공사 분리 도급을 예외로 명시하고 있는바 한 부지내에 건물이 여러개 있는 경우 총 연면적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나 각 건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 도급을 예외로 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 8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 제4호에 따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소방 설공사의 분리도급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부지 내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개별동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개별동의 지하 주차장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로 적용됩니다.



질의 9

- ▣ 건축주가 직접하는 도급 공사인데 소방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고 싶은데 소방기계(소방 공사면허보유), 소방전기공사(소방공사 면허보유), 수신반등 기자재업체등(KFI인증 및 소방공사 면허 보유)등 3개 업체로 분리하여 발주할수 있는지요?



회신 9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 할 때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를 소방기계분야와 소방전기분야로 구분하여 각 소방시설공사업체에게 직접 도급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공사에 포함되는 자재 등을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방시설공사는 공사의 특성 등에 맞게 공사업자가 적정제품을 구입하여 시공 및 준공, 하자보수까지의 연속성 등을 감안했을 때, 발주자와 공사업자간 지급 자재에 대하여는 서로 협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10

- 소방공사 착공미대상 공사중 단순 이설(감지기 및 헤드등 교체, 철거, 증설 없음)이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인테리어 업체 또는 건축업체가 소방면허가 있는 업체로 하도를 주거나, 인테리어 업체에서 직접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10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를 하기위하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은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감지기 및 헤드 교체 등)을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인테리어업자(건축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5호와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인테리어업자(건축업자)가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11

- 당 현장은 소방시설공사를 3개사(대표사, 구성사A, 구성사B)가 공동도급하여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 질의) 현장 관리직 근로자(현장대리인, 공무, 공사, 안전관리자 등) 인원은 대표사(현장 대리인, 안전관리자), 구성사A(공무책임자), 구성사B(공사책임자) 각사가 인원을 파견하여 합동사무실을 꾸려 근무하고(급여등은 각 소속회사에서 지급)
 현장 일용직 근로자(기능인력) 인원은 대표사에서 일괄 채용 및 노임을 지급한 후 매월 말 구성사에 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하여 정산하는 방식에 대하여 공동 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내용을 명기하고 각 사합의 후 현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기와 같이 현장 운영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11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고, 질의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2

- 소방설계 및 시공 분리발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해 소방공사 및 소방설계, 감리 등은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시공을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A : 소방 제외한 건축, 토목, 전기, 설비 등 설계

B : 소방 제외한 건축, 토목, 전기, 설비 등 시공

C : 소방 설계

D : 소방 시공

발주자는 A+B / C / D 는 각각 따로 발주해야 하며, C와 D는 도급받은 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하도급 금지)

B와 D가 분리발주 된 상태에서, B와 D를 한 업체(소방시공 자격 보유)에서 수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질의응답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A+B / C / D 가 모두 분리발주 되었을 경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업체(설계 및 시공 면허 보유)가 A+B / C / D를 모두 수주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12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합니다. 즉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는 분리도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은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 공사 등을 도급

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설계업자, 감리업자, 공사업자)에게 직접 도급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소방시설 설계에 대하여 일괄 발주 시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하지 않는 건축사사무소 등에서 설계를 도급받은 경우, 발주자와 건축사사무소의 관계인은 처벌받습니다.

9

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관계법령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질의 1

- 소방설계. 감리업체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고, 설계부분의 주인력입니다. 사무실은 본사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건축기계설비 설계.감리 용역을 하고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독자적으로 건축기계 설계.감리를 하고자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위배 여부가 매우 궁금합니다. 법에 저촉된다면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나,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설계업체의 주인력으로 선임 된 소방기술자가 동시에 건축설비 설계 및 감리를 하는

부분은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질의 2

- 발주처에 도급을 받아 하도급으로 공사 진행하는 신축현장입니다.
도급(건설사) 소방기술자 선임 완료/하도급(소방업체) 소방기술자 선임 완료
질의1. 하도급 소방기술자 변경없음. 도급 소방기술자 퇴직시 바로 다른 도급 소방기술자 선임되어야 하는지?
질의2. 반대로 도급 변경없이 하도급 소방기술자 변경시에도 바로 하도급 소방기술자 선임되어야 하는지?



회신 2

- (답변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원도급업체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가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착공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 (답변 2) 답변 1과 같이, 하도급업체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가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착공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 3

- 유사질의 항목을 검색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제3항단서조항에서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소방공사업 중급 기술인이며
1. 현재 근무회사의 근로시간 : 08시~17시(주중) 토요일(격주 휴무). 일요일(매주 휴일)
2. 이중취업을 하고자 하는 업종 및 시간
1) 업종 : 건설 토목공사업.

2) 시간 : 격주 토요일 휴무일 및 일요일

이의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 3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방시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격주 토요일과 일요일 등에 건설 토목공사업 분야에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격주 토요일 등에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가 공사 현장에 배치(상주) 되어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제3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의 4

- 소방기술자 배치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소방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 현장은 건물이 나란히 붙어 있는 현장입니다. 계약상 지번은 2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의 비고 '바'항에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를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저희 현장도 상위 등급의 기술자 1명만 배치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바목에서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하나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하나의 부지 내)에 다수의 개별동별 기술자 배치기준이 상이한 경우,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소방기술자 1명을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질의와 같이 지번이 2개소로 되어 건축물별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5

- 당현장은 공동도급현장으로 A사(대표사)와 B가 공동수행중입니다. 소방착공계 제출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선임을 아래 중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1안) 소방기술자는 시공사별로 각각 선임(신고)하여야 한다

(예시: 소방기계 A사, 소방전기 B사)

2안) 소방기계, 전기 자격을 갖춘 대표사의 기술자 한사람만 선임(신고)하면 된다

1안으로 해야 하는지 2안으로 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 5

- 하나의 현장을 A, B사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한 경우, A, B사 간 공동 수급협정서의 내용에 따라 ① 공동수급체에서 특정업체 1인으로 소방기술자 배치에 협정하고, ② 공동으로 배치한 소방기술자의 기술지도에 따르고 공동책임에 동의한 경우에는 1인의 소방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나,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하는 소방시설의 ① 시공범위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고, ② 발주자가 소방기술자 공동배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업체 별로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6

- 현재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주인력으로 등재되어 있는 소방기술자를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다른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선정은 가능하다고 하나, 혹시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아니할까 궁금합니다.



회신 6

-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기술자의 겸직(겸임)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기술자의 겸직 또는 이중취업 금지 규정이 없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제27조 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나,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부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기술자가 일반적인 근무시간(09:00~18:00)에 다른 사업장(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취업을 한 경우, 이중취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본인 건물 등 취업이 전제가 되지 아니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를 할 때, 해당 법률에 따른 업무를 태만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관련 민원



질의 1

■ 1. 질의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2항 별표 2 관련 참여감리원의 경력사항 평가의 인정 범위에 관한 질의

2. 질의세부사항

해당 공사가 상주감리대상 공사일 경우 참여 감리원의 소방분야 경력, 및 참여분야 경력을 평가함에 있어 일반감리대상의 소방감리 경력 또한 기한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100%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ex) 2021.01.01~ 2021.12.31 (365일) 간

1. oo학교 감리용역(365일)

2. oo청사 감리용역(365일)

3. oo오피스텔 감리용역(365일) 3개의 일반감리 용역을 수행 하였을 때

365일x3개 현장 = 1095일로 보는 것이 아닌 여러 현장 중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365일만 경력으로 인정되고 이를 상주감리대상 공사의 참여감리원 경력평가에 포함시켜 반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 1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2 제1호 가

1) 가) (3)은 해당 근무처에서 실제로 업무(설계, 시공, 감리, 공사감독)를 수행한 경력만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별표 2 비고 제1호 라목에 따라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

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국가등은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2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에서 참여소방기술인 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소방기술인등의 평가요소(등급, 실적, 경력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로 미리 국가 등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교체시 교육점수도 동등한 점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제1항에서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소방기술인 등은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나 다만, 업체가 참여소방기술인 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소방기술인 등의 평가요소(등급, 실적, 경력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국가등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소방기술인 등을 교체하려는 경우 교육실적 점수도 해당 감리원의 교육실적 점수와 동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 3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입찰공고에 응모하면서 응모서류 중 자기평가서에 책임감리원 자격증 가점이 있는 책임감리원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에 책임감리원 자격증 가점을 받지 않았을 경우, 향후 책임감리원의 교체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로부터 책임감리원을 교체 요청하고자 할 때 책임감리원 등급, 소방분야 경력, 참여분야 경력과 동등한 조건 외에 자기평가서에 책임감리원 자격증 가점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감리원 자격증과 동일한 자격증이 있는 동등한 자로 교체하여야 하는지?

-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입찰공고에서 일반공사감리대상(비상주 감리대상)의 경우에도 책임감리원의 자격증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3)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입찰공고에서 상주공사감리대상중 특급 기술사 법정 배치 입찰공고의 경우에도 책임감리원의 자격증 가점중 기술사 가점 1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입찰공고에서 책임감리원이 소방설비기사(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 책임감리원 자격증 가점에서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씩 총 0.8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 5)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입찰공고에서 상주공사감리대상인 경우 상주공사감리 대상이라 하여 발주처가 재량으로 발주처가 공고문에서 감리원의 참여분야 경력기간 산정시 일반공사감리(비상주감리) 경력기간을 환산비율 적용없이 아예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 6)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입찰공고에서 감리원의 참여분야 경력기간 산정시 현재 각 발주처마다 재량으로 입찰공고문에 환산비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는데, 감리원의 참여분야 동등유사경력을 어느 분야를 100%로 인정하고, 어느 분야들을 얼마만큼의 환산비율로 적용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인지?
- 7)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입찰공고에서 유사용역 수행실적에서도 현재 각 발주처마다 재량으로 입찰 공고문에 환산비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감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어느 분야를 100%로 인정하고, 어느 분야들을 얼마만큼의 환산비율로 적용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인지?



회신 3

- 답변1)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제1항의 후단에 따라 업체가 참여소방기술인 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소방기술인 등의 평가요소(등급, 실적, 경력 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국가 등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답변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능력 평가기준에서 가점적용은 일반공사

감리대상의 경우에도 책임감리원의 자격증 가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3) 특급기술사 법정배치 입찰공고의 경우에도 책임감리원의 자격증 가점중 기술사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4) 소방설비기사 분야별 가점을 적용하므로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0.4점씩 총 0.8점의 가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5)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한다면 국가등은 유사한 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비율은 발주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공사감리 경력 기간을 환산비율 적용 없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6) 감리원의 참여분야 경력기간 산정시 ~~동등~~유사경력 환산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답변7) 감리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산정시 환산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V

화재안전기준

기계분야

1

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산정시 설치개수에 관한 질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1 수원]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2.1 수원

2.1.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 m^3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 4. 1. >

※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 개정이유] (2021.4.1. 일부개정)

옥내소화전의 기준개수를 화재초기에 관계인에 의해 사용되는 설비임을 감안하여 기준개수를 줄이는 등 현행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질의 1

-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개수 개정(2021.4.1.)에 따른 수원 산정시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 문의



회신 1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1.1 (기준개수 5개에서 2개로 변경)의 적용은 2021. 4. 1일부터이며 건축허가 신청시 부터 적용 됩니다. 다만, 옥내소화전 기준개수를 최대 5개에서 2개로 변경(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한 조항의 경우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공사전이나 공사중으로 완공되지 아니한 대상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변경된 기준개수 반영시 펌프의 토출량 및 방수압력, 배관 구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안으로 최초 설계도면 변경사항이라면 관할 소방서 건축민원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 가압송수장치]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2.2 가압송수장치

2.2.1.10 2.2.1.9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
- (5)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질의 1



● 옥내소화전함에 설치된 기동스위치 작동시 주펌프의 고장등으로 기동 불능시 예비펌프가 자동적으로 기동될 수 있도록 인터록 방식(두대의 펌프 중 어느하나의 펌프가 고장등으로 불능 상태일때 다른 펌프가 자동적으로 기동되는 방식)의 시스템으로 설치 되어야 하는지?



회신 1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10 단서조항에 따라 수동기동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설치하는 예비펌프는 주펌프의 압력을 보조하는 것이 아닌 주펌프의 기동불능을 보완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주펌프의 기동불능시 작동되어야 하며, 이후 주펌프와 예비펌프가 동시에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주펌프 고장시 사람이 인위적으로 펌프실 또는 수신기(감시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조작하여 옥내소화전 예비펌프가 기동 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회신 2

-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인터록(Interlock: 회로에서 어떤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게 할 때 사용) 방식으로 기동스위치 작동시 주펌프가 동작하면 예비펌프가 동작하지 아니하고, 주펌프가 동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펌프가 동작하되 주펌프가 다시 동작되지 아니하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인터록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하게 구성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는지?



회신 3

- 충압펌프가 설치되지 않은 대상물에서 누수 등으로 인해 배관 내 압력이 아지는 경우 압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펌프가 기동하게 되며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주펌프가 수시로 기동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기동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배관 내 압력 및 수온 상승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계통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충압펌프 제외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개정 2022.10.13.)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보온재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2) 2.3 배관 등]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2.3 배관 등

2.3.9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질의 1

- 소방배관(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안전기준 해설서를 보면 「옥내소화전 등 배관에 사용하는 보온재의 난연성능 확보는 재료별 KS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일정성능(예시 : 산소지수 시험 ≥ 28 , 수평연소성 시험 HF-1)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보온재의 시험기준인 KS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신 1

- 소방용 배관보온재의 난연재료 성능은 2021.02.19. 개정된 건설기준코드 보온공사 표준시방서(KCS 31 20 05) 따르도록 합니다.

관계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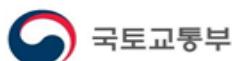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31 20 05 : 2021

보온공사

2021년 2월 19일 개정
<http://www.kcsc.re.kr>

KCS 31 20 05 표준시방서



Ⅰ. 소방시설법

Ⅲ. 산림자원보호법

Ⅳ. 초고층법

Ⅴ. 소방시설국사법

V. 화재안전기준

관계법령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재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표 2.1-4 보온재의 가스 유해성 시험 기준

| 시험방법 | 시험항목 | 기준 |
|-----------|------------------|---|
| KS F 2271 |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스유해성 |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

표 2.1-5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 시험 기준

| 시험방법 | 시험항목 | 기준 |
|-----------------|--|-----------------------------------|
| KS M ISO 9772 |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 등급 HF-1 |
| KS M ISO 4589-2 |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 산소지수(L.O.I.) ≥ 28 |
| KS F 2844 |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 CFE(kW/m ²) ≥ 10 |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른다.



성능시험배관 유량계 전후 간격에 관한 질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3 배관 등]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제6조(배관 등)제3항

2.3.3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질의 1

● 옥내소화설비 급수배관을 다른설비(위생용, 난방용 등)과 겸용 할수 있는지?



회신 1

●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옥내소화전이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습니다. 배관을 겸용할 경우 다른 설비란 소방시설에 국한하는 것으로, 소방설비 이외의 설비(위생용, 난방용 등)와 절대로 겸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성능시험배관 유량계 전후 간격에 관한 질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3 배관 등]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2.3 배관 등제6조(배관 등)제8항

2.3.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2.3.7.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

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2.3.7.2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질의 1

- 성능시험배관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 및 후단 직관부에 유량조절밸브 전후 간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신 1

- 유량측정장치의 전단 직관부와 후단 직관부의 길이는 유량측정장치의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유량계 간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단 직관부의 길이는 성능시험배관 구경의 8배 이상 후단 직관부의 길이는 성능시험배관구경의 5배 이상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질의 2

-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후단 직관부에 설치하는 유량조절밸브란 글로브밸브만 말하는 건가요 만약 다른 개폐 밸브도 가능하다면 OS&Y 개폐밸브로 설치해도 되는지?



회신 2

- 성능시험배관 관련 화재안전기준에서 밸브의 종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성능시험배관은 유량계의 전단에 개폐밸브, 후단에 유량조절밸브의 기능을 하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유량계에서 정확한 유량측정이 가능한 밸브의 종류를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밸브의 종류는 유량계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시방 등을 확인하여 설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설치 관련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2) 2.4 함 및 방수구 등]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2) 2.4 함 및 방수구 등】

2.4.1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4.1.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4.1.2 2.4.1.1에도 불구하고 2.4.2.1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않은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2.4.1.2.1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할 것

2.4.1.2.2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2.4.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4.2.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2.4.2.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4.2.3 호스는 구경 40 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mm)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2.4.2.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2.4.3 표시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4.3.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2.4.3.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질의 1

- 아파트 내의 하나의 근생건물 내에 설치 되는 옥내소화전함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때 각구획된 실마다 옥내소화전함을 각각 (8개)설치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평거리로 계산하여 2개 를 설치해도 되는지?



회신 1

- 옥내소화전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수평거리: 소화전 포용거리는 수평거리이므로 칸막이나 벽 설치여부에 불구하고 설계시 평면상에서 반경 25m 이내에 전 건물이 포용되도록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대상물 각 층별로 칸막이나 벽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옥내소화전 방수구 수평거리 25m 이하로 포용 될 수 있게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전함 내 호스 수량은 무조건 2개 해야 되는지?



회신 2

-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전함 내 호스수량은 수평거리 기준인 관계로 칸막이나 벽 등으로 인하여 소화전으로부터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까지의 호스 1개로 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호스를 2개 이상 접속하여 유효한 방수가 되도록 하여합니다. 따라서 옥내소화전의 경우는 함내 설치하는 호수의 수량을 규정하지 않고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즉, 이는 소화전함의 위치에 따라 수평거리 25m 이내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모든 부분에 살수가 될 수 있는 적정한 호스 수량을 소화전함별로 판단하여 보유하도록 한 것입니다.

**질의 3**

- 공동주택의 복층형 구조일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에만 설치하면되는지 공장에도 복층의 구조일 경우에도 해당층의 출입구근처등에 반경 기준으로 설치 하면 되는지?

**회신 3**

-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에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어야 하며,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공장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질의 4**

-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 내용에서 자체소방대 구성과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 설치유무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회신 4**

- 옥내소화전함에는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위치표시등과 펌프가 작동시 작동중임을 알려주는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시동표시등은 함의 상부나 그 근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체소방대(전문적인 화재진압요원 및 소방펌프차량 보유)의 경우 소방대와 동일하게 본격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초기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옥내소화전 함 사용요령 표지판 설치에 관한 질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102) 2.4 함 및 방수구 등]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102)】2.4 함 및 방수구 등

2.4.5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2. 3. 4.〉

※ [제정·개정이유]

옥내소화전 함에 사용요령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 실제 사용 시 문을 개방하면 표지판을 볼 수 없어 문 개방상태에서도 표지판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안 제7조)



질의 1

-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0. 12. 27.〉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국어라 함은 한글외 다른 외국어면 가능한건지요? 예)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등.... 어떤 외국어인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아 질의합니다



회신 1

- 옥내소화전 함에 사용요령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 실제 사용 시 문을 개방하면 표지판을 볼 수 없어 문 개방상태에서도 표지판 확인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4.〉
- 관련 화재안전기준의 '외국어'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사용하여 유사시 인지할 수 있는 영어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치 장소 및 지역, 대상물을 이용하는 외국인의 분포에 따라 추가적인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 설치에 관한 질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 제어반]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2.6 제어반

2.6.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6.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6.3.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6.3.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2.6.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서비스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6.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m^2 미만의 불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2.6.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2.6.3.3.3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2.6.3.3.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4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

2.6.3.3.5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2.6.3.4 2.6.3.3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



질의 1

- 공장, 발전소등에서 설비를 집중제어 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 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 전용실안에 설치하지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용실 설치기준은 다른부분과 방화구획을 할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장이나 발전소등의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할경우 감시제어반 전용실설치 기준에 따를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석해도 되는건지?



회신 1

-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전용실이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해석 됩니다.
다만, 실의 명칭만 중앙제어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미에 부합되는 중앙 제어실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스프링클러설비



충압펌프 양정 및 유량에 관한 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2 가압송수장치]

관계법령

2.2.1.14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2.2.1.14.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일제개방밸브의 경우는 그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2.2.1.14.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질의 1

- 스프링클러헤드 충압펌프 유량을 60LPM이 아닌 80LPM의 충압펌프를 설치해도 주펌프가동에 지장이 없는지?



회신 1

- 충압펌프는 밸브 및 부속장치 등에서 미소하게 압력이 누설될 경우 압력을 보충하여 배관내 항상 일정한 충압상태를 유지하여 주펌프가 기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충압펌프의 목적입니다.

충압펌프 토출량의 경우 구 기준에는 토출량을 무조건 60LPM 이하로 하였으나,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1항제13호나목과 같이 현기준은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소방설비에서 충압펌프가 적정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의 사항은 설계자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소화수조 펌프 흡입배관 흡입구 위치에 관한 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 배관]

관계법령

2.5.4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4.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5.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2.5.9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5.9.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라 2.2.1.10 및 2.2.1.11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9.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9.2.1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2.5.9.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9.3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2.7.3의 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질의 1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수조로 부터 펌프흡수구의 위치를 측면에서 분기하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조의 하부로 부터 흡입구(흡수구) 배관을 설치하여도 되는지?



회신 1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에는 흡수구의 위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수조의 하부로부터 흡입구(흡수구) 배관을 설치하면 흡입배관의 꺽임(굴곡)으로 인한 흡입관의 손실수두가 크게 되어 공동현상(Cavitation) 발생 우려가 있고, 이물질의 유입이 용이하여 펌프(임펠러)의 손상 및 수계소화 설비의 배관에 이물질 등이 침착되어 관창 및 헤드 등에서 원활한 방수를 저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

- 유수검지장치실 내부 습식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서 분기한 시험밸브에 연결되는 배수배관을 신축배관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 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배관과 배관이음쇠 규정 및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신축배관은 가지배관과 헤드를 연결하는 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장치 배수배관을 신축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 설치 관한 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 배관]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103)】2.5 배관

2.5.12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 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2.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유수검지장치 2차 측 설비의 내용적이 2,840 L를 초과하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는 시험장치 개폐밸브를

완전 개방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한다.

2.5.12.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mm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2.5.12.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질의 1

- 착공신고 후 시공중인 현장에 2021.1.29. 개정된 내용에 의거하여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가 아닌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시험장치를 연결하는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1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시행 2021. 1. 29.] [소방청 고시 제2021-12호, 2021. 1. 29., 일부개정] 부칙 <제2021-12호, 2021. 1. 29.>에는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의 적용은 2021. 1. 29일부터 건축허가 신청시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에게 이익이 되게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 법령의 적용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면 "신법 우선원칙" 및 "대법원의 다수 판례"에 따라 개정 고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위치(제8조제12항제1호, 제2호) 관련 조항은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공사전이나 공사중인 대상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 송수구의 접속에 관한 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3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3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2.3.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유수검지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3.1.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text{ m}^2$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text{ m}^2$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도록 해야 한다.

2.3.1.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3.1.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2.3.1.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의 개구부로서 그 개구부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2.3.1.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

2.3.1.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2.3.1.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질의 1

- 폐쇄형스프링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 설정관련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 범위에 포함된 영역에 대한 질의



회신 1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방호구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의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스프링 클러설비의 소화범위란 결국 헤드를 설치하여 살수되는 장소이므로 하나의 유수검지장치별로 헤드를 설치하여 살수가 유효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방호 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드를 설치하지 않는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으로 산정하여 방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 설치장소 위치에 따른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2

-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내에 설치한다는 것은 전용으로 된 별도의 실에 설치한다는 뜻이며, 보호용 철망등으로 구획한다는 것은 노출된 장소에 철망 등으로 펜스를 설치하여 외부의 위해(危害)나 충격 등으로부터 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조실이나 보일러실 등과 같은 기계실의 경우는 기계실 내부에 노출상태로 설치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 경우는 펜스나 전용실 등 별도의 구획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 경우 유수검지장치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지를 기계실 출입문 밖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질의 3

-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 송수구의 접속을 유수검지장치 1차측 또는 2차측 어느

쪽에 연결해야 하는지?



회신 3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송수구에서 송수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 자체의 불량으로 인하여 헤드쪽으로는 송수 불능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수검지장치에서 접속시 2차측(헤드쪽)에 접속하는 것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규정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의미는 송수구의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지나지 아니하여도 관계없다는 선택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반드시 유수검지장치를 지나지 않게 하라는 강제사항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능시험배관 직관부 배관 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 배관]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5 배관

2.5.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2.5.6.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 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2.5.6.2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질의 1

- 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배관 설치기준에서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 함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회신 1

- 성능시험배관은 유량계를 통과하는 정확한 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난류가 아닌 층류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체가 안정적인 층류(유체의 각 부분들이 상호 얹힘 없이 질서정연하고 규칙적으로 흐르는 상태)를 형성하기 위하여 유량계의 전후에 충분한 길이의 직관부에 설치여야 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 배수밸브 설치에 관한 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 배관]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5 배관

- 2.5.17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2.5.17.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2.5.17.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질의 1

- 습식스프링클러설비에서 유수검지장치의 1차측인 상시 소화수가 충수되어 있는 배관도 포함하여 배수밸브를 설치하는 기준인지?



회신 1

-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습식·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가지관

등이 보를 관통하기 위해 보 아래쪽으로 격어서 지나갈 경우 보 하부의 구간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및 유지관리를 위해 배수할 경우 배수배관을 통하여 배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에는 자동배수밸브나 수동식 볼밸브를 설치하여 배수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 헤드 표시온도에 관한 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 헤드]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7 헤드

2.7.6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 2.7.6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높이가 4 m 이상인 공장 및 창고(액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C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표 2.7.6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른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표시온도

|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 표시온도 |
|--------------------|---------------------|
| 39 °C 미만 | 79 °C 미만 |
| 39 °C 이상 64 °C 미만 | 79 °C 이상 121 °C 미만 |
| 64 °C 이상 106 °C 미만 | 121 °C 이상 162 °C 미만 |
| 106 °C 이상 | 162 °C 이상 |



질의 1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온도에 따라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한다 조항으로 보면 장소와 상관없이 온도에 맞는 헤드만 설치해도 되는지요 ?



회신 1

- 표시온도(Temperature rating)란 폐쇄형 헤드에서 감열체가 작동하는 온도로서 제조시 헤드에 표시되어 있으며, 최고주위온도란 연중(年中) 헤드가

설치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가장 높은 온도를 최고주위온도라 합니다.

- 따라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계 시 건축물의 구조·사용 환경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를 반영하여 헤드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에 따른 표시온도 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

- 현재 건설중인 물류창고의 천정높이가 6m, 10m입니다.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에서 높이 4m이상인 공장에서는 121°C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회신 2

- 공장 및 창고 등의 물품을 적재하는 장소에서 최고 주의온도와 관계없이 높은 표시온도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도록 한 이유는, 낮은 표시온도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거나 조기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발생지역 외의 장소까지 광범위하게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되어 화재로 인한 피해보다 오히려 물로 인한 피해(수손피해)가 커지며 기준개수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 개방으로 펌프의 설계유량보다 많은 유량이 방사되어 설계 압력보다 낮은 방사압력으로 살수되어 살수밀도가 낮아져 소화성능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재발생지역에 국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가 살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상황에 따라 높은 표시온도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선택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재량사항에 해당됩니다.

다만, 최근 물류창고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유사시 (화재시) 즉각적인 소방시설 작동이 될 수 있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7.6 헤드 표에 의한 설치를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스프링클러설비 비상전원 설치장소에 관한 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9 전원]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9 전원

2.9.3.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질의 1

- 비상발전기실 천장에 경유하는 덕트가 있는 경우 비상발전기실의 천장을 경유하여도 방화구획선상에 해당되는 위치에 방화댐퍼를 설치하면 덕트설치가 적법한가요? 아니면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가 아니므로 안된다가 맞나요?



회신 1

- 비상발전기실 천장에 설치된 덕트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안되는 것에 해당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비상발전기실 벽(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제2항제3호에 맞는 방화댐퍼(F.D)를 방화구획 관통부 덕트에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프링클러헤드 방풍실 헤드 설치(제외)에 관한 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 헤드의 설치제외]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12 헤드의 설치제외

2.12.1.12 불연재료로 된 특별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2.12.1.12.1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12.1.12.2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12.1.12.3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2.12.1.12.4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질의 1

- 우편함은 비가연성 물질이지만 추후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의 〈우편물〉 까지 고려하여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에는 헤드 설치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첨부 된 철제형태로 우편물함이 설치 된 방풍실은 스프링클러 헤드 제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방풍실의 내장재 및 구조적인 사항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방풍실의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2

-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에 해당하는 경우 스프링클러헤드를 제외 할 수 있습니다. 방풍실의 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로 정한 사항입니다.



스프링클러헤드 아파트의 대피공간 헤드 설치(제외)에 관한 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 헤드의 설치제외]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12 헤드의 설치제외

2.12.1.14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질의 1**

- 현재 전층 세대내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4층 이상부터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화재안전기준에는 대피공간 헤드 설치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층의 대피공간은 대피공간이 아니니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1**

-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은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제외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1 ~ 3층에도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한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제외 장소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산정에 관한 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 배관]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5 배관

2.5.3.3 배관의 구경은 2.2.1.10 및 2.2.1.11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표 2.5.3.3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m/s ,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 m/s 를 초과할 수 없다.

표 2.5.3.3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단위: mm)

| 급수관의 구경 구분 | 25 | 32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50 |
|------------------|----|----|----|----|----|----|----|-----|-----|--------|
| 가 | 2 | 3 | 5 | 10 | 30 | 60 | 80 | 100 | 160 | 161 이상 |
| 나 | 2 | 4 | 7 | 15 | 30 | 60 | 65 | 100 | 160 | 161 이상 |
| 다 | 1 | 2 | 5 | 8 | 15 | 27 | 40 | 55 | 90 | 91 이상 |

[비고]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 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 \text{ m}^2$ 를 초과하지 않을 것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mm 로 할 경우에는 수리 계산을 통하여 2.5.3.3의 단서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 것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 2.7.3.1의 경우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를 것
-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질의 1

- 수리계산으로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mm 산정 관련 문의



회신 1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mm로 적용하려면 배관내 유속의 적정여부에 대해 수리계산을 하여 이를 검증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유속이란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m/sec,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se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의 2

- 반자가 설치되지 않는 폐쇄형 상향식SP헤드 설치 장소에서 덕트 등의 장애물로 인한 살수장애시 하나의 가지관에 그림과 같이 상하향식헤드를 설치하여 상향식은 덕트 상부에 하향식은 덕트 하부로 향하도록 SP헤드를 설치하며, NFSC 103 [별표 1] “나”란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회신 2

- 반자가 없이 살수장애 문제로 인하여 헤드를 상·하형으로 병설(併設)하는 경우에는 “가”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반자가 설치되어 있어 반자를 경계로 하여 반자내부와 반자하부에 상하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상하형헤드가 동시에 개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우선적으로 반자 하부의 헤드가 동작하게 되므로 반자하부의 헤드만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나”란을 적용)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상향식헤드 설치에 관한 질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103B) 2.7 헤드]

관계법령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103B)】2.7 헤드

2.7.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7.1.1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m^2 이상 9.3m^2 이하로 할 것

2.7.1.2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 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 m 이하로 할 것

2.7.1.3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mm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2.7.1.4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mm 이상 355mm 이하일 것

2.7.1.5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 mm 이상 152mm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 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mm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2.7.1.6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mm 이상일 것

2.7.1.7 헤드의 작동온도는 74°C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C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 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질의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상향식 헤드에서 천장이나 배관과의 거리 관련하여 설치 높이에 대한 질의



회신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서 헤드에서 천장이나 배관과의 거리 규정은, 헤드 아래 연속한 장애물에서 상향식헤드의 반사판(Deflector)이 배관 위쪽으로 178mm 이상 떨어져서 배치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헤드 아래쪽의 살수장애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3

피난기구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경보장치 설치 기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관계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 적응성 및 설치개수 등】

2.1.3.9.8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질의 1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대피실 문이 개방될때와 피난기구 작동 시 모두 작동되어야 하는지 ?



회신 1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2.1.3.9.8 규정에 따라 ①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는 경우 ② 피난기구 작동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어야 하고, ①번과 ②번은 '또는'의 개념으로 둘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현장 여건에 따라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입원실이 있는 의원의 입원실이 없는 층의 피난기구 설치 기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관계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1 피난기구는 표 2.1.1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표 2.1.1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 설치장소별 구분

2.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집골원·조산원



질의 1

- 7층, 8층, 9층을 의원으로 사용시 8층만 입원실이 있는 경우 8층에만 구조대 설치가 가능한지 ?



회신 1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표 2.1.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등에는 3층 이상에서 10층 이하까지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구조대 등)를 설치하여야 하고 표 2.1.1은 소방대상물의 ‘설치 층’이 아닌 ‘설치 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을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입원실이 있는 의원의 경우 해당 장소(용도) 전체에 대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4

제연설비



전실제연설비 급기 및 배기 수직풍도 사이 내화구조 구획 여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관계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1.1.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2.15.1.1 수직풍도는 2.11.1.1 및 2.11.1.2의 기준을 준용할 것



질의 1

- 하나의 공간 내의 전실제연설비의 급기 및 배기 풍도 사이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하는지 ?



회신 1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하 NFTC 501A) 2.11.1.1 및 2.15.1.1 규정에 의해 급기 및 배출 풍도 모두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 또한, NFTC 501A 2.10.2.1 규정에 따라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수직급기풍도와 수직배출풍도를 하나의 풍도로 겸용할 수 없어 두 풍도사이 역시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5

가스계소화설비



전반자와 천장 사이 및 Access Floor 하부 소화약제량 계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관계법령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4 소화약제량의 산정

2.4.1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4.1.1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다음 식 (2.4.1.1)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2.4.1.2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다음 식 (2.4.1.2)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2.4.1.3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실험수치를 적용한다. 이 경우 설계농도는 소화농도(%)에 안전계수(A·C급 화재 1.2, B급 화재 1.3)를 곱한 값으로 할 것



질의 1



반자와 천장 사이 및 Access Floor 하부 부분 소화약제량을 추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신 1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소화약제량을 산정합니다.
- 따라서, 반자 하부만 설치하는 경우 반자의 구조가 기밀성이 부족하거나 순간 과압에 의한 파손 등으로 천장과 반자사이로 소화약제의 누출될 우려가 있다면 약제량 산정시 반자내 체적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방호구역 내 Access Floor 하부에는 각종 전선 등이 조밀하게 설치되어 있어 화재우려가 높고 가스계소화설비 설치 목적이 전기관련 설비의 보호에 있으므로 Access Floor 하부로 소화약제 침투가 안되는 경우에는 분사헤드를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벽돌조 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여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관계법령**【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6조】****제6조(배관)제3항**

가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 1**

- 벽돌조 벽을 관통하는 배관에 대하여 벽돌조를 ‘부서지기 쉬운 부재’로 보아 이격거리 및 지진분리이음 설치 기준 적용을 아니할 수 있는지 ?

**회신 1**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제6조(배관)제3항의 “부서지기 쉬운 부재”는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받아 부서지는 부재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벽돌조 벽 또는 기타 벽체를 구성하는 건축자재가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받아 ‘쉽게 부서지기 쉬운 부재’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관통 배관에 대한 이격거리 유지 또는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벽소화전함 내진설계에 따른 설치 기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관계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6조】

제16조(소화전함) 소화전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진 시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전함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소화전함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질의 1

- 내진설계기준 제16조제3호 단서의 “소화전함의 하중”에 호스 등도 포함되는지?



회신 1

- 내진설계기준 제16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지진하중은 소화전함의 전체 하중에 가동중량을 고려하여 구조계산이 되어야 하며, 소화전함의 격내품(호스, 밸브 등) 또한 연결송수관설비 겸용 등의 이유로 소화전함 별로 상이하게 설치되어 있어 지진하중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내진설계기준 제16조제3호 단서 조항의 “소화전함”은 격내품(호스, 밸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

- 소화전함을 조적(벽돌)벽에 매립하여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 2

- 내진설계기준 제16조제2호에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구조계산이 포함된 구조부재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함이 원칙이므로 벽돌 등 비내력벽에 매립하는 경우 내력 바닥이나 벽체의 구조체에 고정하고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비내력벽의 붕괴 등으로 소화전함이 파손이나 변형이 되지 않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소화수조 연결배관에 설치하는 가요성이음장치의 종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관계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3조】

제3조(정의)제9호

가요성이음장치란 지진 시 수조 또는 가압송수장치 와 배관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상대변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변위를 허용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말한다.



질의 1

- 가요성이음장치의 ‘플렉시블 조인트 등’에 유동식 커플링이 포함되는지?



회신 1

- 내진설계기준 제3조(정의)제9호에 “가요성이음장치란 지진 시 수조 또는 가압송수장치와 배관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상대변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변위를 허용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플렉시블 조인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제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관련 제품군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장 대표적인 플렉시블 조인트를 언급하였을 뿐, 상기 기준에서 정한 성능이 확인되는 경우 가요성 이음

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유동식 커플링이 가요성이음장치로의 역할(수조와 소화 배관과의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상대변위를 상쇄할 수 있는)을 하는 경우에는 가요성이음장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격자방식(Grid System) 가지배관 고정장치 설치 기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관계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3조】

제13조(가지배관 고정장치 및 헤드)

- 가지배관의 고정장치는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지배관에는 별표 3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이내에 설치한다.
 - 환봉타입 고정장치의 세장비는 4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양쪽 방향으로 두 개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세장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정장치는 수직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각도에서 최소 1340N 이상의 인장 및 압축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와이어는 1960N 이상의 인장하중을 견디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한다.
 -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지배관 고정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부재와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75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질의 1**

- ▣ 격자방식(Grid System)의 가지배관 고정장치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회신 1**

- 트리방식의 구조인 경우 가지배관 말단이 자유단으로 지진동으로 인해 흔들림이 발생하나, 그리드 방식의 경우 배관 양끝단으로 수평주행배관에 연결되어 지진동으로 인한 흔들림에 대응 할 수 있어 가지배관 말단의 고정장치는 설치 제외가 가능합니다.

**질의 2**

- ▣ 격자방식(Grid System)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하중 분포는 어떻게 하는지?

**회신 2**

- 교차배관에 설치되는 흔들림장비 버침대의 가지배관 하중 분포는 첨부한 그림의 가지배관의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양쪽 교차배관의 버팀대에 하중이 분포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NFPA 13(2010년판) 453페이지 하단 '그림 A.9.3.5.6(e) 버팀대의 하중 분포의 예시' 참조]

**포소화설비의 내진 적용 여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관계법령**【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8조】****제18조(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등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 1

-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포소화설비도 소방시설의 내진기준을 적용하는지?



회신 1

-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제2항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에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며,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8조에 따라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제어반, 기동장치, 비상전원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합니다
- 따라서, 포소화전설비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기분야

1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부수신기 제어 가능 여부 문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2.2 수신기]



질의 1

- 현재 주수신기 설치장소에는 야간 당직근무자가 상주하지 않아 당직근무자가 상주하는 장소에 부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이 부수신기에 소방 펌프 등을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기능을 연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수신기는 해당 기능이 사용할 수 있는 형식승인제품 사용)

즉, 주/부수신기에서 모두 작동 및 작동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있어도 위법 사항이 아닌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회신 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TC203) 2.2.3.1에 따라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귀하 대상물의 주 수신기는 복합형 수신기로서 제어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부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근무자가 상주하는 경우 수신기, 감시제어반 설치기준(ex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2.10.3)을 만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광케이블 사용 시공방법 문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 배선]

관계법령

2.8 배선

2.8.1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8.1.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른 것

2.8.1.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8.1.2.1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실드선 등을 사용해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이 있는 경우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8.1.2.2 2.8.1.2.1 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질의 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TC203)」2.8.1.2.1에 따라 내열성이 있는 광케이블을 설치할 경우, 케이블공사(노출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



회신 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TC203)」2.8.1.2.1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실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에 따라 광케이블이 내화(내열)성능 있는 경우 케이블공사방법에 따라 설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경보방식 개정에 따른 소급적용 여부 문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 2.5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2.5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2.5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2.5.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5.1.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2.5.1.2.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2.5.1.2.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5.1.2.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질의 1

- 금년 5월에 변경된 우선경보방식 대상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9개월 후에 시행

되기에 미리 준비하고자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기준 층수가 8층이며 연면적 3000m²이상인 소방대상물로서 기준에 우선경보방식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는데 경보방식 개정이 적용된 후에는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일제경보방식으로 다시 변경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경보방식에 관련된 기준은 소급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예외 없이 일제경보방식으로 변경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외의 기준이 있어 사용승인 혹은 소방준공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여쭈어봅니다.



회신 1

- 답변 : 우선경보방식 개정사항은 소급적용이 아니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1.3.2에 따라 9개월이 경과한 날(23.02.10)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반자속 감지기 설치 기준 문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 감지기]



질의 1

- 반자 속에 감지기 배치시, 씰링하부(실 내부) 감지기 경계구역과 반자 속 감지기의 경계구역을 하나로 묶어 NFTC203의 경계구역을 적용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 위 1번사항처럼 실 내부 감지기와 반자 속 감지기의 경계구역을 하나로 묶었을때, 층의 건축 면적 1개로 산정할지, 실 면적+반자속 면적으로 합계 면적으로 산정해야 될지 질문드립니다.



회신 1

- 소화설비 기동용 감지기가 아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로 확인되며, 천장과 반자 속 감지기 설치 및 면적산정에 관하여 NFTC203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한 감지를 위하여 반자속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자의 영역으로 판단되며, 귀하께서 참고하신 NFTC203 해설서 일본의 경우에는 실의 바닥면적과 반자 속 면적을 합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반자속 공간의 구조에 따라서 반자 속 면적으로 산정하여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지기 설치제외 기준 문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 2.4.5]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TC 203)] 2.4.5

2.4.5 다음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4.5.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다만, 2.4.1 단서의 감지기로서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4.5.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2.4.5.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2.4.5.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4.5.5 목욕실 ·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4.5.6 파이프데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m² 이하인 것

2.4.5.7 먼지 ·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2.4.5.8 프레스공장 · 주조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질의 1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5.4 내용 중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이 없어서 해석의 차이가 사람마다 다른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온도와 저온도의 최소 범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법 조항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면 통상적으로라도 몇도인지 정도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온도 : -1도 이하부터 고온도 : 60도 이상부터



회신 1

- 답변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

2.4.5.4 따라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제11조(주위온도시험)에 따라 고온도 및 저온도의 기준 영하(-10 ± 2)°C에서 영상(50 ± 2)°C을 고려하여 감지기 설치 제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2

- 실내수영장 부분에 감지기 제외 조항이 적용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물이 있는 수영장 상부에 감지기가 제외가 된다면 사람이 이동을 하기 위한 공간(수영장 사이드 부분) 천정에는 감지기를 적용해야 하나요?
1.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적용되는 대상물에 실내수영장 내 감지기 제외조항이 적용이 가능 한지?
 2. 실내수영장 물이 있는 상부에만 감지기가 제외가 가능하다면 물이 없는(사람이 이동 하기 위한 통로)부분에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2

- 답변 : 수영장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제2호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장소로, 사람이 이동하기 위한 통로 또한 수영장 전용으로 사용한다면, 「자동화재탐지 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 2.4.5.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따라 "물이 있는 수영장 부분(통로 포함)"은 감지기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화장실 시각경보장치 설치 여부 문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 2.5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관련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2.5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2.5.2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2.1 복도 · 통로 ·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5.2.2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2.5.2.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5.2.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3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 1



장애인화장실내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화재안전기준이나 장애인관련법령을 봐도 장애인화장실내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라는 관련법령을 찾지 못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 1



답변 : 시각경보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 2.5.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화재

안전기준에는 시각경보장치 설치장소로 판단하지 않으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대상시설일 경우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비상콘센트설비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 문의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2.1 전원 및 콘센트 등]

관계법령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2.1 전원 및 콘센트 등

2.1.1.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m^2 이상이거나 지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m^2 이상인 특별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 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질의 1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504) 2.1 전원 및 콘센트 등 중 특별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UPS(무정전전원장치)를 전기저장장치로 봐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자가발전설비 등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화신 1

- 전기저장장치란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607) 1.7.1.1에서 규정하고 있어, UPS(무정전전원장치)는 축전지설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축전지설비를 비상 전원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설치 제외 장소 문의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2.2 비상조명등의 제외]

관계법령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2.2 비상조명등의 제외

- 2.2.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2.1.1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 m 이내인 부분
 - 2.2.1.2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 2.2.2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나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질의 1



공동주택의 비상조명등 설치 여부에 관해 질의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도, 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는 설치하고 공동주택의 거실에만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1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2.2.1.2 공동주택의 거실로 한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거실 외의 장소(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아파트는 2004.5.2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세대내 기존에 비상조명등과 스피커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세대 인테리어 공사시 비상조명등을 철거하는 경우가 많아 문의드립니다.

니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2 비상조명등의 제외 "공동주택(개정 2012.8.20.)"이 포함되어 있는바, 기존에 설치된 비상조명등(2004.5.29.설치)에 대하여 제5조가 소급적용되는지? 세대에서 임의철거 하고 재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2

- 소방시설 설치는 대상물의 건축허가접수 당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조항이 추후 개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완화된 경우라면 시행일 이전 대상물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귀하 대상물의 공동주택의 세대 내 거실은 비상조명등 제외 대상으로 재설치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조명등 점등 시점 문의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1.7 용어의 정의]

관계법령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TC 304)」 1.7 용어의 정의

-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7.1.1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 1.7.1.2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



질의 1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 1.7에 따르면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조명등은 ①화재발생 시에 점등되는 것이 맞는지 ②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이 될 경우에만 점등이 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회신 1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4)」1.7.1에 따라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자동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및 2.1.1.4.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수 있도록 할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상조명등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정전시 및 상용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점등되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대상 문의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1.7 용어의 정의]

관계법령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1.7 용어의 정의

-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7.1.1 "전기저장장치"란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계통에 저장했다가 전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배터리(이차전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배터리 관리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발전·송 배전·일반 건축물에서 목적에 따라 단계별 저장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질의 1

- 상기 법령에 적용되는 전기저장시설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시설의 전기저장시설 흔히 ESS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장에서 비상전원으로 사용되는 UPS의 BATTERY 저장장치도 해당이 되는 것 인지요?? 만약 UPS BATTERY도 적용이 된다면 용량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3호 발전시설 중 마목의 전기저장시설은 "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저장장치는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1.7.1.1에 따라 구성(배터리,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전에 대비하여 설치되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는 전기저장장치에 포함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 건축 허가용 개요에 용도는 묘지 관련 시설로만 되어 있고 발전시설은 용도에 없습니다.
질의 1) 소방서 동의서등을 작성시 건축용도를 따라가는데 건축용도에 발전시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2) 건축용도는 발전시설에 해당 없더라도 ESS실이 있다면 건축과는 별개로 발전 시설로 보아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질의 3) ESS을 운용하는 전력변환장치(PCS) 등이 설치된 별개실 또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2

-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3호 발전시설 중 마목의 전기저장시설은 "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저장장치는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1.7.1.1에 따라 구성(배터리,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주용도(묘지관련시설)와 상관없이 상기 기준에 해당할 경우 전기저장시설로 판단합니다.
3) 전력변환장치(PCS)는 ESS를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PCS실 역시 NFTC 607을 준수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저장시설 배출설비 기준 문의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2.6 배출설비]

관계법령

2.6.1 배출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6.1.1 배풍기 · 배출덕트 ·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할 것

2.6.1.2 바닥면적 1 m^2 에 시간당 18 m^3 이상의 용량을 배출할 것

2.6.1.3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할 것

2.6.1.4 옥외와 면하는 벽체에 설치



질의 1

문의 1. 평상시는 다른 전기실 배기설비로 사용하고 화재시는 배터리실 배출설비로 사용 가능하나요? 단. 화재시 전기실 닉트는 폐쇄함

문의 2. 지하1층의 드라이에어(DA) 공간에 배출하고 옥외로 배출하여도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6.1 배출설비에 적합하나요?



회신 1

- 1) 화재안전기술기준(NFTC607) 1.7.1.4 “배터리실”이란 전기저장장치 중 배터리를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구획된 실로 배출설비는 배터리실 화재시 실내에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폭발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한 부분으로 별도의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2) 화재안전기술기준(NFTC607) 2.6.1.4 “옥외와 면하는 벽체에 설치”로 보아 지하1층 공간이 아닌 옥외와 면하는 벽체에 설치하여 배출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소방시설 배선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내열전선(FR-3) 사용 가능 여부 문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표 2.7.2 (2)내열배선]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표 2.7.2

(2) 내열배선<2022.3.4.> 개정

내화전선, 내열전선(삭제)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 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간선배선을 기존에는 FR3 배선을 사용하여 케이블공사 시공 방법으로 시공하였으나 22년 3월 4일 개정으로 인해 FR3케이블이 케이블공사시공방법에서 삭제됨으로 인해 FR3케이블을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에 수납하여 시공할경우 내열전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표 2.7.2의 개정에 따라 공사방법의 종류와 관계없이 내열전선(FR-3) 사용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

- 공사 진행 중인 현장인데 FR3를 사용해도 되나요? (소방법이 개정 됐다고 하여 혼란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찾아보니 22년 6월 전에 설계된 현장은 사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서 여쭙니다.



회신 2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표 2.7.2 개정(22.03.04) 및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개정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22.06.05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내열전선(FR3)은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단락보호조치 문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 수신기]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TC 203) 2.2 수신기

2.2 수신기

2.2.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2.1.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2.1.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 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m^2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3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3.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2.3.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렇지 않다.

2.2.3.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2.3.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2.3.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2.3.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 2.2.3.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 2.2.3.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2.2.3.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질의 1**

- 단선단락 자동검출형 중계기를 사용하는 R형 시스템에는 단락보호 기능이 포함되어 별도의 지구음향장치 단락보호장치를 설치 아니할 수 있는지?
P형 시스템은 자동검출형 중계기를 미사용함으로 별도의 지구음향장치 단락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 2.2 수신기 2.2.3.9에 따라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락보호기능이 있는 중계기를 사용하여 하나의 층의 단선에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영향이 없다면, 별도 지구음향장치 단락보호장치는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P형, R형 수신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화재안전기준 개정 취지에 따라 유효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선통신보조설비 FM/DMB 신호 겸용 사용 가능 여부 문의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2.1]

관계법령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505)」2.2 누설동축케이블 등

2.2 누설동축케이블 등

2.2.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1.1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 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2.2.1.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2.2.1.3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 등의 환경 조건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2.2.1.4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 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 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1.5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2.2.1.6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1.7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2.2.2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 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질의 1



무선통신보조설비 관련 현재 안테나 방식이 적용되어 있으며 FM(라디오), DMB 무선

통신 보조설비 동축케이블과 겸용하여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 1

- 답변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505)」 2.2.1.1에 따라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소방통신주파수(440~450MHz)와 문의하신 FM라디오 (88~108MHz)/T-DMB방송(174~216MHz) 신호 주파수를 겸용하고자 할 때는 전파 혼간섭이 없고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통신에 지장이 없다면 사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 아파트나 오피스텔 및 빌딩건물에도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할 때 터널 및 지하차도 설치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난연성 광케이블 및 UTP/STP CABLE을 케이블을 겸용하여 설치해도 되는지?



회신 2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505)」 2.2.1.3에 따라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연성 광케이블 및 UTP/STP CABLE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선통신보조설비 옥외안테나 설치기준 문의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3]

관계법령

2.3 옥외안테나

2.3.1 옥외안테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3.1.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 2.3.1.2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2.3.1.3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3.1.4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질의 1

- ▣ 아파트 출입구가 2개 있는데, 두 출입구 중 한 곳에 옥외안테나를 설치하여 나머지 출입구에서 무전이 된다면 1곳에만 설치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 1

- ▣ 아파트 출입구 한곳에 설치시 다른 출입구에서도 통신이 원활하다면 한 곳만 설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기준 문의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505) 2.2 누설동축케이블 등]

관계법령

- 2.2.3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2.3.1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포함)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 2.2.3.2 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방재실 또는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와 방재실 간의 상호통신이 가능할 것



질의 1

- ▣ 1. 해당 내용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대상인 지상30층 이상 건물일경우, 지상16층 이상부터 적용하면 되는걸까요? 지상 1층~지상15층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까요?

2. 지상30층 미만 건물은 지상층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3.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부분에서]
→ 안테나가 설치된 층이 20층이라 하면, 해당층인 20층에서만 통신이 가능 하도록 하면 되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5층이든 9층이든 다른 층 모든부분에서 20층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회신 1

- 1,2)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5. 소화활동설비 마목에 따라 30층 이상 대상물은 16층 이상 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30층 미만 건물이라면, 지상층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 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505)」 2.2.3.2에 따라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문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2.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표 2.1.1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설치장소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
| 1. 공연장·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관람장·운동시설 | • 대형피난구유도등 |
| 2. 유통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라목의 유통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
| 3. 위락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료시설·장례식장·방송통신시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역사 | • 대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 4. 숙박시설(제3호의 관광숙박업 외의 것을 말한다)·오피스텔 | • 중형피난구유도등 |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건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 통로유도등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물로서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발전시설·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기술사·자동차정비공장·운전학원 및 정비학원·다중이용업소·복합건축물·아파트 | • 소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 7. 그 밖의 것 | • 피난구유도표지 • 통로유도표지 |

[비고] 1.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질의 1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5호 및 6호 질문) 상기법 5호에는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6호에는 아파트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층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지하층을 제외한 전층에 소형피난구 유도등을 설치 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1

- 귀하의 대상물이 11층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 표 2.1.1 제5호에 따라 중형 피난구유도등을 지하층을 포함하여 제5조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표2.1.1 제6호에서 규정하는 아파트는 5호에 해당하지 않는(10층 이하)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질의 2

- 상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세대를 주택과 동일한 구조로 보아 피난구유도 등 설치를 아니 할 수 있는지?



회신 2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표 2.1.1 [비고]제2호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거용 오피스텔이 업무가 아닌 주택의 세대 내와 유사한 용도로 볼 수 있다면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문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TC 303)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관계법령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2.2.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2.1.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3 2.2.1.1과 2.2.1.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2.2.1.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2.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질의 1

- 편복도의 경우에도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1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피난구유도등을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피난구유도등의 시인성이 좋지 않아 측면에서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로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 피난에 유리하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를 고려해볼때 출입구에 수직형 피난구유도등의 추가 설치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 아파트 E/V홀 유도등 설치 도면입니다. 해당 도면을 보시면 각 세대에서 나와서 피난구를 향해 봤을때 굳이 두개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유도등이 잘 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설치 유도등의 경우 설치가 의미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추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회신 2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2.2.3 신설(2021.07.08.) 조항은 피난구유도등을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피난구유도등의 시인성이 좋지 않아 측면에서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로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 피난에 유리하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각 세대 출입문에서 계단실까지 근거리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설치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 피난용승강기 피난구유도등 부착방향은 어느 방향이 맞는지? 복도에서 피난용승강기 방향으로 부착하는것과,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서 계단실 방향으로 안내할수 있는 승강장 안쪽에 부착하는 방법중 어느것이 맞는건지?



회신 3

- 피난용승강기는 고층건축물 화재 시 재실자가 피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2.2.1에 따라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복도에서 피난용승강장 방향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도등의 배선 문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7 유도등의 전원]

관계법령

2.7 유도등의 전원

2.7.3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7.3.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7.3.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다

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7.3.2.1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7.3.2.2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2.7.3.2.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2.7.3.3 3선식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2.7.4 2.7.3.2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질의 1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2.7 유도등의 전원 2.7.3.3에서 "3선식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2선식으로 결선으로 하면 상시 점등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회신 1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2.7.1에 따라 전원 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기준 2.7.3.3 3 선식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 선식 배선에 대한 내화.내열배선 사용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취지 및 화재로 인한 유도등 배선기능 저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선식 배선 시공시 내화배선 또는 내열 배선을 권장합니다.

【기 획】

소방청 화재예방국

화재예방국장 황기석

소방분석제도과장 최재민

제도계 제도계장 김문하, 소방경 홍성일, 소방위 이정원

안전기준계장 안전기준계장 이강민, 소방경 황창혁, 소방위 민정기

소방시설민원센터 김종호, 이건세, 유경주, 가내현, 최윤미,
박종화, 박재석, 이철승, 차승학

2022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발 행 처 :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TEL : 1661-9119

FAX : 044) 715-7621

발 행 일 : 2022년 12월

인 쇄 처 : 윤기획 : 044)862-7997

〈 비매품 〉

